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Global Market Report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 총괄 / 2

II . 국가별 동향 및 전망

6	1. 남아프리카공화국	97	15. 잠비아
9	2. 대만	99	16. 중국
13	3. 말레이시아	112	17. 캐나다
17	4. 멕시코	119	18. 코스타리카
22	5. 미국	122	19. 콜롬비아
41	6. 베트남	127	20. 태국
51	7. 브라질	134	21. 터키
56	8. 아르헨티나	141	22. 튀니지
61	9. 에콰도르	144	23. 파키스탄
64	10. 우크라이나	147	24. 필리핀
66	11. 이집트	150	25. 호주
69	12. 인도	157	26. EU
79	13. 인도네시아	165	27. GCC
88	14. 일본	170	<첨부> 對韓 수입규제 현황표

요 약

- '17년 12월말 기준, 전 세계 27개국에서 총 187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적용 중 (조사 진행 중인 36건 포함)
 - *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수입규제'라는 용어는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취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국한된 개념임.
 - '17년 상반기 대비 규제국가 수 1개국 감소, 규제 건수 3건 감소
 - 규제 국가로는 미국(31건), 인도(28건), 터키(15건), 중국(14건), 브라질(11건), 캐나다(10건), 태국(9건) 등 27개국이며, 이 중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131건으로 70%를 차지함.
 - 형태별로는 반덤핑 146건, 세이프가드 34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7건임.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85건, 화학 58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9건, 기타 21건임.
- '17년 하반기에 신규 개시된 건은 6개국에서 총 6건임. 최종 판결은 8개국 13건임
 - 2017년 하반기에 새롭게 조사 개시된 6건 중 미국, 호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은 신흥국에서 발생
 - 규제유형은 반덤핑 5건, 세이프가드 1건임.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5건(반덤핑 4건, 세이프가드 1건)이며, 철강금속 1건(반덤핑)
 - 2017년 하반기에 최종판결 난 13건 중 인도(3건), 터키(3건), 미국(2건), 중국, 캐나다, 태국, 파키스탄, 남아공(각 1건)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6건(반덤핑 6건), 철강제품 4건(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1건), 기타제품 3건(반덤핑 2건, 세이프가드 1건)임.
- '18년 상반기에도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EU 등에서 반덤핑법 정비.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조치 이어질 전망
 - 미국 :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대법 232조 조사 완료 (' 18.1월 중), 세탁기, 태양광 전지 등 세이프가드 규제안 발표 예정('18년 상반기)
 - EU : '17.12.19, EU는 반덤핑 관련 개정 규정을 채택, 중국 보고서를 발간하여 중국 시장 내 정부개입으로 인한 시장왜곡으로 인한 불공정무역 주장
 - 베트남 : ' 18.1.1 대외무역관리법이 발효되어 수출입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시행령 형태로 규정돼 있던 수입규제(세이프가드, 반덤핑, 반보조금 등)를 법 조항화함.

□ 전 세계 27개국에서 총 187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시행

* 조사 진행 중인 36건 포함

- 2017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27개국이며, 규제 건수는 총 187건에 달함.

* EU(유럽연합)와 GCC(걸프협력회의)는 각각 1개 국가로 집계

- '17년 6월 대비, 규제 국가 수는 1개 줄고, 전체 규제 건수는 3건 감소(신규 제소 6건, 규제종료 6건, 조사종료 3건), 품목별로는 철강/화학제품 각 4건 감소, 전기 전자 1건, 기타제품은 4건 증가
- 규제 국가는 미국, 인도, 터키, 중국, 브라질, 캐나다, 태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순이며, 이 중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EU를 제외한 신흥국에서의 수입규제가 총 131건으로 전체 규제건수의 70%를 차지함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국가	미국	인도	터키	중국	브라질	캐나다	태국	호주	말련	인니
건수	31	28	15	14	11	10	9	8	7	7

주 : 27개국 중 규제 건수가 7건 이상인 국가 기준

-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46건, 세이프가드 34건, 반덤핑.상계관세 공동 조치가 7건이며, 이 중 36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임

반덤핑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계
146(25)	34(11)	7	187(36)

주 : 괄호 안은 조사 중인 건수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85건, 화학 58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9건, 기타품목 21건임

품 목	철강/금속	화학	섬유류	전기전자	기타
건 수	85(12)	58(16)	14(2)	9(2)	21(4)

주 : 괄호 안은 조사 중인 건수 / 화학에는 플라스틱.고무제품 포함, 기타에는 농산물.자동차.생활용품 등 포함

□ '17년 하반기 중 6개국에서 6건의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 미국 등 6개국에서 6건의 신규 제소가 발생함
 - 국가별로는 미국, 터키, 중국, 멕시코, 호주, GCC(각 1건)으로 나타남
 - '17년 하반기에 신규로 조사 대상이 된 6건 중 반덤핑 제소가 5건, 세이프가드 1건임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5건(반덤핑 4건, 세이프가드 1건), 철강제품 1건(반덤핑)임

<2017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

연번	규제 국명(건수)	품목명	규제 유형	조사개시일
1	미국(1)	PET레진	반덤핑	'17.9.26
2	터키(1)	폴리카복실레이트	반덤핑	'17.11.28
3	중국(1)	니트릴고무	반덤핑	'17.11.9
4	멕시코(1)	SBR합성고무	반덤핑	'17.8.10
5	호주(1)	철근	반덤핑	'17.11.21
6	GCC(1)	시멘트용 가공첨가제	세이프가드	'17.9.20
6개국 총 6건 : 반덤핑(5건), 세이프가드(1건)				

□ '17년 하반기 중 8개국에서 13건의 수입규제 최종 판결

- 미국 2건, 인도 3건 등 8개국에서 13건의 수입규제 최종 판결
 - 국가별로는 인도(3건), 터키(3건), 미국(2건), 중국, 캐나다, 태국, 파키스탄, 남아공(각 1건)임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6건(반덤핑 6건), 철강제품 4건(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1건), 기타제품 3건(반덤핑 2건, 세이프가드 1건)
- 하반기 조사 진행 건 중 혐의 없음으로 조사 완료된 건 3건
 - * 인도(폴리부타디엔고무), 파키스탄(오프셋인쇄 잉크), 태국(산세강판)

<2017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최종 결정>

연번	규제 국명(건수)	품목명	규제 유형	최종 결정일
1	미국(2)	합성고무(ESBR)	반덤핑	'17.9.12
2		가소제(DOTP)	반덤핑	'17.8.18

연번	규제국명(건수)	품목명	규제유형	최종 결정일
3	인도(3)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반덤핑	'17.12.24
4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반덤핑	'17.12.14
5		SBR 고무	반덤핑	'17.8.30
6	중국(1)	폴리아세탈	반덤핑	'17.10.23
7	캐나다(1)	탄소합금강판	반덤핑	'17.12.5
8	태국(1)	강판	반덤핑	'17.7.19
9	터키(3)	콘크리트 펌프 및 펌프차량	반덤핑	'17.7.12
10		DOP·DOTP	반덤핑	'17.10.20
11		칫솔	세이프가드	'17.8.28
12	파키스탄(1)	백판지	반덤핑	'17.7.29
13	남아공(1)	비합금강판	세이프가드	'17.8.11
8개국 총 13건 : 반덤핑(11건), 세이프가드(2건)				

□ '17년 하반기 중 5개국에서 6건의 수입규제 종료

- 인도 2건 등 5개국에서 6건의 수입규제가 종료
 - 국가별로는 인도(2건), 베트남, 중국, 호주, 요르단(각 1건)으로 나타남
 - 종료된 6건 중 반덤핑 조치가 4건, 세이프가드 2건임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2건(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1건), 철강제품 3건(반덤핑 2건, 세이프가드 1건), 기타제품 1건(반덤핑)

<2017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종료>

연번	규제국명(건수)	품목명	규제유형	종료일
1	베트남(1)*	식물성기름	반덤핑	'17.5.7
2	인도(2)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 400시리즈	반덤핑	'17.10.3
3		구연산나트륨	세이프가드	'17.12.30
4	중국(1)	폴리우레탄 및 스판덱스	반덤핑	'17.10.13
5	호주(1)	열연코일	반덤핑	'17.12.20
6	요르단(1)	알루미늄바	세이프가드	'17.8.1
5개국 총 6건 : 반덤핑(4건), 세이프가드(2건)				

* 주 : 2017년 하반기 조사 시 종료 확인 건

□ '18년 상반기에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 강화 예상

○ 철강제품

- 남아공 : 남아공의 철강산업이 원자재 가격 하락과 저가의 중국산 수입증가로 적자가 심해지면서 반덤핑 조치 요구 지속
- 대만 : 중화민국전국공업협회의 '2017년 수입품의 (국내산업) 위협현황 보고서'에 대만 업계를 위협하는 수입품 중 10건의 한국산 제품을 포함 (철강 5건, 화장품 3건, 무기화학품 2건 포함)
- 말레이시아 : 냉연스테인리스강(CRSS) 반덤핑 최종판정이 '18년 2월 중순 발표 예정
- 미국 : '18.1월 철강/알루미늄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완료, 최종결정 발표 예정
- 인도 : 철강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해 '15년부터 관세를 인상, 수입규제 조치 부과
- 일본 : 철강제 관련결구류 반덤핑 조사 중
- 태국 : 철강을 sensitive list로 분류, 철강제품 수입가격 일단위로 모니터링 중
- 필리핀 : '17년 6월, 수입 철강제품의 품질관련 인증기준 강화 계획 발표
- 호주 : 철강제품군을 중심으로 추가제소 및 기 반덤핑 품목에 대한 연장요청 예상
- EU : 2020년까지 역외산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감시 제도를 운영 중

○ 화학제품

- 베트남 : '18.1월 화학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 결정될 전망
- 브라질 : '17년 6월 제소된 니트릴 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중
- 아르헨티나 : 다옥틸프탈레이트(DOP)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 진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한 재심결과 관세 상향 조정
- 인도 : 과산화수소, SBR 고무, TDI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가 부과됐거나 부과될 예정이며, 다옥틸프탈레이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 중국 :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중국 정부의 반덤핑 조치 확대 가능성 상존, '17년 하반기 중 對세계 총 6건의 신규 조사 중 5건 화학제품
- 파키스탄 : '17.8월 중국산,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터 장섬유사(Polyester Filament Yarn)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도 검토
- GCC : 제조업 육성 강화 추세로, 현지 생산이 증가하는 철강제품, 알루미늄 제품 및 석유화학 제품 수입규제 가능성 상승

II

국가별 동향 및 전망

1.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남아공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3건으로, 반덤핑 1건 규제 시행 중이며, 세이프가드 1건은 최종 판정, 1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2건, 화학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냉연강판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7209.15/16/17/18, 7225.50, 7226.92	세이프가드	'16.7.29	-	철강 및 금속	- '16.7.29: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비합금강판 (Certain 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7208.10/25/26/27/36/37/38/39/40/ 등, 7211.14/19, 7225.30/40/99, 7226.91/99	세이프가드	'16.3.24	'17.8.11	철강 및 금속	- '16.3.24: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16.7.18: 산업피해 긍정판정 - '17.5.8: 잠정관세 승인 - '17.7.7 : 잠정관세 예정 . 1년차 12%, 2년차 10%, 3년차 8% - '17.8.11 :관세 부과
폴리에틸렌 수지용기(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in primary forms)(Excluding liquids and pastes)	3907.60.90	반덤핑	'05.4.1	'06.5.30 '16.7.12 (일몰재심)	화학	- '10.8.1: 일몰재심 개시 - '11.3.4: 일몰재심 최종 판정, 5년간 관세부과 . 한국 19.7%, 인도 54.1%, 대만 75% - '16.2.3: 일몰조항 재검토 - '16.7.12: 일몰재심 최종 판정 결과 발표 * 덤핑마진율 : 35.64%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비합금강판) 2017년 8월 11일,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 남아공 산업통상부 장관 Rob Davies는 2017년 5월 8일에 긴급 세이프가드 관세 (12%) 부과를 승인
 - 동 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를 완료하고, 잠정 관세를 2017년 7월부터 3년간(1년차 12%, 2년차 10%, 3년차 8%) 부여할 계획을 밝힘
 - 2017년 8월 11일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남아공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 규제품목 : 기타품목(8건), 화학(6건), 철강 및 금속(4건) 순임
 - 규제형태 : 반덤핑(28건 규제 중, 2건 조사 중), 세이프가드(2건 조사 중)
 - 대상국가 : 중국(9건), 인도, 인도네시아(각 3건), 네덜란드, 브라질, 대만, 미국(각 2건), 벨기에, 독일, 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영국(각 1건) 순 (반덤핑 대상국)
- * 자료원 : WTO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통상정책전망) 2017년 12월 남아공 집권여당 ANC에서 라마포사 현 부통령이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 향후 남아공 경제 재건을 위한 시장 친화적 통상정책 추진 전망
- * 남아공은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 대표가 대통령직을 수임하며, ANC는 1994년 흑인 정부 수립 이후 다수당 자리를 지키고 있음. 차기 대선은 2019년 치뤄질 예정이나, 2018년 내 현 주마 대통령이 사임하고 라마포사가 대통령직을 이양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경제공동체)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IFTA: Tripartite Free Trade Area) 등을 통한 아프리카 대륙 내 협력 강화 추진
 - 남아공은 2017년 7월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에 서명을 완료하였으며, 협정 발효 시 역내 남아공 수출량 증대 기대
- (보호무역주의) 자국 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철강, 식품 분야 등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
 - 자동차 산업 육성 관련,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자 남아공 정부는 수입규제 외에도 고용 및 조달 규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 2016년 12월, 남아공 산업통상부는 국내 양계업계 보호를 위해 EU와의 파트너십 협정(EPA) 하에 유럽산 닭고기 수입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13.9%의 관세 부과를 승인
 - * 남아공 가금류 산업협회가 신청한 세이프가드 관세는 37%로, 향후 논의에 따라 세이프가드 관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제품) 철강 생산 세계 21위인 남아공의 철강산업이 원자재 가격 하락과 저가의 중국산 수입증가로 적자가 심해짐에 따라, 저가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요구 지속 전망
- (옥수수) 남아공 수확량추산위원회는 2017년 총 옥수수 생산량이 약 1,640만 톤에 달하는 유례없는 풍작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남아공 연간 옥수수 소비량은 약 1,050만 톤으로 추산되는바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설탕) 2018년 4월부터 설탕세 도입 예정으로 남아공 노동조합연합(Cosatu)은 설탕 산업의 일자리 감축과 투자 축소를 염려, 설탕 수입을 낮추고 자국 내 생산을 증진하고자 수입 관세 인상 등 규제 조치 마련을 요청

2. 대만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만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3건으로, 반덤핑 3건만 규제 중이며, 조사 진행 중인 수입규제는 없음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만 3건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Certain Cold-rolled Stainless Products)	7219.32/33/34/35, 7220.20	반덤핑	'13.2.20	'13.11.21	철강 및 금속	- 대상국 : 한국, 중국 - 반덤핑세율 : 20.18%~38.11% - 포스코·대우인터내셔널·GS글로벌·효성·현대·현대BNG스틸·현대제철 26.53%, 기타 37.65% - 규제기간 : '13.8.15~'18.8.14(5년)
아연도금강판 (Certain Flat-rolled Steel Products, Plated or Coated with Zinc or Zinc-alloys)	7210.30/41/49/61/90, 7212.20/30/50, 7225.91/92/99, 7226.99	반덤핑	'16.2.22	'17.1.23	철강 및 금속	- 대상국 : 한국, 중국 - 반덤핑세율 : 4.22%~77.3% -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한국기업 일괄 77.3% - 규제기간 : '16.8.22~'21.8.21(5년)
탄소강 후판 (Carbon Steel Plate)	7208.51/52/90, 7211.14, 7225.40, 7226.91	반덤핑	'16.2.22	'17.1.23	철강 및 금속	- 대상국 :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우크라이나 - 반덤핑세율 : 4.02%~80.5% - 현대스틸 19.91%, 포스코 4.02%, 기타 80.5% - 규제기간 : '16.8.22~'21.8.21(5년)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17년 하반기 중 변동 내역 없음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만은 6개국 7개 품목에 대해 총 14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중이며, 이 중 1건은 일몰재심 진행 중
 - 규제품목 : 철강(10건), 화학(1건), 섬유(1건), 기타(2건)
 - 규제형태 : 반덤핑(14건 규제 중, 1건 일몰재심 중)
 - 대상국가 : 중국(7건), 한국(3건), 브라질(1건), 인도(1건), 인도네시아(1건), 우크라이나(1건)

* 자료원 : 대만 재정부 관무서

〈 대만의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과산화벤조일 (Benzoyl Peroxide)	2916.32	반덤핑	'09.12.8	'10.7.15	화학	- 대상국 : 중국 - 반덤핑세율 : 2.35~26.67% - 규제기간 : '16.3.14 ~ '21.3.13(5년) - 1차 일몰재심 후 2차 규제 중
수건 (Toweling Products)	6302.60/91	반덤핑	'06.3.1	'06.7.24	섬유	- 대상국 : 중국 - 반덤핑세율 : 0%, 29.72% - 규제기간 : '17.12.21 ~ '22.12.20(5년) - 2차 일몰재심 후 3차 규제 중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7219.32/33/34/35, 7220.20	반덤핑	'13.2.20	'13.11.21	철강 및 금속	- 대상국 : 중국, 한국 - 반덤핑세율 : 20.18~38.11% - 규제기간 : '13.8.15 ~ '18.8.14(5년)

신발 (Certain Footwear)	6402.91/99, 6403.51/59/99	반덤핑	'06.10.13	'97.5.22	기타	- 대상국 : 중국 - 반덤핑세율 : 0~43.46% - 규제기간 : '12.12.13~일몰 재심 종료일 - 1차례 일몰재심 후 2차 규제기간 종료(일몰재심 진행 중)
아연도금강판	7210.30/41/49/ 61/90, 7212.20/30/50, 7225.91/92/99, 7226.99	반덤핑	'16.2.22	'17.1.23	철강 및 금속	- 대상국 : 중국, 한국 - 반덤핑세율 : 4.22~77.3% - 규제기간 : '16.8.22~ '21.8.21(5년)
탄소강 후판	7208.51/52/90, 7211.14, 7225.40, 7226.91	반덤핑	'16.2.22	'17.1.23	철강 및 금속	- 대상국 : 중국, 한국, 브 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 반덤핑세율 : 4.02~80.5% - 규제기간 : '16.8.22~ '21.8.21(5년)
포틀랜드 시멘트 (Portland Cement Type I · II)	2523.10/29	반덤핑	'10.12.6	'11.7.28	기타	- 대상국 : 중국 - 반덤핑세율 : 91.58% - 규제기간 : '17.2.20~ '22.2.19(5년) - 1차례 일몰재심 후 2차 규제 중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FT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노력
 - 일본, 동남아 등 가입국에 협조를 구하며 이들 국가와의 상호 교류협력 강화에 총력
- (新남향정책)* 무역진흥기관·국영기업·과학공업단지·민간협회 등을 앞세워 동남아
인도를 중심으로 한 상호 경협 확대 노력. 2017년부터 본격 추진 중
 - * 총 18개국(동남아 10, 남아시아 6, 오세아니아 2)에 대한 인적교류·경제협력 확대 정책
 - 일본에는 대만과의 산업 보완성을 강조하며 동참을 권유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화장품)(무기화학품) 대만 업계, 한국산 철강·화장품·무기화학품 수입
예의주시
 - 대만 최대 제조업협회인 중화민국전국공업협회의 ‘2017년 수입품의 (국내산업)
위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업계를 위협하는 수입품 총 144건(대만 HS코드
11단위 기준) 가운데 총 10건의 한국산 제품을 포함
 - * 매년 대만기업 약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17년 유효표본 75)
 - 대만 제조업계가 경쟁품목으로 주시하고 있는 한국산 수입품(품목수, HS코드) :
철강(5, 7216.33, 7210.12/50), 화장품*(3, 3304.10/99), 무기화학품(2, 2815.20,
2836.40)
 - * 대만 화장품기업이 후발주자로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속에 한국산 화장품을 경쟁관계로
인식하는 성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3. 말레이시아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말레이시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7건으로, 반덤핑 5건, 세이프가드 2건이며, 이 중 반덤핑 1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6건, 화학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3907.60	반덤핑	'14.6.19	'15.3.13	화학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 '15.3.14~'20.3.13 - 한국기업: 14.91%
강선재와 이형 코일철근 (Steel Wire Rod and Deformed Bar-in-coil)	7213.10/91/99, 7227.90	세이프가드	'16.5.27	'17.4.14	철강 및 금속	- '16.5.27: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16.9.23: '16.9.27~'17.4.14 간 잠정관세 부과결정 - '17.4.14: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 '17.4.15~'18.4.14: 13.90% . '18.4.15~'19.4.14: 12.90% . '19.4.15~'20.4.14: 11.90% - 대상국: 42 countries including Korea

냉연스테인리스강 (Cold Rolled Stainless Steel)	7219.31/32/33/ 34/35, 7220.20,	반덤핑	'17.5.15	-	철강 및 금속	- '17.5.15: 반덤핑 조사 개시 - 제소자: Bahru Stainless Sdn Bhd - 대상국: 중국, 한국, 대만, 태국 - '17.10.12 : 예비 판정 (현 대비앤지스틸 -43.82% , 현대제철 0.70% , 포스코 -6.02% , 기타 7.27%)
냉연코일 (Cold Rolled Coil)	7209.15/16/17, 7209.18.29/90, 7225.50.0000	반덤핑	'15.8.27	'16.5.23	철강 및 금속	- '16.1.19: 예비판정 . 잠정관세: 1.97~ 21.64% (POSCO는 미소마진) - '16.5.23: 최종판정 .한국기업: 3.78%~21.64%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6.5.24~21.5.23
석도강판 (Electrolytic Tinplate)	7210.12	반덤핑	'13.2.20	'13.11.16	철강 및 금속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3.11.16~18.11.15 - 한국기업 : 3.46%~9.78%
선재 (Steel Wire Rods)	7213.10/20/ 91/99	반덤핑	'12.6.25	'13.2.19	철강 및 금속	-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 '13.2.20~18.2.19 - 한국기업: POSCO (3.03%), 기타(25.20%)
후판 (Hot Rolled Plates)	7208.51/52, 7225.40	세이프가드	'14.8.18	'15.6.29	철강 및 금속	- '15.7.2부터 3년간 세이프가드 발동 - 3년간 점진적 자유화 . 1년차: 17.4% . 2년차: 13.9% . 3년차: 10.4%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냉연스테인리스강) 2017년 10월 12일, 반덤핑 예비 판정

- 2017년 10월 11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7년 10월 12일부터 2018년 2월 8일
까지 중국, 한국, 대만 및 태국에서 수입되는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CRSS)에
대하여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비 판정을 발표함
- 현대비앤지스틸 -43.82% , 현대제철 0.70% , 포스코 -6.02% , 기타 7.27%
- 동 조사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말레이시아는 총 11건의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이며, 1건 조사 진행 중임(총 12건, 품목 기준)
 - 품목별로는 철강(9건), 플라스틱(2건), 시멘트(1건) 등이며,
 - 수입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8건 발효, 1건 조사중), 세이프가드(3건 발효)
 - 대상국별로는 중국(11건), 한국(7건), 인도네시아(5건)을 비롯해 총 48개 국가에 대해 수입규제를 발효/진행 중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3건 이하임.
- * 한 품목당 다수의 국가가 대상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아세안-홍콩, 중국 자유 무역 협정 (AHKFTA) 및 아세안-홍콩, 중국 투자 협정 (AHKIA)
 - 2017년 11월 12일, ASEAN과 홍콩 (HKC) 경제 장관은 필리핀에서 ASEAN-HKC 자유 무역 협정 (AHKFTA)과 ASEANHKC 투자 협정 (AHKIA)에 서명함
 - AHKFTA는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및 호주 - 뉴질랜드에 이어 ASEAN이 외부 파트너와 맺은 6번째 자유 무역 협정임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 현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 21차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시작됨
 - 2017년 10월 한국 인천에서 열린 마지막 협상 포함 20차례 협상이 진행됨
 - 2018년 내 협상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 현황
 - 2017년 11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TPP 발효를 추진키로 하고, ‘포괄적·점진적 TPP(CPTPP)’로 명칭을 변경함
 - 말레이시아가 관심을 갖는 조항은 생물 제재, 특허기간 조정 및 저작권 등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 철강분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지속될 전망
 -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연맹(MISIF)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철강공장들이 중국산 저가 철강수입품들에 심각하게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함
 - 2017년 10월 11일에 예비 판정된 냉연스테인리스강(CRSS)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이 2018년 2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상황임

4. 멕시코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멕시코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4건으로, 반덤핑 2건은 규제 시행 중이며 1건은 반덤핑 예비 판정, 1건은 조사 진행 중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2건, 섬유 1건, 화학 1건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무게목강관 (Seamless pipe)	7304.19.01/02/99/ 7304.39.05/06/99	반덤핑	'16.12.15	-	철강 및 금속	- '16.12.15: 반덤핑 조사 개시 · 한국, 스페인, 인도, 우크라이나산 대상 - '17.8.03 반덤핑 예비판정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Short-fiber Polyester)	5503.20.01/02/03/99	반덤핑	'92.3.19	'93.8.19 '98.8.20 '03.8.20 '08.8.20 '13.8.20	섬유	- '93.8.19: 5년간 반덤핑 관세 결정 · 삼양사 제조, 수출 3.74% · 삼양사 제조, 대우 수출 시 14.81% · 제일합섬 제조, 삼성 수출 시 4.49% · 기타: 32% - '98.8.20: 5년간 추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03.8.20: 5년간 추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08.8.20: 5년간 추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13.8.20: 5년간 추가 반덤핑 관세부과 결정
합성고무 (Emulsion Styrene Butadiene Rubber)	4002.19.01/02/03/99	반덤핑	'17.8.10	-	화학	- '17.4.11: Negrrromex사가 한국산 합성고무로 인한 국내업체 피해를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 - '17.8.10: 멕시코 경제부 조사 개시

훼로망간 (Ferro-manganese)	7202.11.01	반덤핑	'16.1.8	'16.12.15	철강 및 금속	- '15.11.20: Minera Autlan 사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불공정 무역조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 멕시코 경제부가 이를 받아 들여 '16.1.8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 '16.7.11: 반덤핑 예비 판정 . 한국산 35.65% - '16.12.15: 반덤핑 최종 판정 . 한국산 35.64%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무계목강관) 2017년 8월 3일, 반덤핑 예비 판정

- 2016년 10월 15일 멕시코 철강업체 TAMSA는 멕시코 정부에 한국, 스페인, 인도, 우크라이나산 강관에 대한 반덤핑 청원을 신청
- TAMSA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입강관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멕시코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 관련 품목의 HS CODE는 7304.19.01, 7304.19.02, 7304.19.99, 7304.39.05, 7304.39.06, 7304.39.99 총 6건
- 정부는 동 요청을 받아들여 2016년 12월 15일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
- 2017년 8월 3일 멕시코 정부는 4개국 강관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확정했으며 한국산 수입강관의 경우 톤당 131.10 달러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음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멕시코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총 72건)
- 규제품목 : 철강 및 금속(47건), 석유화학 및 고무 플라스틱(10건), 금속제품 및 기계장비(4건), 기타제조업품목(4건), 농,임업(3건), 섬유(2건), 자전거(1건), 종이접착제(1건) 순
- 대상국가 : 중국(32건), 미국(9건), 인도(6건), 우크라이나(5건), 러시아, 한국(각 4건), 스페인(3건) 등

*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WTO

○ 수입철강에 대한 잠정관세 부과 조치 2018년 4월까지 연장

- 2015년 10월 7일, 멕시코 경제부는 철강산업 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HS 코드 97개 항목(* 아래 표 참조)에 대해 관세 15%를 6개월간 부과함
- 2016년 4월 4일, 2016년 10월 7일, 2017년 4월 6일의 연장조치에 이어 2017년 10월 17일에 동 관세부과 조치를 2018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재연장한다고 발표함

<잠정관세 15% 부과대상 철강제품 (HS Code)>

7207.12.01/99	7208.10.01/02/99	7208.25.01/99
7208.26.01	7208.27.01	7208.36.01
7208.37.01	7208.38.01	7208.39.01
7208.40.01/99	7208.51.01/02/03	7208.52.01
7208.53.01	7208.54.01	7208.90.99
7209.15.01/02/03/99	7209.16.01	7209.17.01
7209.25.01	7209.26.01	7209.27.01
7209.27.01	7209.90.99	7211.13.01
7211.14.01/02/99	7211.19.01/02/03/04/99	7211.23.01/02/99
7211.29.01/02/03/99	7211.90.99	7213.10.01
7213.20.01	7213.91.01/02	7213.99.01/99
7224.90.02	7225.19.99	7225.30.01/02/03/04/05/06/99
7225.40.01/02/03/04/05/99	7225.50.01/02/03/04/05/06/99	7226.19.99
7226.91.01/02/03/04/05/06/99	7226.92.01/02/03/04/05/99	7227.10.01
7227.20.01	7227.90.01/99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 트럼프 美 대통령은 취임 이후 NAFTA 협정에서 멕시코만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협정 파기, 탈퇴를 주장
- 올해 3월경 미국은 NAFTA 협정 파기가 아닌 재협상의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
- 이에 멕시코 정부도 2월 1일부터 민간분야 및 관련인사들과 NAFTA 조항 개정에 관한 90일간의 공식 협의 절차를 가짐
- 1차 재협상은 올해 8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되었으며 2017년 11월 멕시코시티에서 제 5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음
- 멕시코, 미국, 캐나다 3국은 올해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삼국 간 입장차이가 커 협상기한을 2018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 주요쟁점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 정기적인 재협상을 위해 5년마다 협정이 자동 종결 되는 일몰조항 등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실현 노력

- 트럼프 美 행정부는 당초 12개국의 참가가 예정되었던 메가 FTA인 TPP를 '17년 1월 23일 탈퇴를 공식 선언했음
- * 당초 TPP는 '15년 10월 5일 12개 참가국이 최종 타결하여 인구 8억 명, 전 세계 GDP의 37%, 교역의 2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무역동맹으로 부상한 바 있음
- 이에 일본의 주도로 미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들이 ' 17년 5월 21일 베트남에서 각료회의를 갖고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TPP 실현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치기로 합의
- 2017년 11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제 25차 APEC 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기존 11개 회원국은 TPP 핵심 요소에 합의했다고 발표
- 해당 회의를 통해 기존 TPP라는 용어에 '포괄적, 점진적(C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라는 단어를 추가해 CPTPP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합의
- 향후 TPP는 11개국 가운데 6개국에서 국내 비준이 완료되면 발효될 예정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 강화 예상

- 철강의 주요 소비자인 멕시코 내 자동차 업계 지속적 성장
- 멕시코자동차협회(AMIA)에 따르면 2017년 11월 누계 기준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량은 총 3,527,321대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304,201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자동차 생산량 증가에 따라 멕시코 내 철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멕시코에서 생산된 철강을 사용하기보다는 수입철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국내 업체들은 철강산업 보호를 주장
- 따라서 멕시코 정부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제품에 관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2017년 11월 기준 멕시코 수입규제의 60%이상이 철강관련 품목

5. 미국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미국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31건으로, 반덤핑 22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2건이며, 이 중 반덤핑 6건, 세이프가드 2건은 조사 진행 중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20건, 전기전자 4건, 섬유 3건, 화학 3건, 기타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API 라인파이프 (송유관, Welded line pipe)	7305.11.1030/5000, 7305.12.1030/5000, 7305.19.1030/5000, 7306.19.1010/1050/ 5110/5150	반덤핑	'14.11.6	'15.11.6	철강 및 금속	- 제소측 주장 덤핑마진: 48.49-202.31% - 제소측 주장 보조금율: 미소마진(de minimis) 이상 - '15.3.17: 상무부 한국산 API 라인파이프에 보조금 무혐의 예비판정 - '15.5.15: 반덤핑 예비판정 : 한국산에 대해 2.52%~2.67%의 덤핑마진 발표 - '15.10.6: 상무부 보조금 무혐의 최종판정, 반덤핑 최종판정 (세아제강 2.53%, 현대하이스코 6.19%, 기타 4.36%) - '15.11.6: ITC 반덤핑 산업피해 유효 최종판정
PC 강선 (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7312.10.3010/12	반덤핑	'03.2.27	'15.3.17 (일몰재심)	철강 및 금속	- '15.3.17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반덤핑관세 54.19% - '15.4.10일부로 ITC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PET 레진	3907.61.00.00	반덤핑	'17.9.26	-	화학	- '17.9.26 : ITC, 조사 개시

(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3907.69.00.00					* 덤핑마진율: 58.73%~103.48% - '17.10.17 : DOC 반덤핑 조사 개시 * 덤핑마진율: 55.74%~101.41% - '17.11.08: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긍정판정
가소제 (DOTP, Decetyl Terephthalate)	2917.39, 3812.20	반덤핑	'16.7.20	'17.8.18	화학	- '16.6.30: Eastman Chemical Company사 제소 - '16.7.20: 상무부 조사 개시 * 대상업체 : 애경화학, LG화학, 한화케미칼 - '16.8.12: ITC, 산업피해 긍정 예비판정 - '17.1.27: 상무부 반덤핑 예비판정 * 덤핑마진 : 애경(3.96%), LG(5.75%), 기타(4.47%) - '17.6.20: 상무부 반덤핑 최종판정 * 덤핑마진 : 애경(4.08%), LG(2.71%), 기타(3.69%) - '17.7.20: ITC 최종판정 - '17.8.18 :반덤핑 과세부과 결정 · 애경유화 : 4.08% · LG화학 :2.71% · 기타업체 :3.69%
가정용 세탁기 (Residential washer)	8450.20.0090, 8450.11.0050/ 0080, 8450.90.2000/6000	반덤핑/ 상계관세	'12.1.18	'13.1.23	전기 전자	- '12.12.19: 상무부 최종판정 * 덤핑마진율: 대우 82.41%, LG 13.02%, 삼성 9.29%, 기타 11.86% * 보조금율: 대우 72.30%, 삼성 1.85%, 기타 1.85% - '13.1.23: ITC 최종판정 - '16.3.11: 상무부 연례재심 예비판정 - '17.03.06: 상무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 덤핑마진: LG전자(0%) - '17.07.03 : ITC, 일몰재심 조사 개시 - '17.09.06 : 상무부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 덤핑마진: LG전자(0%), 삼성전자(82.35%),

						대우전자(79.11%) - '17.11.08: 상무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 덤핑마진: LG전자(0.64%)
강철 못 (Steel nail)	7317.00.5502/03/ 05/07/08/11/20/30/ 40/50/60/70/80/90, 7317.00.6530/6560/ 7500	반덤핑	'14.6.19	'15.6.27	철강 및 금속	- '14.10.28: 상무부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보조금 무혐의 판정 - '14.12.18: 상무부 반덤핑 예비판정 * 덤핑마진율: 대진철강 12.38%, 진흥철강 2.13%, 기타 7.26% - '15.5.14: 상무부 반덤핑 최종판정 * 대진철강 11.80%, 진흥철강 0.0%, 기타 11.80% - '15.6.27: ITC 산업피해 인정 최종판정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 확정
냉간압연강관 (Cold-drawn Mechanical Tubing)	7304.31.3000, 7304.31.6050, 7304.51.1000, 7304.51.5005, 7304.51.5060, 7306.30.1000, 7306.30.5015, 7306.30.5020, 7306.50.1000, 7306.50.5030	반덤핑	'17.5.9	-	철강 및 금속	- '17.5.9: 반덤핑 조사개시 * 피제소국 : 한국,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스위스(중국 과 인도는 상계관세 조사도 병행) * 덤핑마진율 : 한국(12.00~48.00%) - '17.6.5: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긍정발표 - '17.11.15: 상무부, 예비 덤핑 판정 긍정판정 * 덤핑마진율 : 상신(48%), 울 촌/기타(5.10%)
냉연강판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	7209.15/16/17/18/25/26/ 27/28/90, 7210.70, 7211.23/29/90, 7212.40, 7225.50/99, 7226.92	반덤핑/ 상계관세	'15.8.18	'16.9.2	철강 및 금속	- '15.8.18: 상무부 조사 개시 - '15.9.10: ITC 산업피해 인정 예비 판정 - '16.3.1: 상무부 반덤핑 예비판정 * 포스코,대우인터네셔널: 6.85% / 현대제철: 2.17% / 기타: 4.53% - '16.7.21: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 * 반덤핑/상계관세율: 포스코(6.23%/56.36%), 현대제철(34.33%/3.91%)

						- '16.9.2: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 덤핑 및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확인하는 최종판결 확정. 본 판정은 미국 상무부에 하달되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될 예정 - '16.9.20: 상계관세 최종판정 내용 변경 * 포스코: 59.72% - 현대제철/기타: 3.89%
무방향성 전기 강판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7225.19.0000, /1000/9000, 7225.50.8085, 7225.99.0090, 7226.92.5000/7050/8050, 7226.99.0180	반덤핑	'13.10.22	'14.11.6	철강 및 금속	- '14.10.7: 상무부 반덤핑 최종판정 * POSCO/대우 인터내셔널 6.88%, 기타 6.88% * 상계관세 무혐의 판정 - '14.11.6: ITC 반덤핑 최종판정 - '14.12.03: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부식방지처리강판 (Certain corrosion resistant steel product)	7210.30/41/49/61/69 /70/90, 7212.20/30/40/50/60, 7215.90, 7217.12/30/90, 7225.91/92, 7226.99	반덤핑/상계관세	'15.6.23	'16.6.24	철강 및 금속	- '15.6.23 상무부 조사 개시 - '15.11.3: 상무부 보조금 혐의 인정 예비판정 결과 * 유니온스틸 및 동국제강 0.69%(미소마진 이하) / 기타 1.37% - '15.12.22: 상무부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 동국제강 2.99% / 현대스틸 3.51% / 기타 3.25%) - '16.5.25: 상무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 * 반덤핑: 동국제강: 8.75% / 현대제철 47.80% / 기타 31.73% * 상계관세: 동부스틸: 1.19% / 기타: 1.19% / 유니언스틸: 0% - '16.6.24: ITC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
세탁기 (Large Residential Washers)	8450.1100, 8450.2000, 8450.9060	세이프가드	'17.6.5	-	전기전자	- '17.6.5: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 '17.10.5: 산업피해 긍정판정 - '17.10.19: 공청회 개최 - '17.12.04: ITC 조사결과 권고안제출
스탠다드 강관 (Circular	7306.30.10.00, 50.25/32/40/55/85/90	반덤핑	'91.10.4	'11.10.28 (일몰재심)	철강 및 금속	- '11.10.28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 현대강관 6.86%, 한국강관 6.21%, 부산파이프

welded non-alloy steel pipe)						4.91%, Masan steel tube works 11.63%, 기타 6.37% - '15.12.8 연례재심 결과발표 :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1.42~3.69%의 가중평균덤핑마진 부과, 세아제강 무혐의 판정 - '16.6.20 : 연례재심 결과발표 (2013.11-2014.10) * 휴스틸 1.42%, 현대하이스코 1.62%, 세아 0% - '17.6.1 : ITC, 일몰재심 개시 - '17.6.7 : 연례재심 결과발표 * 휴스틸 1.20%, AJU 비스틸 1.20%, 넥스틸 1.20%, 세아제강 1.20% - '17.12.06 : 상무부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발표 * AJU 비스틸 : 23.17% , 휴스틸 8.18%, 현대제철 38.16%, 넥스틸 23.17%, 세아제강 23.17%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코일 (Stainless steel sheet & strip in coil)	7219.13/14/ 31/32/33/34/35/90, 7220.12 /20/90	반덤핑/ 상계관세	'98.6.30	'16.11.7 (일몰재심)	철강 및 금속	- '10.10.7 상계관세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현대제철 0.54%, 대양금속 0.67%, 대한 4.64%, 기타 0.63% - '10.11.2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 포스코 2.49%, 대한 58.79%, 대양금속 5.44%, 기타 2.49% - '11.12.1일부로 반덤핑/상계관세 지속 일몰재심 최종판정 공고 반덤핑 부분철회판정 (포스코 : 2.49% → 0%(철회)), 지속(대한 : 58.79% → 58.79%, 기타 : 2.49% → 19.60%) - 제로잉 사용에 대한 WTO 판정 이행 - '16.11.7 : DOC,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최종판정 * 반덤핑 : 대한 58.79% , 기타 19.60% * 상계관세 : 현대스틸 0.54%,

						대양 0.67%, 대한 4.64%, 기타 0.63%
스테인리스 선재 (Stainless steel wire rod)	7221.00.05, 15/30/45/75	반덤핑	'97.8.26	'15.5.1 (일몰재심)	철강 및 금속	- '09.10.30 일몰재심 최종판정 : 동방/장원/포스코 5.77%, 삼미 28.44%, 기타 5.77% - '10.6.17일자로 ITC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 '15.5.1일자로 ITC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 '15.10.2: DOC,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Welded ASTM A312 stainless steel pipe)	7306.40.50. 05/15/40/62/64/85	반덤핑	'91.11.1	'17.5.12 (일몰재심)	철강 및 금속	- '11.11.2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 삼미 7.92%, 세아 2.67%, 기타 7% - '11.12.19일자로 ITC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 '16.7.18 : DOC, 연례재심 최종판정 (세아제강: 2.58%, LS메탈 31.70%) - '17.3.17: DOC, 일몰재심 최종판정 * 삼미금속 7.92%, 세아 2.67%, 기타 7% - '17.5.12: ITC, 일몰재심 긍정 판정
연벽 사각파이프 (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	7306.61.5000/7060	반덤핑	'07.6.28	'13.8.6 (일몰재심)	철강 및 금속	- '13.8.6: 일몰재심 최종판정 * 동아/하이스틸/진방철강/중원/미주철강/유진철강/아신/한겨레/국제 30.66%, 세아/기타 15.79% - '14.6.23일부로 ITC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열연강판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7208.10/25/26/27/36/37/ 38/39/40/53/54/90, 7210.70, 7211.14/19, 7225.11/19/30/40/99, 7226.11/19/91	반덤핑/ 상계관세	'15.9.1	'16.9.12	철강 및 금속	- '15.9.1: 상무부 조사 개시 - '15.9.24: ITC 산업피해 인정 예비 판정 - '16.1.8: 상무부 보조금율 마소진 판정 - '16.3.15: 상무부 반덤핑 예비판정 * 현대제철 3.97% / 포스코 7.33% - '16.8.5: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 * 반덤핑/상계관세율: 포스코(3.89%/57.4%), 현대제철(9.49%/3.89%) - '16.9.12: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 상무부 최종판정대로 반덤핑 관세 부과 - '16.10.3: 상계관세 최종판정 내용 변경 * 상계관세율: 포스코(58.68%)
용접각관 (강벽사각파이프) (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7306.61.1000	반덤핑	'15.8.11	'16.8.17	철강 및 금속	- '15.8.11: 상무부 조사 개시 - '15.9.3: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 '15.2.23: 상무부 예비판정 결과: * 동아스틸: 2.53% / 하이스틸: 3.81% / 기타: 3.31% - '16.7.15: 상무부 반덤핑 최종판정 * 동아제강 2.34%, 하이스틸 3.82%, 기타 3.24% - '16.8.17: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 상무부 2.34%~3.82%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명령함.
원추 롤러 베어링 (Tapped Roller Bearing)	8482.20/91/99	반덤핑	'17.6.28	-	기타	- '17.6.28: 반덤핑 제소 * 덤핑마진율: 46.28%~132.24% - '17.8.11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긍정판정
유입식 변압기 (Large power transformer)	8504.23.0040/0080, 8504.90.9540	반덤핑	'11.7.14	'12.8.31	전기 전자	- '12.8.31: ITC 최종판정 * 효성 29.04%, 현대중공업 14.95%, 기타 22% - '17.3.6: 상무부 2014-2015년도 연례재심 최종판정 - '17.07.03 : DOC, 제1차 일몰재심 개시1 - '17.09.07 : 상무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발표 * 덤핑마진: 효성/현대중공업/일진전기/일진/LS산전(60.81%) - '17.11.07: 상무부, 제1차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발표 * 덤핑마진: 효성/현대중공업/일진전기/일진/LS산전(29.04%) - '17.12.04: 상무부 상황변동재심 개시 (Circumstances Review)
유정용 강관	7304.29, 7305.20,	반덤핑	'13.7.10	'14.8.22	철강 및	- 상무부 '14.7.11 최종판정에서

(Oil Country Tubular Good)	7306.29				금속	'14.2.18 예비 무혐의 판정 반복 - '14.7.11 상무부 최종판정 결과 : 현대하이스코 15.75% 넥스틸 9.89% 기타 12.82% - '14.8.22: ITC 반덤핑 최종판정 - '14.12.18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 미국 세관(CBP)에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관세 정산 (liquidation)을 금지 - '15.9.2 CIT 한국산에 대한 덤핑마진 불인정, 11월 2일까지 재조사 등 후속조치요구 - '16.8.30: 상무부 최종 덤핑마진 수정(* 현대하이스코 6.49%, 넥스틸 3.98%, 기타5.24%) - '17.4.11: 연례재심 최종 판정 * 세아제강: 2.76%, 넥스틸: 24.92%, 기타: 13.84% - '17.10.03: 상무부 반덤핑 연례 재심 예비판정 결과 발표 * 덤핑마진: 넥스틸(46.37%), 세아제강(6.66%), 기타(19.68%)
인동 (Phosphor Copper)	7405.00.1000	반덤핑	'16.3.30	'17.3.30	철강 및 금속	- '16.3.30: 상무부 조사 개시 * 미국 업계, 한국산 제품에 12.55~66.54% 덤핑마진 주장 - '16.4.21: ITC 산업피해 인정 예비 판정 - '16.10.6: 상무부 예비판정 - '17.2.27: 상무부 반덤핑최종판정 * 반덤핑관세율 : 봉산/기타(8.43%) - '17.3.30: ITC, 산업피해 긍정 최종판정 - '17.04.24: 상무부 최종판정대로 반덤핑관세 부과
저융점 합성단섬유 (Low Melt Polyester Staple Fiber)	5503.20.00	반덤핑	'17.6.27	-	섬유	- '17.6.27: 반덤핑 제소 * 피제소국 : 한국, 대만 * 덤핑마진율: 한국(32.95%~62.52%) - '17.8.10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긍정판정
철강후판 (Carbon steel	7208.40/51/52/53/90,	반덤핑/상계관세	'99.3.16	'11.3.7 (반덤핑)	철강 및 금속	- '11.3.7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 동국제강:

					2.98%, 기타: 2.98% - '11.3.8 상계관세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동국제강 1.38%, 기타 1.38% - '11.3.31 상무부 반덤핑 연례재심 개시 - '11.12.5 ITC, 반덤핑/상계관세 최종 긍정판정 - '12.1.13 상무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 동국제강 1.64% - '12.4.10 상무부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 동국제강 1.64% - '13.1.22 상무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 '13.5.17: DOC,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 '13.12.16 상무부 반덤핑 연례재심 판정 공고 - '14.3.10 상무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공고 * 동국제강, Edgen Murray, 경일, 삼성C&T, 삼우EMC, TCC동양 4.64% - '14.3.25 상무부 상계관세 2012년도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덤핑마진율: 동국제강, Edgen Murray, 경일, 삼우EMC, TCC동양 모두 미소마진 판정 - '14.8.5 상무부 상계관세 연례재심 무혐의 최종 판정 * 덤핑마진율: 동국제강, 에진 머레이, 경일, 삼성 C&T, 삼우 EMC, TCC동양 모두 0.11% 미소마진 - '14.11.09 상무부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 동국제강, Edgen Murray, 경일, 삼성C&T, 삼우EMC, TCC동양 4.64% - '14.12.19: 상무부 반덤핑
plate)	7210.70/90, 7211.13/14/90, 7212.40/50, 7225.40/50/99, 7226.91			'11.3.8 (상계) (일몰재심)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미소마진 판정 * 부국철강공업, 동국제강, 에스엠솔루션: 0.56% - '15.04.24: 상무부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미소마진 판정 * 부국철강공업, 동국제강, 에스엠솔루션: 0.56% - '16.03.11 상무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 동국제강 1.11%, 현대제철 신규수출자 재심 예비 판정 0.00% - '16.03.14 상무부 상계관세 2014년도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미소마진 판정 * 동국제강 0.01%, 현대제철 0.23% - '17.03.03 : 상무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 현대제철 2.05%, BDP International/부국철강공업/삼성C& T/성진 2.01%, 동국제강 1.71% - '17.04.06 상무부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 동국제강 1.39%, 기타 1.39% - '17.08.04 ITC 반덤핑과 상계관세 일몰재심 개시 공고 - '17.09.06 상무부 2015-2016년도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 현대제철 2.05%, BDP International/부국철강공업/삼성C& T/성진 2.03%, 동국제강 1.84%
탄소합금강선재 (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7213.91.3011, 7213.91.3015, 7213.91.3020, 7213.91.3093, 7213.91.4500, 7213.91.6000, 7213.99.0030,	반덤핑	'17.4.17	-	철강 및 금속 - '17.4.17: 반덤핑 조사개시 * 덤핑마진율 : 한국 (33.96~43.25%) - '17.5.11: ITC, 산업피해 예비판 정 - '17.10.24: 미 상무부, 예비 덤핑 유효 판정 결정

	7227.20.0030, 7227.20.0080, 7227.90.6010, 7227.90.6020, 7227.90.6030, 7227.90.6035					* 덤핑마진율 : 한국 (10.09%) - '17.11.28: 상무부 반덤핑 예비판정 긍정판정 수정 * 덤핑마진: 한국 (40.80%)
탄소합금후판 (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7208.40.3000/3000 7208.51.0000/0045/0000 7208.52.0000, 7211.13.0000, 7211.14.0000/0045, 7225.40.1110/1180/3005 /3050, 7226.20.0000	반덤핑/ 상계관세	'16.4.29	'17.5.5	철강 및 금속	- '16.4.29: 상무부 조사 개시 * 미국 업계, 한국산 제품에 44.70~248.64% 덤핑마진 주장 - '16.5.23: ITC 산업피해 인정 예비판정 - '16.9.7: 상무부 상계관세예비판정 *보조금율 0.62%(미소마진) - '16.11.7: 상무부 반덤핑 예비판정 * 덤핑마진 : 6.82% - '17.3.29: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 * 반덤핑관세: 7.39% (포스코/기타) * 상계관세: 4.31% (포스코/기타) - '17.5.5: ITC, 산업피해 긍정 최종판정 - '17.5.25: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 덤핑마진: 7.10%(포스코/기타) * 보조금율: 4.31%(포스코/기타)
태양광 전지 및 패널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8541.40, 8501.31/61, 8607.20	세이프가드	'17.5.17	-	전기전자	- '17.4.26: 세이프가드 조사요청 - '17.5.17: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 '17.9.22: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긍정판정 - '17.10.3: 공청회 개최 - '17.11.14: ITC 조사결과 관고안 제출
페로바나듐 (Ferrovanadium)	7202.92.0000	반덤핑	'16.4.19	'17.4.19	철강 및 금속	- '16.4.19: 상무부 조사 개시 * 미국 업계, 한국산 제품에 20.25~54.69% 덤핑마진 주장 - '16.5.11: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 '16.10.25: 상무부 예비판정 - '17.3.16: 상무부 최종판정 * 코반/기타(3.22%) * 포춘메탈러지칼/우진(54.69%) (* AFA적용) - '17.4.19: ITC, 최종판정 * 상무부 반덤핑 관세 부과
폴리에스터 단섬유 (Polyester staple fiber)	5503.20.0040/45/ 60/65	반덤핑	'99.4.30	'16.12.20 (일몰재심)	섬유	- '11.7.1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 : 삼영 7.91%, 기타 7.91% - '11.9.30일부로 ITC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 '16.12.20: 일몰재심 최종판정 - '17.2.10: 반덤핑 관세(이전과 동일) 부과 지속 판정
합성고무 (ESBR; Emulsion Styrene Butadiene Rubber)	4002.19.0015, 4002.19.0019	반덤핑	'16.8.10	'17.8.3	화학	- '16.7.21: Lion Elastomers와 East West Copolymers사 제소 - '16.8.10: 상무부 조사개시 - '16.9.2: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 '17.2.17: 상무부 반덤핑 예비판 정 * 덤핑마진 : 11.63~44.30% - '17.7.11: 상무부 최종판정 예정 - '17.8.3: ITC 최종 판정 - '17.9.12: 반덤핑 관세 부과
합성단섬유 (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	5503.20.0058	반덤핑	'17.6.21	-	섬유	- '17.5.31: 반덤핑 제소 * 피제소국 : 중국, 인도, 한국, 대만, 베트남 * 덤핑마진율 : 도레이케미칼 (0.00%), 다운나라/휴비스 (45.23%), 기타(30.15%) - '17.6.21: 상무부 반덤핑 조사 개시 - '17.7.17: ITC, 산업피해 예비 판정 긍정판정 - '17.12.18: 상무부 예비 덤핑 판정 긍정 판정 * 한국 (0.00%~45.23%)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저융점 합성단섬유) 2017년 8월 10일, ITC 산업피해 예비긍정 판정
 - 2017년 6월 27일 NanYa Plastics America와 Fiber Innovation Technology사는 한국산 저융점 폴리에스터(Low Melt Polyester Staple Fiber) 제품에 대한 덤핑혐의로 상무부에 제소
 - 제소측은 한국산에 대한 덤핑마진을 32.95~45.84% 주장
 - ITC는 8월 10일 한국산 저융점 폴리에스터 섬유(Low-Melt Polyester Staple Fiber)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 긍정 판정을 발표함
 - 이번 예비 긍정 판정에 따라 상무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혐의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며 예비 반덤핑 혐의 조사 결과는 12월 4일 까지, 최종 결과는 2018년 2월 20일 내릴 예정
- (원추 롤러 베어링) 2017년 8월 11일, ITC 예비 긍정 판정
 - ITC는 8월 11일 발표를 통해 공정 가격이하로 판매된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 수입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피해 예비 긍정 판정을 내림
 - 2017년 6월 28일 Timken Company는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Tapered Roller Bearings)에 대해 반덤핑 혐의로 제소
 - 제소측은 한국산에 대한 덤핑마진을 1.12~66.82% 주장
- (가소제(DOTP)) 2017년 8월 18일 상무부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함
 - 가소제 성분이 들어있는 합성 화학제품들도 대상, 제품의 DOTP 함유량 따라 관세 부과 예정
 - * 업체별 덤핑마진 : LG화학 2.71% 애경유화: 4.08%, 기타: 3.69%
 - ※ DOTP성분과 섞인 후 화학 반응을 일으켜 다른 제품으로 완성될 경우 대상 제외
- (철강후판) 2017년 9월 6일, 상무부 2015~2016년도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발표
 - * 업체별 덤핑마진 : 현대제철(2.05%), BDP International/부국철강공업/삼성C&T/성진(2.03%), 동국제강(1.84%)
 - 8월 4일 ITC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일몰재심 개시를 공고함

○ (합성고무(ESBR)) 2017년 9월 12일 반덤핑 관세 부과

- 7월 11일, 상무부는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정 발표

* 금호석유화학, 대우인터내셔널 : 44.30% (AFA기준 적용) / 기타 : 9.66%

- 8월 3일, ITC가 산업피해 긍정 최종판정을 발표

* 한국산 수입에 대해 '긴급상황'(Ofical Circumstance) 수출자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이후 수출량 급격히 증가시키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 : 상무부의 덤핑 예비판정 관보게재일(2017년 2월 24일) 이전 90일까지 수입된 한국산 ESBR에 대한 반덤핑 관세소급 적용되지 않음.

- 이에 따라 9월 12일,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 (유정용강관) 2017년 10월 3일, 상무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발표

* 업체별 덤핑 마진 : 세아제강(6.66%), 넥스틸(46.37%), 기타(19.68%)

- 지난 4월 11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통해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특수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적용

* 아래 4개의 근거로 특수시장상황(PMS) 적용 (AFA 조항은 미적용)

- i) 원자재가 왜곡 : OCTG 원재료인 중국산 열연강 (hot-rolled steel) 가격이 낮게 책정
- ii) 한국산 열연강관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
- iii) 원자재인 열연강관 공급자와 유정용 강관 생산자 간 가격담합 의심
- iv) 한국정부의 전기가격 책정 개입

○ (PET 레진) 2017년 10월 17일, 미 상무부 반덤핑 조사 착수

- 2017년 9월 26일 DAK Americas LLC, Indorama Ventures USA INC., M&G Polymers USA LLC, Nan Ya Plastics Corp는 한국산 PET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에 대해 반덤핑 혐의로 제소

- 제소측은 한국산에 대한 덤핑마진을 58.73~103.48% 주장

- 미 상무부는 조사 개시 발표를 통해 55.74~101.41%의 덤핑혐의가 있다고 밝힘

* 해당 한국 기업 : 대림코퍼레이션, 듀폰 코리아, 한화케미칼, 휴비스, 진영 케미칼, 코오롱유화, 코오롱글로벌,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 더 파아랑, 포스코대우, 삼성SDI, SK케미칼, SK 종합화학, SKC, 티케이케미칼, 도레이 인터내셔널 총 16개 기업

- 또한, ITC는 11월 8일 산업피해 예비 긍정판정 발표함

- 2018년 3월 5일 상무부는 덤핑혐의 예비판정 결과 발표 예정

- (탄소합금강선재) 2017년 10월 24일, 상무부 덤핑혐의 예비 긍정 판정
 - * 업체별 덤핑마진 : 포스코/기타(10.09%)
 - 상무부는 11월 28일 예비판정 결과를 수정을 통해 업체별 덤핑마진을 변경함.
 - * 업체별 덤핑마진 : 포스코/기타(40.80%)
 - 상무부는 2018년 1월 8일까지 반덤핑 혐의 최종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미국무역위원회는 2018년 2월 22일까지 산업피해 최종 판정을 발표할 예정
- (유입식 변압기) 2017년 11월 7일, 상무부 제1차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발표
 - * 업체별 덤핑마진 : 효성/현대중공업/일진전기/일진/LS산전(29.04%)
 - 12월 4일 상무부 상황변동재심(Circumstances Review)을 개시
- (가정용 세탁기) 2017년 11월 8일, 상무부 2016-2017년도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 * 업체별 덤핑마진 : LG전자(0.64%)
 - ITC는 7월 3일 일몰재심 조사를 개시함
 - 상무부는 9월 6일 2015-2016년도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발표
 - * 업체별 덤핑마진 : LG전자(0.00%), 삼성전자(82.35%), 대우전자(79.11%)
- (세탁기) 2017년 11월 13일 ITC 세이프가드 조사결과 세이프가드 규제 권고안 제출
 - 9월 7일과 10월 19일에 ITC는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대통령은 2018년 2월 2일까지 단독 재량으로 최종 세이프가드 규제 내용 및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태양광 패널.전지) 2017년 11월 13일 ITC 조사결과 세이프가드 규제 권고안 제출
 - 9월 22일 ITC 산업피해 긍정 판정
 - 10월 3일 ITC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 대통령은 2018년 1월 26일까지 단독 재량으로 최종 세이프가드 규제 내용 및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냉간압연강관) 2017년 11월 15일, 상무부 덤핑혐의 예비 긍정 판정
 - * 업체별 덤핑마진 : 상신(48%), 울촌/기타(5.10%)
 - 상무부는 2018년 4월 2일까지 최종 덤핑혐의 판정을 발표할 예정

○ (합성단섬유) 2017년 12월 18일, 상무부 예비 긍정 판정

- 2017년 5월 31일 DAK Americas LLC, NanYa Plastics Corp, Auriga Polymers, Inc는 한국산 합성 단섬유(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한 반덤핑 혐의로 제소
- 상무부는 12월 18일 덤핑혐의 예비 긍정판정을 발표
 - * 업체별 덤핑마진 : 도레이케미칼(0.00%), 다운나라/휴비스(45.23%), 기타(30.15%)

○ (스탠다드 강관) 2017년 12월 6일, 상무부 2015~2016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발표

- * 업체별 덤핑마진 : AJU 비스틸(23.17%), 휴스틸(8.18%), 현대제철(38.16%), 넥스틸(23.17%), 세아제강(23.17%)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미국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 355건(308건 규제 중, 47건 조사 중), 상계관세 109건(88건 규제 중, 21건 조사 중), 세이프가드 2건 조사 중
 - 대상국가 : 중국(163건), 인도(39건), 한국(31건), 대만(24건) 등의 수입
 - 규제품목 : 철강금속(264건), 화학제품(71건) 등의 수입
 - * 자료원 : WTO(국가 및 품목별 건수는 세이프가드 조사 중인 2건 미포함, 1개 품목별 여러 국가인 경우 중복 집계한 수치)
- 2017년 한 해 동안 80건의 신규 제소가 접수되었으며, 앞으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기존 통상법을 통해 의회의 승인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무역 정책 실현
 - (무역적자 실태 조사) 행정명령을 통해 대미 무역 흑자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적자 원인과 미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을 분석 지시
 - (무역구제조치)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수입업자의 담보금 요건을 강화하고, 관세법 위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지시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급증, 절차법 강화를 통한 高관세 부과
 - 2017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는 82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52건)의 절반을 초과 (1980~2016년, 연평균 23.7건 조사개시)
 - 2017년 개시된 건들 중 반덤핑 조사는 36건, 상계관세 조사는 25건이며, 2016년에는 36건의 반덤핑 조사, 16건의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됨
 - 또한, 2017년에 상무부는 중국을 상대로 2건의 자체발동 조사를 개시하였고 이는 26년 만에 부활한 조치임

- 상무부가 반덤핑(상계관세) 자체 조사 개시 권한을 적극 발휘함으로써 제소 절차를 간편화하고,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특수시장상황(PMS)’을 적용하여 징벌적 수준의 높은 관세 부과가 우려됨
- 무역확장법 232 / 201 / 301조, 관세법 337조 부활, 수입 규제 수단 총동원
 - (232조)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의 국가안보 침해 조사를 지시 (4.20, 대통령각서)
 - (201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태양광 전지와 가정용 세탁기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산업 피해 조사에 착수
 - (301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301조 조사를 진행 중
 - (337조) ITC는 중국 철강업체 40개사 대상 (1)가격 담합, (2)기업 기밀 탈취, (3)허위 표기 혐의로 관세법 337조 위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입 규제 수단을 총동원하여 수입규제를 강화할 수 있음
- 환율 문제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이슈화
 - 월버 로스 상무장관은 해외국의 환율조작 행위를 부당 정부 보조금(subsidy)으로 규정함으로써 상계관세 부과를 고려중이라고 밝힘
 - 현재 WTO는 환율조작 행위를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 따라서 미국 정부는 WTO의 환율조작에 대한 규정과 제재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 기존 무역협정 재협상 및 양자 방식 협상 추진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4.29) WTO 협정을 포함한 미국이 체결한 모든(14개) FTA의 재검토 지시. 상무부와 USTR은 180일 안에 규정 위반과 남용, 일자리 손실, 무역적자 원인 등 FTA의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책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음
 - 다자간 자유무역협정(TPP, TTIP) 협상을 중단하고, 양자 간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협상에서 우위를 점유한다는 전략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강화 예상

- 미 철강업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산 및 한국산 저가 철강제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한국산에 대해서도 정부 보조금 및 초과 생산으로 낮은 단가의 철강을 미국으로 덤핑하고 있으며, 또한 초과 생산된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가공하여 미국으로 재수출하고 있다며 비판
- 미 상무부는 철강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반덤핑·상계관세 인력을 대폭 증원했으며, 「철강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도 운영 중이므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 제소가 용이한 상황
- 현재 진행 중인 철강 관련 232조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됨. 현재 행정부 내에서 232조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조사 결과와 대통령의 채택 여부에 관심이 주목됨

○ (자동차, 가전) 미국 내 생산 및 고용 확대 압박

- 트럼프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GM, 포드, 토요타 등 기업명을 언급하며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고용 창출을 압박하여 해당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설비 설립을 추진하거나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
-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기업들도(한국기업 포함) 무언의 압박을 느끼고 자체적으로 미국 내 생산설비 확장을 검토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여 향후 제조업 전반에 영향 예상
- 자동차 및 가전업체들의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하면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서 수입되던 완제품과 부품의 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
- 2018년 초, 트럼프 대통령은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를 실행할 가능성이 전망됨
- 한편, 향후 한-미 FTA 관련 협상 최대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하고 있는 양국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이 부각됨

6. 베트남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베트남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5건으로, 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4건이며, 이 중 세이프가드 1건은 조사 진행 중으로 잠정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상태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3건, 화학 2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DAP·MAP 비료 (Di-ammonium Phosphate Fertilizers)	3105.10.90 3105.10.20 3105.20.00 3105.30.00 3105.40.00 3105.51.00 3105.59.00 3105.90.00	세이프가드	'17.5.12	-	화학	- '17.3.31 : 비나켄의 자회사 가 세이프가드 제소 - '17.5.12 :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한국 포함 모든 국가 대상) - '17.8.4 :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 '17.11.10 : 조사기간 2개월 연장 결정('18.1.12 조사종료)
(아연)도금강판 (Coated steel sheets)	7210.41 7210.49 7210.50 7210.61 7210.69 7210.90 7212.30 7212.50 7212.60 7225.92 7225.99 7226.99	반덤핑	'16.3.3	'17.3.30	철강 및 금속	- '16.3.3 : 한국과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16.5.23 : 예비판정일 연기 - '16.9.1 : 반덤핑 예비판정 . '16.9.16-'17.1.13(120일간)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 POSCO 12.40%, 기타9.0% - '17.3.30 : 반덤핑 최종판정 . POSCO 7.02%, 기타9.0%
글루탐산나트륨 (Monosodium glutamate)	2922.42.20	세이프가드	'15.9.1	'16.3.10	화학	- '15.9.1 : MSG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한국 포함 모든 국가 대상) - '16.3.10 :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최종판정

						. '16.3.25부터 4년간 톤당 총량세 부과 결정
반가공 합금철강재 (Semi-finished and certain finished products of alloy and non-alloy steel)	7207.11.00 7207.19.00 7207.20.29 7207.20.99 7224.90.00 7213.10.00 7213.91.20 7214.20.31 7214.20.41 7227.90.00 7228.30.10 9811.00.00	세이프가드	'15.12.25	'16.7.18	철강 및 금속	- '15.12.25 : 반가공 합금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한국 포함 모든 국가 대상) - '16.3.7 :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발표 . '16.3.22부터 200일 이내 . 철강괴(23.3%), 철강봉 (14.2%) - '16.7.18 :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 8월2일부터 철강괴(23.3%), 철강봉(15.4%)에 관세부과 후 단계적으로 인하
착색 (아연)도금강판 (Pre-painted galvanized sheet and strip)	7210.70.10 7210.70.90 7212.40.10 7212.40.20 7212.40.90 7225.99.90 7226.99.19 7226.99.99	세이프가드	'16.7.6	'17.5.31	철강 및 금속	- '16.7.6 :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 '16.12.22 : 세이프가드 조사기간 연장(2개월) 결정 - '17.5.31 :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 '17.6.15 : 세이프가드 조치시행 . 할당 외 물량에 대해 19% 관세부과 . 한국 할당량 : 1년차 (34,451톤), 2년차(37,897톤), 3년차(41,686톤)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DAP 비료) 2017년 11월 10일,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 및 조사기간 연장 결정

- 2017년 8월 4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중(2017년 5월 12일 조사 개시)인 화학비료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함(Decision No. 3044/QD-BCT)
- 동 결정에 따라 8월 19일부터 8개 화학비료 품목(베트남 세관의 상품분류체계에 따른 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해 톤당 185만 5790vnd(미화 약 82달러)의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당시 발표된 조사 대상 품목보다 2개 품목(3105.10.20., 3105.20.00) 추가됨.
- ** [잠정 조치 면제 조항] 질소(N) < 7% 또는 인(P₂O₅) < 30% 또는 칼륨(K₂O) > 3%의 성분 함량을 포함하는 제품은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기간을 판정일로부터 최장 200일로 규정한 관련 법령(Ordinance 42/2002/PL-UBTVQH11) 조항에 따라 동 조치의 효력은 2018년 3월 18일까지 유지됨

* 단, 상기 종료일 전 세이프가드가 정식 발동될 시 잠정 세이프가드의 효력이 자동 소멸됨

- 2017년 11월 10일, 산업무역부는 동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8년 1월 12일 동 조사가 완료될 예정(Decision No.4236/QĐ-BCT)

○ (식물성 기름) 2017년 5월 7일,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

- 2013년 8월 세이프가드 최종 판정에 따라 4년간 취해졌던 식물성 기름(HS코드 1507.90.90;1511.90.91;1511.90.92;1511.90.99)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조치가 2017년 5월 7일부로 종료됨
- 베트남 경쟁관리국(산업무역부 산하 무역구제조치 관할기관)은 식물성 기름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시한이 만료됐으며, 세이프가드 기간 연장을 청원하는 국내 기업이 없어 동 규제를 종료했다고 밝힘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5개국 7개 품목에 대해 11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며, 1건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중
 - 규제품목 : 철강금속(9건), 화학(2건)
 - 규제유형 : 반덤핑(7건 규제 중), 세이프가드(4건 규제 중, 1건 조사 중)
 - 대상국가 : 중국(3건), 한국(1건), 인도네시아(1건), 말레이시아(1건), 대만(1건)

(* 반덤핑 규제 중인 건수 기준)

* 자료원 : 베트남 경쟁관리국 홈페이지(www.vca.gov.vn), WTO(i-tip.wto.org)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2017년 하반기 대외교역 동향

- 베트남 통계청 추산 기준 2017년 베트남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 2,137억 7,000만 달러(전년 대비 21.1% 증가), 2,111억 달러(전년대비 20.8% 증가)로, 베트남 사상 최초로 교역액 4천억 달러를 돌파함. 무역수지도 역대 최대치인 약 27억 달러의 흑자를 실현
- 올해 교역액 증가를 견인한 요인으로는 삼성의 휴대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관련 원부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 급증이 꼽히고 있음
 - * 삼성의 휴대폰 신제품(Galaxy Note 8) 출시 직전인 8월 베트남은 사상 최대의 월별 수출액(약 197억 6,696만 달러)을 기록
- 베트남의 대한국 무역수지도 전년 대비 53.4% 증가한 3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한국은 중국을 꺾고 베트남의 최대 무역적자국으로 부상함

○ 통상정책 동향

- 베트남 정부는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대미 통상마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경제협력 및 우호 증진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대 경제 원조국인 일본과도 미국이 이탈한 TPP의 조기 발효 추진에 협력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과는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표면적 유대 관계를 유지 중인 상황
- 특히 베트남 정부가 글로벌 및 지역 경제통합체 참여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어 베트남의 양자·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대외개방 기조는 지속될 전망
- 특히 최근에는 11개국 체제의 TPP는 물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과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추진에 적극 참여 중임

〈 베트남의 FTA 추진 현황 〉

구분	발효 중	발효 예정 (타결·서명)	협상 중	검토 중
ASEAN 차원	AIFTA(인도, '10년 발효) AANZFTA(호주 뉴질랜드, '10년 발효) AKFTA(한국, '07년 발효) AJCEP(일본, '08년 발효) ACFTA(중국, '05년 발효)	-	RCEP ASEAN-EU FTA	AHKFTA(홍콩) ASEAN-Pakistan FTA CEPEA
베트남 단독	AEC(아세안경제공동체, '15년 출범) VJEPA(일본, '09년 발효) VCFTA(칠레, '14년 발효) VKFTA(한국, '15년 발효) VA-EU FTA(유라시아경제연합, '16년 발효)	TPP('16년 서명) EVFTA(유럽연합, '15년 타결)	VFTAFTA (유럽자유무역연합) VIFTA (이스라엘)	FTAAP

* 자료원 : ADB(아시아개발은행),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 WTO센터 및 하노이무역관 종합

○ 대외무역관리법 제정

- 베트남의 대외무역 발전과 수출입 시스템 체계화를 위해 사상 최초로 입법 추진된 대외무역관리법이 2017년 6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2018년 1월 1일부로 발효됨
- 본 법은 수출입 관리방식, 수출입 허가금지·잠정중단·제한, 통관 전 검사 규정 등 다수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중복·산재돼 있던 수출입 관련 규정을 통합한 것으로, 그동안 시행령 형태로 규정돼 있던 수입규제(세이프가드, 반덤핑, 반보조금 등)를 법 조항화한 것이 특징

○ 수입 전 품질검사 의무화 품목 지정 법규 정비

- 베트남 제품·재화 품질법(2007년 11월 21일자 Law No.05/2007/QH12)의 하위 법규로서 베트남 국내 유통 또는 수입 시 품질검사 의무화 품목을 지정한 총리 결정문(Decision No.50/2006/QĐ-TTg)의 효력이 10월 5일부로 종료됨
- 하지만 행정 부처별로 관할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규정(품질관리 대상 품목 리스트 포함)을 별도의 법규로 지정해 놓은바 관련 규정 확인이 필요
- * 베트남 각 행정부처들은 '제품·재화 품질법'에서 품질관리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 또는 관련 기술규정에 따라 보다 엄격한 품질검사가 요구되는 'Group-2 품목'을 시행규칙(Circular) 형태로 제정함

○ 화학물질법 일부 조항 개정 시행령 공포

- 화학물질법 일부 조항 이행을 위한 지침 제공 및 세부 규정 시행령(Decree No. 113/2017/ND-CP)이 2017년 10월 9일 공포돼 11월 25일부로 발효됨
- * 상기 시행령은 2008년 10월 7일자 Decree No. 108/2008/Nd-CP, 2011년 11월 4일자 Decree No. 26/2011/ND-CP를 대체하며, 이 시행령 발효로 2016년 7월 1일자 Decree No. 77/2016/ND-CP의 8조 규정이 폐기됨
- 동 시행령은 ①화학물질 생산·거래 시 안전 보장을 위한 공통 요건, ②조건부 생산·거래 허용 화학물질·제한된 화학물질의 리스트 및 사업 요건과 허가 취득 절차, ③공업 전구물질 생산·거래 사업 요건 및 허가 취득 절차, ④금지 화학물질과 독성 물질 리스트 등 화학물질의 생산·거래(수출입 포함)와 관련한 전반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완성차 수입 요건 강화

- 조건부 투자사업 분야 리스트 개정을 골자로 하는 투자법 개정안(Law No. 03/2016/QH14)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로 자동차 생산·조립 및 수입업이 조건부 투자사업 부문으로 전환됨
- 이어서 「자동차 제조·수입·품질보증 및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 요건 시행령 (Decree No.116/2017/ND-CP)」이 2017년 10월 17일 공포와 즉시 발효함.
- 상기 시행령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산업무역부가 발급하는 자동차 수입 사업 허가서를 취득한 업체에 한해서만 완성차 수입이 허용되며, 동 사업 허가서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① 기업 소유 또는 기업이 임대 계약하거나 기업의 특약점 네트워크에 속하는 자동차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 시설 보유
 - ② 결함이 있는 수입차의 리콜(회수) 조치를 해외 자동차 제조사를 대신해 수행할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확인서

○ 수출·수입세 규정 시행령 개정 시행령 발표

- 「수출세·특혜관세·종량세 대상 품목과 세율·혼합세·관세량당 외 수입세율 규정 시행령(2016년 9월 1일자 Decree No.122/2016/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 개정 시행령(Decree 125/2017/Nd-CP)이 11월 16일 발표돼 2018년

1월 1일부로 발효됨

- ① 수출세 부과 품목 중 211호 품목군에 대한 규정 보완, ② 98류 별도 우대 관세 적용 품목 및 세율 규정 중 일부 품목 변경, ③ 우대관세 적용 대상 품목에서 석유화학제품 삭제, ④ 중고차 수입 시 적용되는 차종별 관세 유형 변경, 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조건부 수입세 면제 조항 추가, ⑥ 관세할당제도 시행과 관련한 조항 추가 등이 주요 개정 내용임

* **(수출세 부과 관련 보완 조항)** 수출세표상에서 211호군에 속하는 품목은 (i)수출세표 1~210호에 속하지 않으며, (ii)자원·광물·소비 에너지 총가치가 제품 원가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서, 세관 신고 시 품목명, HS코드(수입세율표상의 HS코드 8단위), 수출세율 5%를 기재해야 함을 명시

** **(우대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석유화학제품)** 벤젠(HS코드 2707.10.00/2902.20.00), 크시올(HS코드 2707.30.00), 파라-크실렌(HS코드 2902.43.00), 폴리프로필렌(3902.10.30./3902.10.90) 등

*** **(관세할당제도 시행 관련 추가 조항)** 관세할당량은 산업무역부 규정에 따르나,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관세할당량과 관련한 조항이 있는 경우 국제조약 조항이 우선적으로 준수됨을 명시. 단, 베트남 가입 국제조약에 관세할당 규정은 없으나 특혜관세 조항이 있는 경우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규정한 관세할당량에 해당되는 물량에 대해서만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

○ 별도 우대관세 적용 품목 변경

- 상기 개정 시행령에 의거, 98류에 속하는 품목 가운데 동 시행령(부록 II의 Section II. Part I. 2.2~2.9 조항)에 규정된 표준 및 기술적 요소를 충족할 시 우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

* 품목군이 6개에서 8개로 증가. (HS코드 98.07 삭제, HS코드 98.25, 98.46, 98.47 추가)

변경 전 (Decree No.122/2016/ND-CP)	변경 후 (Decree No.125/2017/ND-CP)
• (HS코드 98.07) Bleached Kraft used for cement bags • (HS코드 98.11) Alloy steel with BO and/or Cr and/or Ti • (HS코드 98.26) Fillers, skin care products of heading 98.25, Nylon cord fabric 1680/D/2 and 1890 D/2 • (HS코드 98.30) Copper wire with the cross section exceeding 6mm but not exceeding 8mm • (HS코드 98.37) Polypropylene resin in	• (HS코드 98.11) Alloy steels containing boron and/or chromium and/or titanium • (HS코드 98.25) Fillers, skin care commodities • (HS코드 98.26) 1680/D/2 and 1890 D/2 nylon tire cord fabrics • (HS코드 98.30) Copper wires whose dimension of cross section is between 6 mm and 8 mm • (HS코드 98.37) Polypropylene granules in primary form

primary form • (HS코드 98.39) Non-alloy steel, in rod or roll, subjected to hot rolling	• (HS코드 98.39) Bars and rods, hot-rolled, in irregularly wound coils, of other alloy steel • (HS코드 98.46) Set top boxes • (HS코드 98.47) Neoweb commodities
--	---

○ 중고차 수입 시 적용되는 차종별 관세 유형 변경

- 베트남에서는 수입 중고차에 대해 차종별로 상이한 유형(종량세·종가세·혼합세)의 수입세가 부과됨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HS코드 87.02에 속하는 10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운전석 포함) 중고 승용차에 부과되는 수입세 유형이 종량세에서 혼합세로 변경됨

수입세 유형	변경 전 (Decree No.122/2016/ND-CP)	변경 후 (Decree No.125/2017/ND-CP)
종량세	• HS코드 87.03에 속하는 배기량 1,500cc 미만의 9인승 이하(운전석 포함) 승용차 • HS코드 87.02에 속하는 10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운전석 포함) 승용차	• HS코드 87.03에 속하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9인승 이하(운전석 포함) 승용차
혼합세	• HS코드 87.03에 속하는 배기량 1,500cc 이상의 9인승 이하(운전석 포함) 승용차	• HS코드 87.03에 속하는 배기량 1,000cc 초과 9인승 이하(운전석 포함) 승용차 • HS코드 87.02에 속하는 10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운전석 포함) 승용차
종가세 *우대관세율 150%	• HS코드 87.02에 속하는 16인승 이상(운전석 포함) 승용차 • HS코드 87.04에 속하는 총적재중량 5톤 이하의 화물차(단, 냉동차, 폐기물 압착장치가 장착된 폐기물 수거차, 유조차, 귀중품 운송용 장갑차, 레미콘차, 리프트 장착 진흙 운반차 등은 제외)	• HS코드 87.02에 속하는 16인승 이상(운전석 포함) 승합차 • HS코드 87.04에 속하는 설계 총중량 5톤 이하의 화물 운송용 자동차(단, 냉동차, 폐기물 압착장치가 장착된 폐기물 수거차, 유조차, 귀중품 운송용 장갑차, 레미콘차, 리프트 장착 진흙 운반차 등은 제외)
종가세 *동종 신차에 적용되는 우대 수입세율의 1.5배	• 타 HS코드 87.02, 87.03, 87.04에 속하는 각종 자동차	• 타 HS코드 87.02, 87.03, 87.04에 속하는 각종 자동차

○ 자동차 부품에 대한 조건부 수입 관세 면제

- 상기 개정 시행령에 의거, 베트남 국내 자동차 제조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품에 한해 5년간(2018~2022년) 수입 관세가 면제됨

* 세관 신고 시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일반 관세율, 우대 관세율, 특혜 관세율 중 하나를 적용해 관세를 납부하게 됨.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관세 면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서류를 제출, 관세 특혜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사후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후 검사 결과 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 기 납부된 관세를 환급받게 됨

〈자동차 부품의 관세 면제 특혜 요건〉

- (품목) 개정 시행령에 규정된 HS code 98.49(98.49.11~98.49.40)에 한한 품목으로서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자동차 부품
- (배기가스 배출 기준) 2018~2021년에는 유로 4기준, 2022년 이후에는 유로 5기준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생산량) 매 기간 충분한 생산량을 확보해야 하며, 차종별·기간별 확보해야 할 생산량은 다음과 같음.

* 9인승 이하 차량 또는 2500cc 이하의 차량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H	2H	1H	2H	1H	2H	1H	2H	1H	2H
최소 생산량 (대)	8,000	8,000	8,500	8,500	10,000	10,000	11,500	11,500	13,500	13,500
특정 1개 모델의 최소 생산량 (대)	3,000	3,000	3,500	3,500	4,000	4,000	4,500	4,500	5,000	5,000

* 5톤 이하의 트럭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H	2H	1H	2H	1H	2H	1H	2H	1H	2H
최소 생산량 (대)	3,500	3,500	4,000	4,000	4,500	4,500	5,500	5,500	6,500	6,500
특정 2개 모델의 최소 생산량 (대)	2,000	2,000	2,500	2,500	3,000	3,000	3,500	3,500	4,000	4,000

* 5톤 초과 트럭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H	2H	1H	2H	1H	2H	1H	2H	1H	2H
최소 생산량 (대)	2,500	2,500	3,000	3,000	3,500	3,500	4,500	4,500	5,500	5,500
특정 2개 모델의 최소 생산량 (대)	1,000	1,000	1,200	1,200	1,400	1,400	1,700	1,700	2,000	2,000

* 미니버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H	2H	1H	2H	1H	2H	1H	2H	1H	2H
최소 생산량 (대)	400	400	450	450	500	500	600	600	700	700
특정 1개 모델의 최소 생산량 (대)	150	150	200	200	250	250	300	300	350	350

* 버스/4인승 투도어형 승용차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H	2H	1H	2H	1H	2H	1H	2H	1H	2H
최소 생산량 (대)	800	800	850	850	1,000	1,000	1,200	1,200	1,400	1,400
특정 1개 모델의 최소 생산량 (대)	450	450	500	500	600	600	700	700	800	800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화학 비료

- 2017년 5월에 착수된 화학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기간이 2개월 연장돼 올해 1월 12일 종료될 예정임. 이에 따라 올해 초 DAP·MAP 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가 가려질 전망
- 한편, 저급 비료와 가짜 비료 유통으로 인한 시장 왜곡과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비료 수입·유통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베트남 정부도 비료제품 관리 법규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베트남의 비료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7. 브라질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21일 기준 브라질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1건으로, 모두 반덤핑 조치이며 이중 1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3건, 화학 3건, 전기전자 1건, 섬유 2건, 기타 2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나일론사 (Nylon Synthetic Filament Yarn)	5402.3111 5402.3119 5402.4523	반덤핑	'12.7.9	'13.12.27	섬유	- '18.12.27 종료 예정 • 효성: US\$ 156.32/t • 코오롱: US\$ 338.10/t • 태광: US\$ 163.25/t • 기타: US\$ 3,224.91/t
니트릴고무 (NBR)	4002.59	반덤핑	'17.6.26	-	화학	- '17.6.26 조사 개시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 (Pneumatic Tires for Trucks and Buses)	4011.2090	반덤핑	'13.6.10	'14.11.24	기타	- '19.11.24 종료 예정 • 금호 타이어: US\$ 317.77/t • 한국 타이어: US\$1,794.73/t • 기타: US\$2,031.31/t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Flat-rolled Stainless Steel)	7219.3200 7219.3300 7219.3400 7219.3500 7220.2094	반덤핑	'12.4.13	'13.10.4	철강 및 금속	- '18.10.4. 종료 예정 • 포스코: US\$ 267.84/t • 현대: US\$ 267.84/t • 기타: US\$ 940.47/t
승용차용 타이어	4011.1000	반덤핑	'11.12.29	'14.1.16	기타	- '19.1.16 종료 예정

(Tire)						• 한국타이어:US\$ 0.24/kg • 금호타이어:US\$ 0.61/kg • 넥센타이어:US\$ 0.14/kg • 기타업체: US\$ 2.56/kg
압연실리콘철강 (Flat-rolled Product Silicon Steel)	7225.1900	반덤핑	'11.4.19	'13.7.17	철강 및 금속	- '18.07.17. 종료 예정 • 포스코: US\$ 132.50/t • Kiswire: US\$ 132.50/t • 기타: US\$ 231.40/t
염화비닐수지 (PVC: Polyvinyl Chloride Resins)	3904.1010	반덤핑	'07.9.21	'08.8.29 '14.8.15 (일몰제심)	화학	- '14.8.14 적용기간 연장 ('19.8.14 종료 예정) • LG 화학: 2.7% • 기타: 18.9% *한화화학 반덤핑 적용제외
타포린 (Tarpaulin, PVC Coated fabric)	3921.9019	반덤핑	'15.3.23	'16.6.24	섬유	- '16.6.24 최종 판정 ('21.6.24 종료 예정) • 한화: US\$ 0.93/kg • Starflex:US\$ 0.29/t • 한국 3M: US\$ 0.32/kg • 일신: US\$ 0.32/kg • 원풍: US\$ 0.32/kg • 기타: US\$ 0.93/kg
페라이트 자석 (Ferrite Segment magnet)	8505.1910	반덤핑	'14.6.16	'15.5.4	전기전자	- '20.5.4 종료 예정 • Ugimag Korea: • US\$ 2,461/t • Dong-A Electric/Pacific Metals : US\$ 117.38/t • 기타: US\$2,461/t *쌍용: 반덤핑적용 제외
평판압연제품 중 후판 (Heavy Plate Steel)	7208.5100 7208.5200	반덤핑	'12.5.3	'13.10.3	철강 및 금속	- '18.10.03. 종료 예정 • 포스코: US\$ 135.08/t • 현대: US\$ 135.84/t • 기타: US\$ 135.84/t
폴리프로필렌수지 (Polypropylene Resin)	3902.1020 3902.3000	반덤핑	'13.3.19	'14.8.27	화학	- '19.8.27 종료 예정 • LG 화학: 3.2% • 롯데화학: 2.4% • GS Caltex/효성/삼성 2.6% • SK 화학: 6.3% • 기타: 6.3%

자료원: 통상개발산업부(MDIC)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 17년 하반기에는 대한 수입규제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 17년 6월 26일에 시작한 한국산 니트릴 고무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임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 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브라질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168건 규제 중, 23건 조사 중), 상계관세(1건 규제 중, 1건 조사 중)
 - 규제품목 : 타이어제품*(19건), 철강제품(10건), 평판유리제품, 아트지(각 6건), 강철관(4건) 등
 - 대상국가: 중국(57건), 미국(15건), 한국(10건), 독일(10건), 대만(9건), 멕시코(7건), 인도(7건), 남아공(5건) 등 (반덤핑 규제 중인 건)
 - * 승용차, 화물차, 농기구, 자전거 타이어
 - ** 자료원 :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MDIC)
 - *** 브라질 정부의 수입규제 현황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17년 12월 21일

- 브라질 정부는 75개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규제는 반덤핑 조치임
 - * 동일품목에 대한 규제가 여러 국가 제품에 적용된 경우 1개 품목으로 간주
 - 브라질 정부의 수입규제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57개 품목에 대해 규제 중
 - 생활소비재부터 전자재, 화학제품 등 다양한 품목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무역동향) ' 17년 브라질 경제는 회복의 조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세를 지속함

- ' 17년 1-11월 브라질 대외 수출액은 2,00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19%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1381억 달러로 9.14% 증가
 - ' 17년 1-11월 무역수지는 6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브라질 정부는 '17년 무역 흑자가 약 66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공식통계 미발표
 - 경제전문가들은 4% 미만의 비교적 낮은 물가상승률 유지 및 본격적인 소비 증가에 따라 ' 18년에는 수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중앙은행은, ' 18년에는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 흑자가 전년보다 감소한 525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FTA) 브라질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인도 등 대규모 시장에 대한 공약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방안도 검토 중임
- 현재 브라질(메르코수르)은 EU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마무리 단계에 있음. 당초 계획은 ' 17년 내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으나, EU 측에서 '18년 초반으로 연기 요청함
 - 브라질은 멕시코와는 관세 인하와 교역 확대를 위한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며 태평양동맹과의 무역협상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등 시장 개방 움직임이 커지고 있음
- *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제조업 제품 수출이 4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브라질은 작년 한국 및 일본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예비 회의를 가졌으며 현재 관세 인하 품목을 검토 중임
- (슈퍼공업세 폐지) '슈퍼 공업세'로 불리는 Inovar-Auto 제도가 ' 17년 12월 말로 폐지됨에 따라 '18년에는 완성차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폐지 조치는 ' 16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브라질 정부의 Inovar-Auto를 비롯한 제조업 지원 정책에 대해 자국산과 수입품의 차별을 금지하는 WTO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정함에 따른 것임
 - Inovar-Auto는 2012년 브라질 정부가 자동차분야 기술혁신과 부품 현지생산 강화를 목적으로 만든 정책으로 국산부품 의무사용 정책임. 의무사용 비율 65%를 준수했을 경우 공업세(IPI) 감세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해당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자동차의 경우는 30%p의 IPI(일명 슈퍼공업세로 불림)가 추가로 적용됨

- (유전 개발 관련 국산장비 의무 사용 정책 완화) 브라질 광업에너지부(MME)는 석유, 천연가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함
 - 브라질 정부는 '17년 2월 유전 굴착 장비부문에서 국산부품 의무사용비율을 50% 이상 줄였으며, 해당 분야의 분류 규칙을 간소화함
 - 완화된 국산 부품 의무사용 조건들은 2017년부터 유전 광구 입찰에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전개발 장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대선) '18년 10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새 대통령, 연방의원과 주 의원, 주지사의 활동이 시작될 예정임
 - 현재 지지율 1위는 룰라 전 대통령(34~37%)이며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17~22%)와 중도 성향의 마리나 시우바(6~8%)가 뒤를 잇고 있음
 - 지지율 1위인 룰라 전 대통령은 비리 연루로 대선 전에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결과 예측이 어려움
 - 대선 당선자에 따라 현 브라질 정부의 대외무역 개방 정책이 유지되지 않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

□ 수입규제 예상품목

- '17년 12월 21일 기준, 덤핑혐의로 조사 중인 제품(니트릴 고무, 4002.59.00) 외에 특별히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한국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니트릴 고무의 경우, 브라질 기업 Nitriflex S.A. Indústria e Comércio 사가 덤핑 혐의로 제소하여 조사가 시작됐으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반덤핑 규제 적용이 예상됨

8. 아르헨티나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아르헨티나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4건으로, 반덤핑 규제 중 2건, 반덤핑 조사 진행 중 2건임
 - 품목별로는 화학 3건, 전기전자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디옥틸프탈레이트 (DOP; Dioctyl Phthalate)	2917.35.00	반덤핑	'17.4.4	-	화학	- '17.4.4 반덤핑 조사개시 - 대상국가: 중국, 멕시코, 한국 * 덤핑마진율 : 한국 28.57%, 중국 30%, 멕시코 56.73% - '17.8.1: 반덤핑 예비판정 * 반덤핑관세: 6.73% (잠정) - '17.10.26 : 반덤핑 예비판정에도 불과, 잠정관세 부과없이 조사 계속 진행할 것으로 통보
삼상 유입 변압기 (단락용량 10,000KVA 초과 600,000KVA 이하의 것)	8504.23.00	반덤핑	'13.01.03	'14.7.2	전기전자	- '13.5.23 예비판정 : 한국:178%, 중국:139% - '14.7.2일 최종 덤핑마진 조사결과 발표 : 한국:52%, 중국:54% * 최종판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를 이유로 '17.7.17일까지 적용을 유보함 - '15.1.16: 반덤핑 규제 적용일 연장 ('17.7.17~'19.7.2 연장적용) - '17.7.17 일자로 적용을 유보 종료, 현재 반덤핑관세 52% 적용중
폴리에틸렌	3907.60.00	반덤핑	'12.04.25	'13.10.24	화학	- 반덤핑관세율 : 17.61%

테레프탈레이트 (PET)						- 규제기간 : '13.10.24일부터 5년간 반덤핑규제 적용 - '16.3.29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 실시 - '17.9.28 재조사 결과 발표, 반덤핑 관세율 상향 조정 (8%→17.61%)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PA; Phthalic Anhydride)	2917.32.00	반덤핑	'17.4.4	-	화학	- '17.4.4 반덤핑 조사개시 - 대상국가: 멕시코, 칠레, 한국 * 덤핑마진율 : 한국 5.71%, 멕시코 34.15%, 칠레 39.34% - '17.8.1: 반덤핑 예비판정 * 반덤핑관세: 28.57% (잠정) - '17.10.26 : 반덤핑 예비판정에도 불과, 잠정관세 부과없이 조사 계속 진행할 것으로 통보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디옥틸 프탈레이트) 2017년 4월 4일, 반덤핑 조사개시
 - 2016년 7월 4일 VARTECO QUÍMICA PUNTANA S.A사 제소로 2017년 4월 4일 반덤핑 혐의 조사 개시
 - 조사대상국 : PA(중국, 멕시코, 한국) / DOP(멕시코, 칠레, 한국)
 - 제소업체가 주장하는 덤핑마진율 : PA(중국 30%, 멕시코 56.73%, 한국 28.57%) / DOP(멕시코 34.15%, 칠레 39.34%, 한국 5.71%)
 - 잠정 반덤핑 판정에도 불과하고 잠정 관세 부과 없이 계속 조사 진행할 예정.
- (PET) 2017년 9월 28일,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 완료, 관세율 상향조정
 - 2015년 5월 12일 제소자 DAK AMERICAS ARGENTINA S.A.사의 반덤핑 관세율 재심 요청으로 2016년 3월 29일 아르헨티나 경제재정부는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 착수
 - 2017년 9월 28일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8%였던 반덤핑 관세율을 상향 조정 (한국 17.16%, 중국 16%, 대만 15%, 인도 12%, 태국 9.09%)

○ (삼상 유입 변압기) 2019년 7월까지 규제예정

- 아르헨티나 계획관리부는 정부의 에너지 부분 투자확대에 따른 전력설비 기자재 수요 증가로 변압기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5년 7월 17일까지 최종판정 결과 적용을 한 차례 유보시킨 바 있음
- 2015년 7월 16일, 아르헨티나 에너지청 및 연방기획 공공투자부는 초고압(EHV) 변압기(단락 용량이 1만kVA 초과 60만kVA 이하의 것)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 적용을 2년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7년 7월 17일까지 재차 적용 유보됨
- 초고압(EHV)변압기를 제조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는 FARADAY SAICyF社로 아르헨티나 변압기 수요 충족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2016년 말부터 TADEO CZERWENY SA社도 초고압 변압기를 제조하기 시작하여 더 이상의 유보는 없음
- 52%인 반덤핑 관세는 2019년 7월 2일까지 부과될 예정
 - * 한국 ad valorem FOB 52%
 - * 중국 ad valorem FOB 54%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아르헨티나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83건 규제 중, 29건 조사 중) 위주
- 대상국가 : 중국(59건), 브라질(13건), 태국(5건), 대만(4건) 순
- 규제품목 : 의류, 자전거, 철강제품, 원단, 화학원료 등 다양
- * 자료원 :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 WTO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수입허가제(LNA, Licencias NO Automaticas) 시행

- 2015년 말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민감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허가제 시행중이고, 현재까지 총 8번의 수정(추가 및 삭제)을 거쳐 HS코드 1,500개 이상이 규제대상이 되고 있으며 섬유, 신발,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제품 등에 집중됨

- * 수입허가제 품목이었던 가전제품의 경우, 마지막 수정에서 약 20개의 가전제품군 HS Code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입이 용이해질 전망
 - 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별로 연간 수입수량 및 금액에 대한 쿼터를 두어 규제
 - HS코드의 포괄성 때문에 현지생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아르헨티나 세관은 '17년부터 HS 코드 세분화 작업에 착수, 지속적인 수정을 거치고 있음
- 2017년 4월부터 컴퓨터 등 IT기기 수입관세 폐지
- 아르헨티나 산업 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에 부과되는 수입관세 35%를 폐지함
 - 또한 컴퓨터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부품에 부과되던 수입관세 12%도 전격 폐지함
 - 정부는 왜곡된 전자제품 소비시장이 정상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의 현지 제조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조치로, 현지에서 조립 생산되는 전자제품만 유통됨. 그러나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한 낮은 경쟁력으로, 아르헨티나산 컴퓨터 제품 가격은 미국보다 3배, 칠레보다 50%이상 높음
- (통관) 전자무역시스템, 2018년부터 본격 가동 예정
- 수출입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온라인 수출입 절차 조치가 7월 국회 승인을 받아 2018년부터 시작될 예정
 - 대외무역 일원화 창구인 싱글윈도우(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 VUCE)를 통해 수출입에 관한 모든 수속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함.
 - 금번 조치로 평균 14%의 비용 절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교역에서는 최대 24%까지의 비용절감 예상
- (거시경제) 아르헨티나 경제, 회복기 돌입
- '17년 3사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2.5%로 플러스 성장, 직전분기 기준으로 3개 분기 연속 성장세 기록
 - * '17년 1사분기부터 '17년 3사분기까지 1.1%, 0.8%, 0.9%로 3개 분기 연속 성장 행진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에 따르면, '18년 경제는 '17년 경제 성장을 따라, 3.3%정도 완만하게 성장할 예정

- 그러나 경제지표 회복에도 여전히 높은 물가, 9%를 상회하는 실업률, 소비부진 등 실제 체감경기 회복은 아직까지 낮음

* '17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6.9%이었으며, 2018년은 16.6%로 전망

○ (무역)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 적자 당분간 지속

- 정부의 개방경제 기조로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 경제 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출 감소, 곡물 수출 부진 등으로 무역 수지 적자
- 장기적으로는, 마크리 정부의 역내외 국가 및 블록과의 무역협정 체결 확대와 현지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정책으로 수출은 점진적으로 확대 될 전망

○ (통상정책) 역내외 국가 및 블록과 FTA 협상 추진 가속화

- MERCOSUR-EU 협정 추진
 - * 99년 시작되어 진전이 없던 FTA협상이 '16년부터 본격화
 - * 금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 기간 동안 협상타결 예정이었으나, 무산. 2018년에 상반기 내에 타결 이후 정식서명 예정
- 마크리 정부는 투자 유치와 교역 확대를 위해 멕시코, 한국, 일본, 중국,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과 적극적인 무역협정 추진
 - * 아르헨티나는 MERCOSUR 경제블록 차원에서 무역협상진행이 가능한데, 현재 브라질 우파 테메르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로 인한 정정불안, 2018년 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폐쇄정책을 고수했던 좌파 룰라 전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도 대두되어, MERCOSUR 대외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우려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수입허가제(LNA) 대상 외 특별히 예상되는 對韓 수입규제 품목 없음

9. 에콰도르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에콰도르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건으로, 세이프가드 1건 규제 중임
 - 품목별로는 기타 1건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목재 및 대나무 바닥재 (Wood and Bamboo Flooring and Accessories)	4409 4409.10 4409.21 4409.29	세이프가드	'14.8.28	'15.5.23	기타	- '14.8.28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 피소국 : 한국 포함 모든 수출국(브라질,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파나마 제외) - '15.5.23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 '14.11.4부터 적용된 임시 규제 기간 200일 포함(1년차: US\$1.50/kg, 2년차: US\$1.12/kg, 3년차: US\$0.75/kg) - '18.5.22 종료일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냉장고) 2017년 5월 30일, 수입감시제도 적용 공포
 - * 수입감시제도 : 2015년 5월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방안
 - *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향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수입절차를 지연시키는 효과
 - 2016년 12월 에콰도르 가전기업 Induglob사의 세이프가드 제소요청
 - 2017년 5월 30일 냉장고에 대한 수입감시제도 적용 공포
 - 2018년 5월 30일까지 1년간 감시제도 적용하여 국내산업 피해가 확정 시 세이프가드 발동 예정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에콰도르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 규제형태 : 세이프가드 1건 규제 중
 - 전 세계 국가 대상이며, 규제품목은 목재 및 대나무 바닥재 1건임.
- 2017년 1월부터, 자동차, 휴대폰 수입쿼터 종료됨.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에콰도르-EU간 FTA 2017년 1월부터 발효
 - 에콰도르-EU 무역협정이 발효돼 에콰도르의 주력 수출품인 가공참치, 새우, 커피, 절화, 카카오 등이 무관세로 유럽시장에 수출되고, 유럽산 주류, 노트북, 건축자재, 농기계, 섬유기계 등도 무관세로 에콰도르에 수입됨
 - 그 외 품목은 산업에 미치는 민감도에 따라 5, 7, 10, 1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예정
-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협상 진행 중
 - 2015년 8월 25일 협상 개시된 SECA 협정이 타결될 경우에는 에콰도르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체결하는 무역협정이 될 것임
 - 2016년 1월 SECA 1차 협상을 시작으로, 11월 5차 협상까지 진행됨
 - 2017년에는 양국의 국가리더십 교체기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으나, 2017년 11월 에콰도르 대외무역부 장관의 방한 시 협상 재개 의사를 표명한 만큼, 2018년에는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됨
- 밀수방지기금(TSCA) 신설
 - 에콰도르 세관은 11월 9일 관보(Registro Oficial) 115를 통해 신규 수입세금인

밀수방지기금의 시행을 발표(2017년 11월 13일 부터 시행)

- 밀수방지기금은 총 중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개념으로 HS Code별로 정해진 관리중량 당 10센트를 부과함

- * 자동차의 관리중량은 1kg 이며, 이는 1kg 당 10센트의 밀수방지기금을 납부한다는 의미

- * 통관 시, 기존 수입세금에 밀수방지기금(TSCA)을 추가로 납부해야 됨

-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2017년 7월 29일 1,200개 품목을 분석하여, 200~400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최대 5% 추가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힘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특별히 對韓 수입규제 예상되는 품목 없음

10. 우크라이나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우크라이나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건으로, 세이프가드 1건 규제중임
 - 품목별로는 기타 1건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연질 다공성 플레이트 (Flexible porous plates, blocks and sheets of polyurethane foams)	3921.13 1019	세이프가드	'15.7.7	'16.5.26	기타	- 적용기한 : '19.7월 - 관세 : 5% * 적용 12개월 후 관세 12.44% * 적용 24개월 후 관세 11.81%

* 주 : 상기 수입규제 건은 우크라이나에서 전 국가를 대상으로 공통 적용하는 사항임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없음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우크라이나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16건 규제 중), 상계관세(1건 규제 중), 세이프가드(1건 규제 중)
 - 규제품목 : 기타(9건), 화학(5건), 전기전자(2건), 철강(2건) 순
 - 대상국가 : 러시아(10건), 중국(4건), 벨라루스(2건) 키르기즈스탄(1건) 순

-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상호 식품류 금수조치, 반덤핑 조치 등의 무역장벽 다수 존재
 - 주로 러시아, 중국에 수입규제 조치 집중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우크라이나-러시아 무역 분쟁 지속
 - 2016년 1월 우크라이나-러시아간 FTA 효력 중단 이후, 상호 자국산 농산물 한시적 금수 조치, 상호 영공 폐쇄 조치 시행
 - 2016년 7월 3일에는 러시아 정부가 對우크라이나 무역제재 조치를 확대·연장하는 법령 발표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경유 내륙운송 전면 제한, 우크라이나산 식품 금수조치 2017년 말까지 연장
 - 2017년 12월 11일부로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경유했던 모든 철도 노선을 폐쇄, 우회 경로 이용 중
- 우크라이나-EU간 경제협력 강화
 - 2016년 1월 1일, EU-우크라이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 발효
 - 러시아와의 분쟁으로 인해 EU가 우크라이나의 제 1교역 파트너로 부상
 - 2017년 6월 11일, EU-우크라이나 무비자(단기 사증 면제) 협정 발효

< 우크라이나의 대EU 무역현황 및 수출입 비중 >

분류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백만 달러)	전체 비중 (%)	금액 (백만 달러)	전체 비중 (%)	금액 (백만 달러)	전체 비중 (%)
대 EU 수출	17,002	31.54	13,015	34.14	13,496	37.12
대 EU 수입	21,069	38.71	15,330	40.86	17,140	43.67

* 자료원 : 우크라이나 통계청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특별히 對韓 수입규제 예상되는 품목 없음

11. 이집트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이집트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건으로, 반덤핑 1건 규제중임.
- 품목별로는 화학 1건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프탈산디옥틸 (DOP, Dioctyl Phthalate)	2917.3200	반덤핑	'15.11.30	'16.11.28	화학	- '07.7~'12.6까지 반덤핑 관세 부과되었으며, '12.7.3에 일몰 종료된 제품 - '15.11.30에 반덤핑 조사 재개 - '16.11.28: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관세 부과 기간 : '16.11.28~ '21.11.28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프탈산디옥틸, DOP, Dioctyl Phthalate)
- ' 15년 11월 9일 조사기관인 IA가 자문위원회에 조사 보고서 제출 이후 ' 16년 11월 28일부 최종 판정된 동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6개국 9개 품목에 대해 14건의 수입규제 조치 시행중
 - 규제형태 : 반덤핑(14건 규제 중)
 - 규제품목 : 철강(3건), 화학(1건), 주방용품(1건), 소비재(4건), 섬유(1건), 산업(2건), 자동차(2건)임
 - 대상국가 : 중국(7건), 터키(3건), 인도(2건), 한국(1건), 파키스탄(1건)
- * 자료원 : 이집트 산업부 산하 Trade Agreements Sector (TAS) 및 WTO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공적 자금 관리 강화 및 지방 분권화 의사 결정 확대를 위한 입찰 및 경매법 개정
 - 이집트 재무부는 투자 환경 개선, 투명성 제고, 거버넌스의 원칙 적용, 공공 재정 관리의 중요한 영역에서의 자유경쟁 지원을 위해 입찰 및 경매 법 개정을 추진함
 - 이러한 개정안은 공공 자금 이나 국유로 운영되는 활동 및 자산이 공공자금 관리 메커니즘을 가지고 운영 될 수 있게 함

〈개정안 주요 내역〉

- * 기업의 사전 보증금을 최대 1.5%까지 줄이고 최종 보증 지급 기간을 늘리며 보증 만료 후 보증금 환불 메커니즘을 구성하여 정부와 기업 거래를 장려
- * 행정 당국이 경제적 실현 가능성에 따라 구매하지 않고 동산(動産)을 임대 할 수 있게 하며, 전자 조달을 비롯한 공동 조달을 장려
- * 백만 이집트 파운드 이하의 입찰의 경우 중소기업만 입찰 가능하며 사전보증금과 최종 보증금의 절반을 면제
- * 행정 기관들은 중소기업에게 그들의 필요 자본 중 최소 10%를 제공해야 하며, 이집트 산 제품 생산 장려 정책에 부합하는 이집트 산 제품 생산 기업에 우선권을 줌

- (수입자 등록법 개정) 2017년 3월 4일, 35년 만에 수입자 등록법 개정

-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이집트 정부가 수입활동을 강력히 규제하여 수입을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
- 자본금 및 매출액 제한, 보증금 납부, 허가 및 등록비 납부로 수입허가 조건 까다롭게 개정
- 이집트상공회의소 담당자 인터뷰에 의하면, 동 조치로 약 25만개 수입업체 중 약 5만-6만개 업체만 이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

○ 부가가치세 인상

- IMF 구제금융 지원 조건의 이행의 일환으로 ' 16년 10월에 판매세 제도를 부가가치세로 전면 개편하여 시행중이며, 도입 첫째 13%였던 VAT가 ' 17년 7월부터 14%로 인상됨

○ 현지 기업 우대 법령 제정

- 이집트 공산품 협회 기술 자문가에 따르면,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기업들에게 부과된 산업 제품 관련법으로 인해 현지 기업의 40%이상이 입찰 관련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었음. 이후 시장에 진입하는 현지 기업들을 돕기 위해 2015년 Law No.5를 제정함
- 상기 법령은 이집트산 제품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으로 더 많은 지역 투자를 장려하여 산업 시스템 전체의 개혁을 목표로 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최종 완제품) 2017년 1월 이후, 수입규제에 큰 변화 없음. 반덤핑 규제중인 DOP 외에 특별히 對韓 수입규제 예상되는 품목은 없으나, '공장등록제'와 '관세 인상' 조치 대상이 되는 품목들이 원자재나 기계류가 아닌 최종 완제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입 완제품들이 對이집트 수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12. 인도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28건으로, 반덤핑 26건, 세이프가드 2건이며, 이 중 반덤핑 1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화학 17건, 철강 및 금속 7건, 섬유 3건, 기타 1건임
 - (참고사항) 타 기관의 자료와 상이한 내용은 인도 규제담당기관(DGAD)을 통해 확인
 - * (WTO) 반덤핑 27건, 세이프가드 2건. 스테인리스 냉연강판(7219.31/32/33/34/35/90) 누락,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400시리즈(7220.20.90) 종료
 - * (무역협회) 반덤핑 28건, 세이프가드 3건.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400시리즈(7220.20.90) 종료, 구연산나트륨(2918.1520) 종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부과시점	품목분류	비고
NBR고무 (Acrylo Nitrile Butadiene Rubber)	4002.59	반덤핑	'96.3.15	'97.1.31 (일몰재심) '15.9.4 (5년간)	화학	- '96.3.15: 반덤핑 조사개시 - '97.1.31: 반덤핑 관세부과 - '13.12.31: 일몰재심 개시 - '15.6.30: 일몰재심 최종판정 - '15.9.4: 반덤핑 관세부과 . 금호화학 등 57\$-85\$/MT
PVC 페이스트 수지 (PVC Paste Resin)	3904	반덤핑	'09.11.3	'11.5.2 (일몰재심) '16.6.23 (5년간)	화학	- '09.11.3: 반덤핑 조사개시 - '11.5.2: 반덤핑 관세부과 - '15.4.27: 일몰재심 개시 - '16.4.26: 일몰재심 최종판정 - '16.6.23: 반덤핑관세 부과 . LG화학 등 0\$-379\$/MT

가성소다 (Caustic Soda)	2815.11/12	반덤핑	'02.5.14	'03.8.4 (일몰재심) '15.8.18 (5년간)	화학	- '02.5.14: 반덤핑 조사개시 - '03.8.4: 반덤핑 관세부과 - '13.12.19: 일몰재심 개시 - '15.6.18: 일몰재심 최종판정 - '15.8.18: 반덤핑관세 부과 . 한화 등 0\$-21.9\$/MT
고무노화 방지제 (Rubber Chemicals)	2902, 2907, 2909, 2917, 2921, 2925, 2930, 2933, 2934, 2942, 3811, 3812, 3815	반덤핑	'07.7.6	'08.10.1 (일몰재심) '14.7.24 (5년간)	화학	- '07.7.6: 반덤핑조사개시 - '08.10.1: 반덤핑관세 부과 - '13.4.30 일몰재심 개시 - '14.4.29 일몰재심 최종판정 - '14.7.24: 반덤핑관세 부과 . 금호석유화학 등 1.33\$-1.63\$/kg
고순도 테레프탈산 (PTA)	2917.3600	반덤핑	'13.10.8	'14.7.25 (5년간)	화학	- '13.10.8: 반덤핑 조사개시 - '14.7.25: 예비관세 부과 - '15.4.7: 반덤핑 최종판정 - '15.5.27 : 반덤핑관세 부과 . 삼성탈레스 등 27.32\$-78.28\$/MT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2847.0000	반덤핑	'16.1.14	'17.6.14 (5년간)	화학	- '16.1.14: 반덤핑 조사개시 - '17.6.14: 반덤핑 최종판정 - '17.6.14: 반덤핑관세 부과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 한국산 46.16\$/MT
나일론사 (Nylon Filament Yarn) *일부제외 : high tenacity tarn / fishnet yam 등	5402	반덤핑	'05.7.1	'06.7.3 (일몰재심) '17.1.19 (1년간) (일몰재심중)	섬유	- '05.7.1: 반덤핑 조사개시 - '06.7.3: 반덤핑 관세부과 - '12.1.13: 일몰재심 최종판정 - '17.1.9: 일몰재심 개시 - '17.1.19: 예비관세 부과 . 한국: 1.14\$/kg (1년간) . 기타 다수국가/품목별 상이 - '17.3.9: 조사기간 연장 - '17.11.3: 1차 의견조회

냉연강판 (Cold rolled/Cold reduced flat steel products of iron and non-alloy steel, etc)	7209, 7211, 7225, 7226	반덤핑	'16.4.19	'16.8.17 (5년간, 예비 판정 시점 기준)	철강 및 금속	- '16.4.19: 반덤핑 조사개시 - '16.8.17: 예비관세 부과 - '17.4.10: 반덤핑 최종판정 - '17.5.12: 반덤핑관세 부과 . 한국,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 동국제강 등 0\$-576\$/MT
디옥틸프탈레이트 (DOP;Deoctyl Phthalate)	2917.3920	반덤핑	'17.6.1	-	화학	- '17.6.1: 반덤핑 조사개시 (한국, 대만) - '17.12.11: 1차 의견조회
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2917.3500	반덤핑	'11.4.29	'12.9.28 (일몰재심) '17.12.11 (1년간, '18.12.23) (일몰재심중)	화학	- '11.4.29: 반덤핑 조사개시 - '12.9.28: 반덤핑 최종판정 - '12.9.28: 예비관세 부과 - '12.12.24: 반덤핑관세 부과 . 애경유화 등 0\$-91.12\$/MT - '17.12.11: 일몰재심 시작
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 (SBR)	4002.19	반덤핑	'16.1.14	'17.8.30 (5년간)	화학	- '16.1.14: 반덤핑 조사개시 - '17.7.12: 반덤핑 최종판정 - '17.8.30: 반덤핑 관세부과 . 한국, EU, 태국 . 한국산 64\$/MT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Cold-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of width of 600mm upto 1,250mm)	7219	반덤핑	'08.11.25	'09.11.24 (일몰재심) '15.12.11 (5년간)	철강 및 금속	- '08.11.25: 반덤핑조사개시 - '09.11.25: 반덤핑관세 부과 - '14.4.17: 일몰재심 개시 - '15.10.12: 일몰재심 최종판정 - '15.12.11: 반덤핑관세 부과 . POSCO 등 5.38%-13.44%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Cold Rolled Flat Stainless Steel)	7219.31, 7219.32, 7219.33, 7219.34, 7219.35, 7219.90	반덤핑	'16.2.19	'17.12.24 (3년간, '20.12.10)	철강 및 금속	- '16.2.19: 반덤핑 조사개시 - '17.8.18: 반덤핑 최종판정 - '17.12.24: 반덤핑 관세부와 . 한국, 미국, EU, 중국, 남아공, 대만, 태국 . 한국산 13.44%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304 시리즈 (Hot-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of ASTM Grade 304)	7219 7220	반덤핑	'14.3.11	'15.6.5 (5년간)	철강 및 금속	- '14.3.11: 반덤핑 조사개시 - '15.3.9: 반덤핑 최종판정 - '15.6.5: 반덤핑관세 부과 . 한국산 180\$/MT
아세톤 (Acetone)	2914.1100	반덤핑	'07.2.12	'08.5.9 (일몰재심) '15.2.18 (5년간)	화학	- '07.2.12: 반덤핑 조사개시 - '08.5.9: 반덤핑 관세 부과 - '13.6.6: 일몰재심 개시 - '14.12.4: 일몰재심 최종판정 - '15.2.18: 반덤핑 관세부와 . 한국산 79.75\$/MT
아크릴섬유 (Acrylic Fiber)	5501.30 5503.30 5506.30	반덤핑	'96.9.13	'97.10.14 (일몰재심) '15.6.1 (5년간)	섬유	- '96.9.13: 반덤핑 조사개시 - '97.10.14: 반덤핑 관세부와 - '13.9.24: 일몰재심 개시 - '15.3.23: 일몰재심 최종판정 - '15.6.1: 반덤핑 관세부와 . 한국: 270\$/MT
알루미늄휠 (Cast Aluminium Alloy Wheels)	8708	반덤핑	'12.10.12	'14.4.11 (5년간)	기타	- '12.10.12: 반덤핑 조사개시 - '14.4.11: 예비관세 부과 - '14.6.9: 반덤핑 최종판정 - '14.5.22: 반덤핑관세 부과 . 한국산 1.18\$/kg
에틸 헥사놀 (2-Ethyl Hexanol)	2905.1620	반덤핑	'14.11.20	'16.3.29 (5년간)	화학	- '14.11.20: 반덤핑 조사개시 - '16.2.18: 반덤핑 최종판정 - '16.3.29: 반덤핑관세 부과 . 한국, 미국, EU, 말레이시아, 인니, 타이완 . LG화학 등 0\$-15.55\$/MT

열연강판 (코일형태) (Hot-rolled flat products of non-alloy and other alloy steel)	7225.3090 7208	세이프가드	'15.9.7	'15.9.14 (2년 6개월)	철강 및 금속	- '15.9.7: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 '15.9.14: 세이프가드 예비판정 - '16.3.15: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 '16.3.29: 세이프가드 부과 · '15.9.14-'16.9.13: 20% 증가세 · '16.9.14-'17.3.13: 18% · '17.3.14-'17.9.13: 15% · '17.9.14-'18.3.13: 10%
열연후판 (Hot-rolled flat products of alloy or non-alloy steel etc)	7208, 7211, 7225, 7226	반덤핑	'16.4.11	'16.8.8 (5년간, 예비 판정 시점 기준)	철강 및 금속	- '16.4.11: 반덤핑 조사개시 - '16.8.8: 예비관세 부과 - '17.4.10: 반덤핑 최종판정 - '17.5.11: 반덤핑관세 부과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 현대제철 등 478\$-561\$/MT
열연후판 (코일제외) (Hot-rolled flat sheets and plates of alloy or non-alloy steel)	7208, 7225.4013 7225.4019 7225.4020 7225.4030 7225.9900	세이프가드	'15.12.7	'16.11.23 (2년 6개월)	철강 및 금속	- '15.12.7: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 '16.8.2: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 '16.11.23: 세이프가드 부과 · '16.11.23-'17.11.22: 10% · '17.11.23-'18.11.22: 8% · '18.11.23-'19.6.22: 6%
염화메탄 (Methylene Chloride)	2903.12	반덤핑	'13.4.4	'13.4.4 (5년간)	화학	- '13.4.4: 반덤핑 조사개시 - '13.4.4: 예비관세 부과 - '14.4.2: 반덤핑 최종판정 - '14.5.21: 반덤핑관세 부과 · 한국산 0.21\$/kg
인산 (Phosphonic Acid)	2809.2010	반덤핑	'08.11.12	'09.11.11 (일몰재심) '15.8.24 (5년간)	화학	- '08.11.12: 반덤핑조사개시 - '09.11.11: 반덤핑관세 부과 - '14.6.20: 일몰재심 개시 - '15.6.19: 일몰재심 최종판정 - '15.8.24: 반덤핑관세 부과 · 한국산 162.52\$/MT

질산나트륨 (Sodium Nitrate)	2834 3102.5000	반덤핑	'13.6.5	'15.2.10 (5년간)	화학	- '13.6.5: 반덤핑 조사개시 - '14.11.12: 반덤핑 최종판정 - '15.2.10 : 반덤핑관세 부과 . 한국산 117.20 \$/MT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2836.4000	반덤핑	'02.12.19	'04.1.16 (일몰재심) '15.8.12 (5년간)	화학	- '02.12.19: 반덤핑 조사개시 - '04.1.16: 반덤핑 관세부과 - '14.6.16: 일몰재심 개시 - '15.6.8: 일몰재심 최종판정 - '15.8.12: 반덤핑관세 부과 . UNID 등 9.45\$-123.86\$/MT
탄성필라멘트사 (Elastomeric filament yarn)	5404.1100	반덤핑	'16.1.27	'17.5.3 (5년간)	섬유	- '16.1.27: 반덤핑 조사개시 - '17.3.24: 반덤핑 최종판정 - '17.5.3: 반덤핑관세 부과 .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 효성 등 0\$-1.9\$/kg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TDI, Toluene Diisocyanate)	2929.1020	반덤핑	'16.10.5	'17.12.14	화학	- '16.10.5: 반덤핑 조사개시 - '17.3.28: 반덤핑 예비판정 - '17.6.5: 예비관세 부과 . 한국, 중국, 일본 . 한화 등 0.17\$-0.4\$/kg - '17.12.14: 반덤핑 최종판정 . 한국산 0.22\$/kg
페놀 (Phenol)	2907.1110	반덤핑	'14.10.15	'16.3.8 (5년간)	화학	- '14.10.15: 반덤핑 조사개시 - '16.1.12: 반덤핑 최종판정 - '16.3.8 : 반덤핑관세 부과 . LG화학 등 0\$-77.19\$/MT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스타이렌-뷰타디엔 고무, SBR) 2017년 8월 30일, 반덤핑관세 부과확정
 - 부과대상 품목은 HS코드 4002.19이며, 한국, EU, 태국이 대상국가임
 - 한국산에 대해서 64\$/MT 적용
- (폴리부타디엔 고무) 2017년 12월 11일, 반덤핑 최종판정
 - 조사대상 품목은 HS코드 4002.2000이며, 2016년 9월 16일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7년 12월 11일 최종판결 확정. 반덤핑 관세 미부과 예정임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TDI) 2017년 12월 14일, 반덤핑 최종판정
 - 부과대상 품목은 HS코드 2929.1020이며, 2017년 6월 5일 예비관세가 부과된 이후 동년 12월 14일 최종판결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 예정
 - 대상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임
 - 한국산 0.22\$/kg 적용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2017년 12월 24일, 반덤핑관세 부과확정
 - 부과대상 품목은 HS코드 7219.31/32/33/34/35/90이며, 한국, 미국, EU, 중국, 남아공, 대만, 태국이 대상국가임
 - 한국산에 대해서는 13.44% 적용
- (수입규제 종료사항) 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1건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400시리즈(HS 7220.20/90)에 대해 2012년 10월 4일에서 2017년 10월 3일까지 적용되었던 반덤핑 조치가 만료되었음
 - 구연산나트륨(2918.1520)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0일 까지 적용되었던 세이프가드 조치가 만료되었음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인도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WTO, KOTRA)
 - 규제형태 : 반덤핑(346건), 세이프가드(2건), 상계관세(2건) 등
 - 대상국가(반덤핑) : 중국(133건), 한국(26건), EU(23건), 대만(23건) 등
 - 규제품목(반덤핑) : 화학/플라스틱(202건), 섬유(32건), 철강/금속(31건) 등
- 전 세계에서 반덤핑 조치를 가장 많이 부과하고 있는 나라, 뚜렷한 수입억제 기조
 -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규제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이며 2017년 상반기 328건에서 하반기 346건으로 조치건수가 확대되었음
 - 수입억제 정책은 인도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2016년 -970억\$, GTA)에 기인 하며, 최근에는 Make in India 캠페인을 통해 세계 제조업허브를 지향하고 수출 위주 성장전략을 택하면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개방적인 제도, 하지만 실질적인 통관절차는 진출 애로요인
 - 인도는 2011년 기존의 수입제한제도를 전면 철폐한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이외에 특별한 수입제한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개방적인 편임
 - 아울러, 최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주도로 통관서류 간소화, 온라인 서류 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세관에서의 통관 시 규제적용의 모호성, 인증취득 시 인증기관의 절차상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존재
- 인도의 주요 수입제한 품목 및 인허가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인도는 대외무역총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관할 하에, 총 428개 HS품목에 이르는 품목에 수입제한을 실시하고 있음. 수입제한 품목은 소,

버팔로, 말과 같은 가축을 비롯하여 종자류, 마약류, 무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상세 리스트는 대외무역총국 홈페이지 참조 : dgft.gov.in/exim/2000/dn/ftpdl/restrectd%20items.doc

-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이 관리하는 각 산업분야의 표준은 21,000여개에 이름. 의무인증 대상품목은 165개로, 의무등록 115개 품목과 강제 등록 50개 품목으로 구성됨

* 의무인증 품목(Mandatory Certification Scheme) : 시멘트, 가전제품, 식품, 유압스토브, 차량용 악세서리, 실린더, 밸브, 의료기기, 철강제품, 변압기 등

* 강제등록 품목(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 전자 및 IT제품 ('Electronics & IT Goods')

* 상기 두 인증품목의 차이점 : 두 품목 카테고리에는 각기 다른 법에 근거하여 규제를 받음. 의무인증 품목의 경우, BIS로부터 직접 샘플확인, 시설점검 등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 데 반해, 강제등록 품목의 경우, BIS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자가 검토 등의 간단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음.

□ 통상정책 방향

○ 적극적인 경제영토 확장, 최근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도 함께 상존

- 1991년 시장개방 이후, 인도정부는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해왔음
- 서남아시아의 맹주 국가로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 함께 SAFTA(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를 2006년 이래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인도 CEPA, 일본-인도 CEPA, 인도-ASEAN FTA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제영토를 넓혀가고 있음
- 다만, 최근에는 자국산업 육성을 위하여 철강, 화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수입 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인도정부의 '2015-2020 대외통상정책(2015년 4월)'

- 인도 상공부는 재화, 용역 수출 시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여 재화 및 용역 수출을 증진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개년 대외통상 정책을 2015년 공표하였음
- 인도정부는 인도를 전세계의 제조업 허브로 만들어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핵심정책이 바로 'Make in India'임. 인도정부의 대외통상 정책은 제조업 진흥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에서 수입을 되도록 억제하고 수출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 내용은 재화 수출 제도, 서비스 수출 제도, 수출 유공업체 제도, 수출 촉진용 자본재 제도로 나뉘며 인도 수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종합) 한-인도 무역불균형 심화와 대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

- 2010년 CEPA 발효 이후 지속 확대되어왔던 양국 간 무역불균형은 2017년 최초로 1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산업부, '17년 12월 수출입동향)이 확실함. CEPA 개정협상 과정에서 이에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던 인도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음

* (대인도 무역흑자 규모) '10년(57.7억\$) → '12년(50.0억\$) → '14년(75.1억\$) → '16년(74.1억\$)

- 아울러,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과 정부는 국내 여론에 민감한 상황으로, 한국산 제품으로부터 인도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경우 한국 측에 긍정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화학) 최다 품목 규제 중이며, 상당수 품목은 규제 연장될 가능성 높음

- 자동차, 건축, 단열재 산업의 성장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세계 7위의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 석유화학 산업 업체들의 수입증가에 대한 반발로 수입규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7년 과산화수소, SBR 고무, TDI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가 부과되거나 부과될 예정이며, 디옥틸프탈레이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폴리부타디엔 고무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을 예정임

○ (철강) 철강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해 '15년부터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여 수입장벽을 높이는 상황

- 인도 철강부는 신규 정책(New Steel Policy)을 통해 인도가 철강 순수출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내 철강산업을 적극 진흥하겠다고 밝혔음. 인도 내 꾸준한 철강수요 증가로 2017년 4-10월 총 강철 수입량은 전년대비 18.9% 증가하였음
- 2017년 3건의 반덤핑 규제(냉연강판, 열연후반, 스테인리스 냉연강판)를 추가하며 철강분야 수입규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음

13. 인도네시아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인도네시아의 對韓 수입규제는 총 7건으로 반덤핑 4건, 세이프가드 3건임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4건, 화학 2건, 기타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냉연코일 (Cold Rolled Coil)	7209.16.00.10 7209.17.00.10 7209.18.90.00, 7209.26.00.10, 7209.27.00.10, 7209.28.89.00, 7209.90.90.00, 7211.23.20.00, 7211.23.90.90, 7211.29.20.00, 7211.29.90.00, 7211.90.10.00, 7211.90.90.00	반덤핑	'11.6.24	'13.3.19	철강 및 금속	- 대상국 :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 '13.3.19일 최종 판정 - 반덤핑 관세 : 현대 11%, 포스코 10.9%, 동부제철 10.6%, 동국제강 10.1%, 기타 11% - 2015.9.4.부터 일몰재심 진행 중
비합금 평판강판 (Flat-Rolled Product of Iron or non-alloy Steel)	7210.61.11	세이프가드	'12.12.19 '17.1.18 (재조사)	'14.7.15	철강 및 금속	- 2017.7.14.일까지 적용하였던 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한 재조사를 통해 '17.10.3부터 '19.10.2까지 연장 - 세이프가드 적용 수입관세율 . 1년차 : 2,891,858루피아/톤 . 2년차 : 2,186,030 루피아/톤 - 대상국 : 한국
석도강판 (Tin Plate Coil/Sheet)	7210.12.10 7210.12.90	반덤핑	'12.6.25	'14.1.15	철강 및 금속	- 대상국 : 한국, 중국, 대만 - 반덤핑 관세 : TOC Steel 6.2%, 동부제철 7.9%, 신화 실업 4.4%, 기타 7.9%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3102.30	반덤핑	'15.6.1	'16.11.24	화학	- 제소업체 : PT Kaltim Nitrate Indonesia - 대상국가 : 호주,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 '16.11.24 최종판정 - 덤핑 마진율 : 휴캄스 (19.16%)
코팅종이와 판지 (Coated Paper and Paperboard, not including Banknotes Paper)	4810.13.10 4810.13.91 4810.13.99 4810.14.11 4810.14.19 4810.14.91 4810.19.10 4810.19.91 4810.19.99	세이프가드	'14.6.24	'15.9.21	기타	- 제소업체 : PT Pabrik Kertas Tjiwi Kimia, Tbk PT Pindo Deli Pulp and Paper Mills - '15.9.21 : 무역보호위원회, 산업피해 최종판정 - '15.09.07~'16.09.06 9% - '16.09.07~'17.09.06 7% - '17.09.07~'18.09.06 5%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3907.60	반덤핑	'16.8.22	-	화학	- '16.8.22 : 반덤핑 조사개시 * 제소자 주장 덤핑마진 : 3051% - 대상국 :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합금강 (I & H Section of Other Alloy Steel)	7228.70.10 7228.70.90	세이프가드	'14.2.12	'15.1.21	철강 및 금속	- 세이프가드 적용 수입관세율 . 1년차 : 26% . 2년차 : 22% . 3년차 : 18% - 대상국 : 한국, 모든 국가 - 기간 '15.1.21~'18.1.20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비합금강 평판강판) 세이프가드를 2017년 10월 3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 연장
 - MOF No 130/PMK.011/2017에 의거, 2017년 1월 18일에 연장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고 연장 판정이 나면서 동 제품군에 대해 2017년 10월 3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 2년간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됨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WTO 자료 기준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47건 규제 중), 세이프가드(3건 규제 중)
 - 대상국가(반덤핑) : 중국(13건), 말레이시아(5건), 한국(4건), 태국/대만/인도(각 4건) 등의 순임
 - 규제품목 : 철강 및 금속 품목(26건), 석유화학품목(11건), 섬유 품목(6건), 기타품목(7건) 순임
- 인도네시아 정부의 다양한 보호주의 정책
 - (신무역법) 신정부 취임이후 발표된 신무역법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품목의 수출입 물량 및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
 - (엄격한 수입허가제도)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발급한 수입허가권을 가진 기업만이 해당 제품 수입 가능
 - (자국 내 생산 의약품 수입금지) 특정 효능 및 형태의 약품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될 경우에는 동등 제품의 수입 미허가
 - (인니산 제품 의무 이용) 정부 프로젝트 및 지정 산업에 자국산 제품 및 부품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휴대전화가 자국산 부품 30% 의무이용 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30% 미만의 인니산 부품을 보유한 제품 수입이 사실상 금지됨
 - (3대 인증 강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표준(SNI, Standard Nasional Indonesia)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통관을 제한하고, 식품, 화장품, 의약품 대상 인니 식약청(BPOM)의 수입허가절차가 까다로움
 - BPOM 인증의 경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설비 하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인증을 허가하며 품목별로 각종 제품 시험 검사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복잡함
 - SNI 인증 관련, 2017년 9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SNI 인증 마크 및 시험 인증 기관 확대 관련 법을 발표함에 따라 SNI 획득 의무 대상 품목 확대 실시 예상
 - 할랄 인증에 대한 의무 획득 제품 범위가 현재 가공육류, 유제품 등에 한정되어

- 있으나 2019년 10월부터는 전 수입 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2017년 12월 28일부로 할랄 미인증 제품을 인도네시아 할랄연구소를 통해 공개
- (식음료 포장재 규제) 산업부는 2018년부터 식음료 포장재에 국가표준 인증 취득 의무화 방침을 2017년 12월에 발표
 - . 현재까지는 대형 식음료 업체가 임의로 SNI 기준을 충족한 포장 재료를 사용 중이나 모든 식음료 제품 포장재에 SNI 인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업체들에 큰 부담
 - (선적 전 검사 및 형식승인) 일부 지정 품목에 대해 수입자 비용부담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을 통해 선적 전 물품 확인 요건을 부과
 - . 현재 만 개가 넘는 HS Code가 선적 전 검사 대상에 포함이 되며, 세라믹, 전자기기, 평판유리, 식음료, 신발, 생약, 원예작물, 니트로셀룰로오스, 비(非) 위험성 폐기물, 쌀, 소금, 철강, 설탕, 섬유 및 섬유 제품, 장난감, 타이어, 중고 자본재 등이 포함됨
 - . 이들 제품군에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도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통신제품 및 오일 및 기타 유류제품 수입 시에는 형식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수입/통관지연이 빈번하게 발생
 -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2015년 11월 이후 FTA에 근거한 수입화물의 원산지 증명 적법효력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중점 확인 사항은 직접 운송 조건 충족성 여부임
 - . 수입 업체에서 FTA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고 통관 진행하여도 법령상 명시된 직접 운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FTA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서도 불인정 되어 수입 관세 추징이 됨
 - . 실질적으로 수입 물품은 일반적으로 부산-홍콩-싱가포르-자카르타 순으로 최소 1개에서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환적 또는 경유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동 제도가 도입된다고 발표되었을 때 업체들의 우려가 큼
 - . 당초에는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원산지로부터 바로 하역되지 않는 상품들에 대해 100% 불인정 하였으나, 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중간 경유지 혹은 환적지에서 제품 관련 상업적인 활동이 없었다는 증명서를 통관 B/L에 명시하여 제출하면 경유 선박에 선적한 상품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뀜
 - (수입 승인 제도 강화) 2016년 말에 발표되어 2017년 3월 1일부로 발효된 무역부

장관령 No 82/M-DAG/PER/12/2016을 통해 리스트 개정작업이 이루어졌고 2018년 1월 4일 현재 내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군은 총 73개 품목으로 2017년 5월 대비 7개 품목 증가

- 품목에는 육가공품, 시멘트, 임산물, 쌀, 중고기계설비, 농기구, 재활용제품, 가정용 및 사무실 제품, 철강, 합금강, 섬유 제품 등이 있음
- 해당 품목은 수입 전 PI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하며 쿼터할당제의 기능을 수행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ASEAN 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효과 및 제조기지로서의 장점 극대화
 -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
 - 인도네시아는 2016년 기준, 아세안 역내 교역 규모가 812억 달러를 기록하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역내 교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AEC 출범에 따른 역내 무역비용 감소로 큰 수혜를 볼 국가 중 하나임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일본 등의 ASEAN 역내 생산기지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도로, 철도, 항구 등의 물류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해나가고 있음
- FTA(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개방
 - 인도네시아는 무역활성화를 위한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와는 아세안 역내 무역협정을, 한국, 중국, 일본과는 아세안 FTA를 체결했으며,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FTA를 체결하였고, 일본과는 FTA 외에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도 기 체결
 - 현재 한국 및 호주와의 CEPA, 인도 CECA, 칠레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협상을 추진 중
 - 터키, 페루, 이집트, GCC, EU, 파키스탄, 미국, 튀니지 등과의 FTA 협상을 검토 중
- 한-인니 관계의 격상에 따른 인니의 대한(對韓) 통상 협력 기대
 -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7년 11월 8일~10일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였으며, 동변 방문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

- 이를 통해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타결에 힘을 쓰기로 하였음
-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신(新)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표명
- 상품교역 중심이었던 관계에서 기술과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 확대하고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등 아세안 국가에 꼭 필요한 분야부터 협력을 강화해 갈 것으로 표명
- 상기 협력 목표를 단기간 내에 진행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분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 2018년 인도네시아, 美 TPP 탈퇴 기대 효과 예상

- 응가르띠아스토 루끼따(Enggartiasto Lukita) 인니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인니 양국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별개로 이전처럼 교역을 해 나갈 것인데, 이는 양국간 교역 품목들이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이라고 함
- 인도네시아는 TPP 회원국이 아니었으며,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TPP 탈퇴가 선언되어, 대미 수출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호주, 뉴질랜드 등은 미국의 TPP 탈퇴 이후 미국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로 대체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으로, 미국 뿐 아니라 인근 국가로의 수출 증대도 기대
- 인니 정부 당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수출 품목의 질을 향상시켜 세계 교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음을 표명
- 인도네시아는 아프리카, 동남아, 스리랑카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주 수출국* 외 신흥 수출 판로를 개척할 것

* 인도네시아의 주 수입국은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이며 주 수출국은 일본, 미국, 중국, 싱가포르, 인도

○ 내수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 규제 강화

- 2017년부터 인도네시아 내부 규정 및 대통령실의 명령에 따라, 제품 등록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가 활성화되고, 세관의 통관 검사 절차 재정비

- 2018년 1월 3일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의하면, 산업부 정보통신산업국장은 2019년에 LTE 통신기기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산제품 사용요건을 매년 10%씩 인상하여 35%까지 적용할 계획임을 발표
- 2017년 12월 할랄연구소는 할랄 인증 없는 제품 공개(농심, 삼양라면 포함)를 통한 암묵적인 할랄 인증 획득 촉구
- 2017년 8월 부, 2017년~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 구축 프로젝트를 통한 전자 금융,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정부의 세부 제도 정비 및 모니터링이 심화되면서 수입 규제의 회색지대였던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의 대외 교역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2018년부터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수입규제 예상품목

- (농산물)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필수식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무역부 장관령을 시행 중
 - 필수식품에는 쌀, 콩, 고추, 붉은양파, 설탕, 식용유, 밀가루, 쇠고기, 닭고기, 계란 등이며 동 품목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는 반드시 유통업자등록증(TDPUD)를 소지해야 함
- (철강제품) 불법 수입 단속 강화 예정
 - 2017년 6월, 인도네시아 철강산업협회(IISIA)는 정부의 철강 수입 규제 정책이 확실한 효과를 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무역부 장관령 '2016년 제82호'를 시행, 철강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음
 -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올해 1~5월 철강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543만 톤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합금 강재 수입액이 75.5% 증가한 9,221만 달러에 달함
 - 합금 강재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IISIA의 히다얏 회장은 철강이 관세가 낮은 합금 강재로 허위 수입 의심
 - 산업부 금속·기계·수송 기기·전자 기기(ILMATE)국의 구스띠 뿌뚜 국장은 국내 인프라 건설 사업과 함께 철강 수요가 급증해 수입량 확대는 불가피하나 불법 수입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밝힘

- (포장재) 식음료에 사용되는 포장재에 SNI 강제 인증 제도를 2019년부터 일괄 적용
 - SNI 인증은 미국의 NTB 보고서에도 비관세 장벽으로 등재되었으며, 무역기술 장벽(TBT)에 속함
 - 인증 획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 또한 많이 수반되어 수출업자들에게 많은 애로사항 야기
 - 식음료 산업은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으로, 포장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 중 하나이나, 포장재 인증 규제의 강화로 인해 많은 비용 투입 예상

- (유탄유) 2018년부터 SNI 강제 인증 적용 예정
 - 현재 법령에는 없으나 2017년 9월 11일자 현지 주요 언론인 KOMPAS지에 따르면 유탄유에도 SNI 강제 인증 예정으로 2018년 이후에는 동 품목을 현지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인증 획득 필수
(참조: <http://domtif.kompas.com/read/2017/09/11/182200315/kata-shop-dive-sal-sni-wajib-pelumas>)

- (이축연산폴리프로필렌(BOPP) 필름)반덤핑 관세에 대한 실효성 확인을 위해 재조사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19년 1월까지 태국 BOPP 생산업체 에이제이 플라스틱 퍼블릭 컴퍼니(A.J Plast Publick Company Limited) 등에 반덤핑 과세 28.4%를, 베트남 생산업체에 3.9%를 부과
 - 이에 대해 인니 현지 법인인 트리아스 센토사(PT Trias Sentosa)와 롯데패키징(PT Lotte Packaging)의 재조사 요청으로 2017년 12월 12일부터 현행 제재 조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재조사
 - 한편, 반덤핑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재까지도 인니 현지 업체들이 태국과 베트남 BOPP 수입품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음을 언급
 - 원산지가 한국인 제품에 적용되는 무역구제정책은 없으나, 반덤핑 규제 및 재조사 품목으로 원산지와 상관없이 수입 제품에 대해 정부기관의 특별 관리 예상

- (PET) 반덤핑위원회의 반덤핑 조사 중 품목으로 수입 규제 가능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는 2016년 8월 22일부터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품목이며, 최근에도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에서는 동 제품이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 중임을 밝힘

- 통상 조사 착수일에서 최종 판정일까지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2018년에 최종 판정 이후 반덤핑 과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분류될 가능성 있음
- (비합금 평판강판)철회가 완료된 품목이나 세이프가드 재조치
 - MOF No 130/PMK.011/2017에 의거,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조사로 2017년 10월 3일에서 2019년 10월 2일까지 세이프가드 재조치
- (LTE 통신기기)2019년부터 자국산 부품비중(TKDN)을 30%에서 35%로 증가 적용
 - TKDN은 무역기술장벽 중 하나로, 정부 사업 입찰에 참여 시 지정 품목에 대하여 현지 생산제품을 사용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제조해 사용함을 규정한 것임
 - 현재 TKDN은 30%로 한국의 삼성, LG, 미국 애플 등 16개 해외 브랜드가 LTE 통신기기에 동 비율을 충족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그 비중이 35%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LTE 통신기기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14. 일본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일본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2건으로, 모두 반덤핑 조치이며 이중 1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화학 1건, 철강금속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2815.20	반덤핑	'15.5.26	'16.8.2	화학	- 중국도 조사대상 - 조사신청에 의한 덤핑 마진율은 한국산 56.88%、중국산 81.15% - '16.3.25: 경제산업성과 재무성, 잠정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 '16.4.5일에 시행령 각의 통과 - '16.8.2: 반덤핑 최종판정 * 8월 9일부터 5년간 한국산에는 49.5%、중국산에는 73.7% 반덤핑 관세 부과
철강제 관연결구류 (Tube and Pipe Fittings_Butt Welding Fittings)	7307.93	반덤핑	'17.3.31	-	철강금속	- '17.3.31: 반덤핑 조사개시 . 제소업체: 일본 밴드 주식회사 등 3개사 . 피소국: 한국, 중국 . 피소업체(한국 5개사): 태광(주), 성광밴드, SBC 밴드, 화진(주), YOUNG(주) . 한국 덤핑마진율: 60~80%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철강제 관련결구류) 2017년 3월 31일, 반덤핑 조사개시
 - 경제산업성은 3월 31일, 한국과 중국산 철강제 관련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 무역 및 관련 국내 산업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과 관세 등을 담당하는 재무성이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
 - 일본은 20여년 전 합금철에 반덤핑 관세 부과 건이 있었지만, 그 이후 철강 제품(기본 형태 재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건은 첫 사례에 해당
 - 벤칸기공, 일본밴드, 후루바야시공업 등 3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건으로, 해당 3개사는 모두 일본 국내 생산을 추진 중
 -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간 한국산 수입량은 1,996톤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으며, 덤핑마진율은 한국산이 60~80%라고 주장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일본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 총 9건(규제 중 7건, 조사 중 2건), 세이프가드와 상계관세없음
 - 대상국가 : 중국(총 5건. 규제 중 4건, 조사 중 1건), 한국(총 2건. 규제 중 1건, 조사 중 1건), 스페인(규제 중 1건), 남아프리카(규제 중 1건)
 - 규제품목 : 총 5개 품목으로 화학 8건(규제 중 4품목), 철강제품 1건(조사 중 1품목)
- WTO 출범(1995년) 이후 일본의 반덤핑 조사 건수는 총 13건임
 - 일본과 주요국의 AD조치 조사 개시 건수를 비교해보면, 일본은 압도적으로 건수가 적은 상황

〈WTO 발족 이후 일본의 반덤핑 조사 건수 추이 (2017년 12월말 현재)〉

연도	2001	2007	2012	2014	2015	2016	2017	합계
건수	2	4	1	1	2	1	2	13

* WTO가 발족한 1995년 이후에 조사가 행해진 적이 없는 해는 표에서 제외

* 복수 국가에 대한 동일 품목의 AD 조사는 각각 1건으로 계상하고 있음.

* 자료원 : WTO 통계 기반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 (반덤핑 제소 요건 완화)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017년부터 반덤핑 관세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 향후 반덤핑 제소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
 - 경제산업성은 신청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발동 횟수가 적다고 판단, 이전부터 재무성에 제도 개정을 요구해 왔음
 - 이에 2016년 11월 재무성은 관세·외환 등 심의회 제도의 재검토를 표명, 해당 사항이 2017년도 세제 개정 내역에 포함
 - 기존에는 문제시되고 있는 품목의 일본 국내시장 점유율 50% 이상(금액 기준)의 생산자가 모이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었는데, 이번 세제 개정 내역에 따르면 시산 등에서의 손해를 증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점유율을 25%로 완화하여 조정함
 - 이에 따라 반덤핑 등 특수관세 발동 신청이 용이하게 되었으므로 반도체, 철강, 섬유 등 대일 수출량이 비교적 큰 산업에 대해서는 주의가 요구됨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TPP)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2019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17년 1월 미국의 이탈이 결정되며 좌초되었던 TPP이지만, 11월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에 의한 새로운 협정 TPP11이 대략 합의를 이룬 바, 2018년 초 서명을 거쳐 2019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초점은 조기 서명에 신중한 캐나다임. NAFTA 재협상을 앞둔 캐나다는 TPP의 내용을 조기에 결정하는 것은 득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TPP11은 서명국 중 6개국이 국내 승인을 마치면 발효되기 때문에 일본은 캐나다에 서명을 호소, 캐나다가 조기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TPP10의 서명도 검토 중에 있음

- 한편 일본 정부는 TPP11이 가져올 경제 효과로 GDP 8조 엔 증가와 46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영국이 TPP11의 참여를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상황이라 함. 2019년 3월 EU 이탈을 앞두고 있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태평양에서 거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국의 무역정책 담당 외무장관은 "다국간 협정에 지리적 제약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음
- (RCEP 및 양자간 FTA) 미국이 주도하고 있던 TPP의 움직임이 멈춘 이후 중국이 주도하는 RCEP 추진 가속화
 - 일본 정부는 TPP 대안으로 RCEP 추진에 적극적인 편이지만 한편으로는 RCEP이 중국 주도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
 -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RCEP 17차 협상에서 참가국들은 RCEP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으며, 특히 일본은 TPP수준의 높은 자유화 수준 달성 및 협상 주도 위해 노력
- (일-EU EPA) 2017년 12월 타결, 협정문을 정리하여 2018년 여름 서명한 후, 2019년 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관세 관련 광공업 제품과 농산품을 합쳐 일본 측이 약 94%, EU측이 약 99%를 철폐하는 높은 자유화 수준을 자랑함. 지적재산권 보호와 전자 상거래의 원활화 등의 규칙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규율을 담고 있음
 - 일-EU EPA는 세계 GDP의 약 30%, 무역 총액의 약 40%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동 EPA가 가져올 경제 효과로 GDP 5조 엔 증가와 29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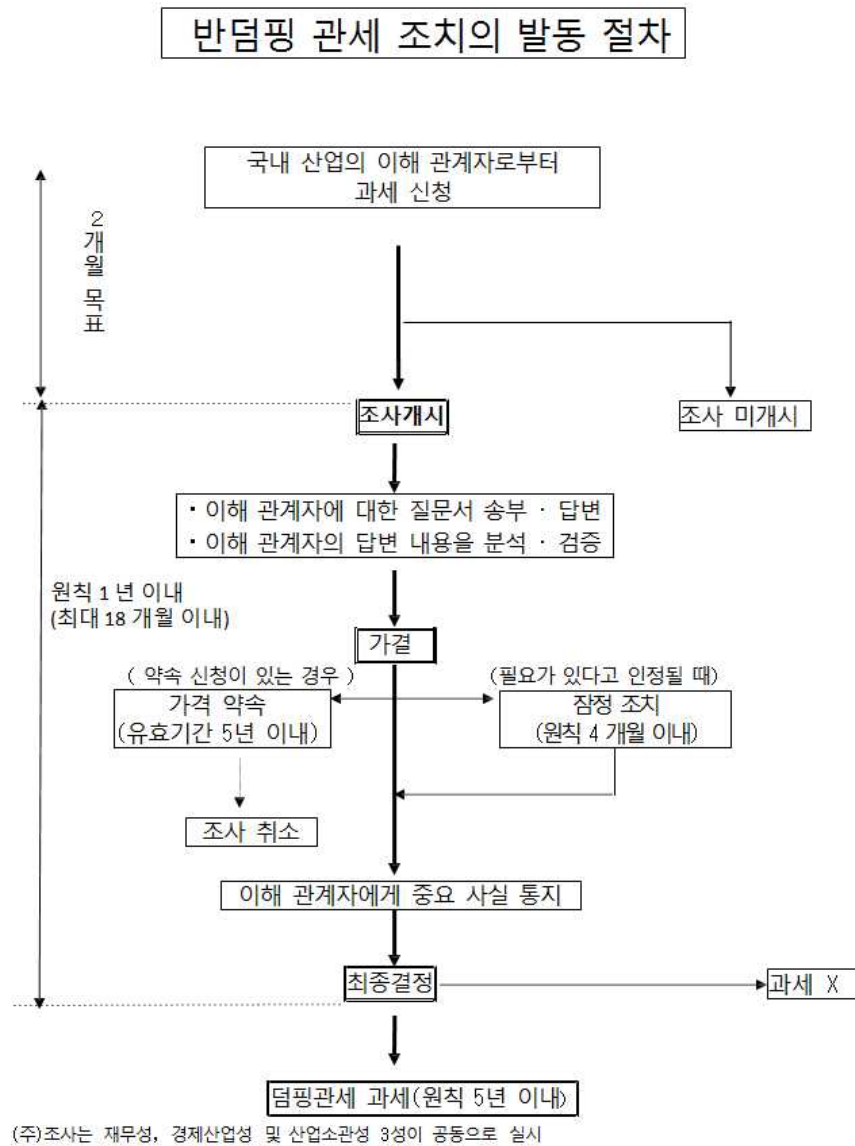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제 관련결구류) 현재 조사 진행 중으로, 향후 반덤핑 판정 가능성 높음

다. 일본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결정 절차

○ AD관세 조치의 발동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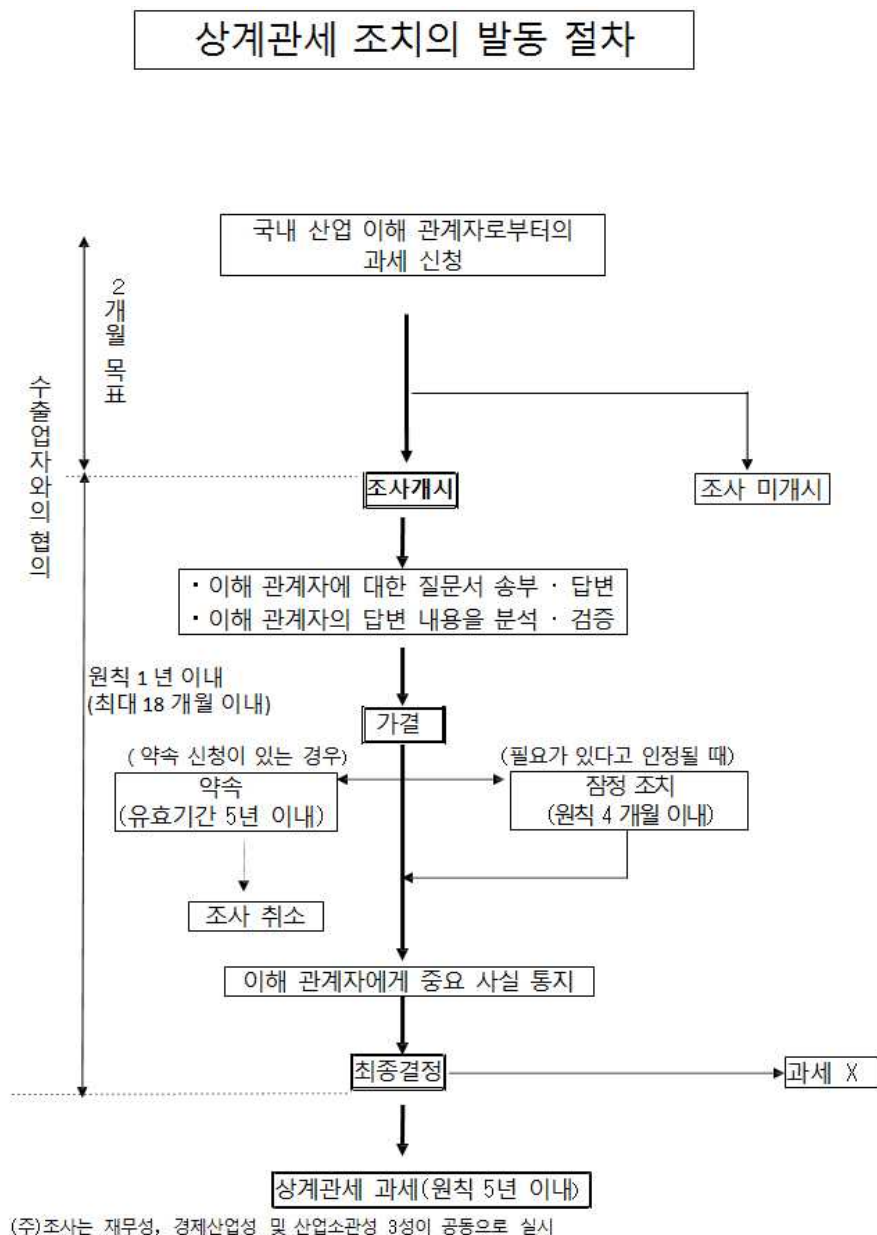
- 조사는 원칙적으로 1년(연장될 경우 최대 18개월)안에 종료함
- [과세 신청] 국내 생산자는 ① 덤핑 수입 사실 및 ② 해당 수입에 의한 국내 산업의 피해 사실 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첨부하여 재무대신 앞으로 과세를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
- [조사 개시] 조사 당국은 상기 ① 및 ②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를 개시
- [잠정 조치] 질문서를 송부·회신, 해당 내용의 확인·분석, 현지조사 등을 거쳐 ① 덤핑 수입 사실, ②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 발생, ③ 양자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될 경우, 최종 결정전에 임시 결정을 내리고 원칙 4개월 이내의 잠정 과세(임시 조치)를 발동. 조사 개시로부터 8개월 후를 목표로 함
- [중요 사실의 통지] 이해 관계자에 대해 최종 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과세 이유, 덤핑 마진 등)을 통지. 조사 개시로부터 8개월 후를 목표로 함
- [조사 종료 · 최종 결정] AD관세의 시비, 세율 등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림. 조사 개시로부터 1년 후를 목표로 함



자료원 : 경제산업성

○ 상계관세 조치의 발동 절차

- 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AD관세 조치의 흐름과 같지만, [과세 신청]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음
- 주요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과세의 요구 내용이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 및 손해의 사실이 되는 것 ② 조사 개시 전에 상대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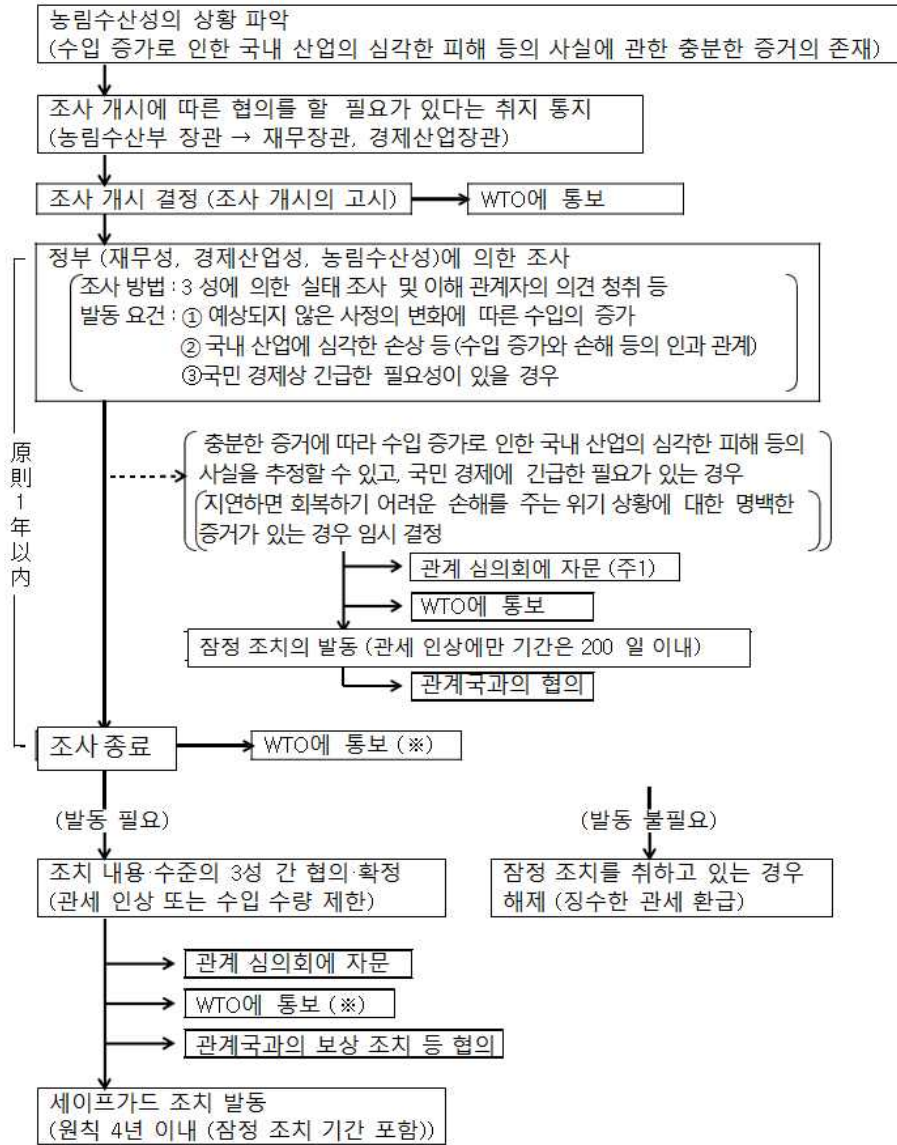


자료원 : 경제산업성

○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절차

- [조사] 수입 증가의 사실 및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러한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이 조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종료시킴. 농림수산물 소관 물품의 경우, 재무대신, 경제산업대신 및 농림수산대신에 의해 이루어짐
- [이해 관계국과의 협의(보상조치, 대응조치)] 발동에 앞서 이해 관계국과의 협의 등을 실시하여 보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함. 수출국은 일본에서의 수출과 관련해 관세 인상 등에 의한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심의회에 자문] 위의 조사에 의해 발동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외환 등 심의회, 수입 수량 제한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조치가 결정됨
- [WTO에 통보] 조사 개시, 잠정 조치 발동, 손해 또는 그 우려의 인증, 조치 실시 또는 연장에 있어서는 WTO에 그 내용을 통보할 필요가 있음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임시 조치 포함) 발동 절차



주1: 잠정 조치가 즉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 발동 후에 해도 된다.

주2: ※ 신고는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주3: 위 WTO 통보 외로도 통보를 요청 받는 경우가 있다..

자료원 : 경제산업성

15. 잠비아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잠비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건으로, 세이프가드 1건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도금강판 (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and trailers)	7209.16/17/28, 7219.11/20/30/ 41/61/69/70, 8716.20/31/39/ 40	세이프가드	'15.7.10	-	철강 및 금속	- '15.7.10: 180일간 잠정조치 시행 - 한국포함 모든 국가 대상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17년 하반기 변동 내역 없음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잠비아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 규제형태 : 세이프가드(1건 조사 중)
 - 대상국가 : 모든 국가(1건)
 - 규제품목 : 철강 및 금속품목(1건)

* 자료원 : WTO

- 잠비아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로 2015년 7월 10일 도금강판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및 잠정조치(180일간)를 발동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통상전망) 잠비아는 구리 산업 중심의 통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구리 산업의 생산성 증대와 세계 구리 가격 회복에 따라 2018-22년 무역 수지는 흑자 전환 전망
 - UNCTAD에 따르면 잠비아 정부는 수출입 시장 다변화를 위해 섬유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
- (경제공동체)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 Community)를 통합한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TFTA: Tripartite Free Trade Area) 협정 서명 완료
 - 단일 경제블록인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출범 시, 역내 관세 자유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대폭 변화될 것으로 예상
- (EU-COMESA) 2017년 5월 30일 유럽연합(EU)과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잠비아 내 Nakonde, Tunduma 및 Mwani-Mchinji 국경지역 개선 사업을 포함한 교역 향상 프로그램을 위해 6천 8백만 유로 규모의 양해각서와 2개의 합의서에 서명
 - 상기 조치는 역내 물류 시간과 비용을 감소하고 원산지 증명 및 세관 서류 작업을 간소화함으로써 역내 무역 촉진, 중소기업체 역량 강화 등의 역할 기대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어류) 2017년 8월 잠비아 정부는 자국 내 어업 보호를 위해 현지에서 생산되는 어류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발표
 - Tilapia Lake 바이러스를 이유로 아시아산 어류 수입 금지를 주장한 바 있으며, 통관 시 세금을 낮출 목적으로 아시아산 틸라피아를 나미비아산 고등어로 오기재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

16. 중국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2017년 12월 31일 기준)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4건으로, 반덤핑 13건, 세이프가드 1건이며, 이 중 반덤핑 3건은 조사 진행 중, 1건은 가중 재심 중
- 품목별로는 화학 10건, 섬유 1건, 철강/금속 1건, 전기전자 1건, 기타 1건
- (* 최종판정일 명시된 건은 '규제 중'으로, 나머지는 '조사 중'으로 집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PVC (Polyvinyl chloride)	3904.1000	반덤핑	'02.3.29	'03.9.29	화학	- '03. 9.29 반덤핑 최종판정 - 관세: LG화학 6%, 한화석유화학 12%, 기타 76% - '09. 9.28: 일몰재심 결과 공고(관세부과 5년 연장) - '14.9.28 일몰재심 입안조사 - '15.10.8 : 반덤핑 규제조치 3년 연장
광섬유 (Dispersion Unshifted Single-Mode Optical Fiber)	9001.1000	반덤핑	'03.7.1	'05.1.1	전기전자	- '05.1.1 반덤핑 최종판정 - 관세: LG전선 7%, 옵토매직 13%, 기타 46% - '10.12.31 일몰재심 결과 공고(관세부과 5년 연장) - '13.03.01: 반덤핑 세율 변경 - 관세: LS전선 9.1%,

						오토매직(THAHAN) 7.9% - '15.12.31 반덤핑 부과기간 만료 - '16.1.1 종료재심 조사개시 - '17.1.1 반덤핑관세 부과 5년 연장
니트릴 고무 (Nitrile Rubber)	4002.59.10 4002.59.90	반덤핑	'17.11.09	-	화학	- '17.11.09: 조사 개시 · 피소국: 한국, 일본
메틸이소부틸케톤 (4-Methyl-2-Pentanone)	2914.13	반덤핑	'17.3.27	-	화학	- '17.3.27: 조사개시 · 덤핑마진율: 32.36% - '17.11.20. 예비판정 '17.11.20부터 보증금 납부 (보증금금액=(완세가격 x덤핑율)x(1+수입증치 세)) · 한국 금호 P&B 화학 29.9% 기타 한국기업 32.3% · 일본 미츠이 화학 48.4% 미츠비시 화학 51.2%, 기타 일본 기업 190.4% · 남아공 Sasol South Africa (Pty) Ltd 15.9%, 기타 남아공 기업 34.1%
방향성 전기강판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7225.11.00 7226.11.00	반덤핑	'15.7.23	'16.7.24	철강 및 금속	'15.7.23 : 중 상무부, 한국·일본·EU산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개시 - '16.4.1 : 반덤핑 예비판정 · 한국: 포스코 14.5%, 기타 한국기업 29.5% · 일본: JFE철강 39%, 일본 철강 및 기타 일본 기업 45.7% · EU: 46.3% - '16.7.24: 반덤핑 최종판정 · 한국 : 포스코 및 기타 기업 모두 37.3% 세율

비스페놀A (Bisphenol-A)	2907.2300	반덤핑	'06.8.30	'07.8.30	화학	- '07.8.30 반덤핑 최종판정 - 관세: 금호피앤비화학 5.8%, LG석유화학 6.4%, 기타 37.1% - '13.8.29 일몰재심 결과 공고(관세부과 5년연장)
설탕 (Sugar)	1701.12/13/14/ 91/99	세이프 가드	'16.9.22	'17.5.22	기타	- '16.9.22: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 '17.5.22: 세이프가드 조치 확정 시행 (수입 쿼터 외 수입 시 추가 관세 부과) . '17.5.22~'18.5.21:45% . '18.5.22~'19.5.21:40% . '19.5.22~'20.5.21:35%
스티렌 (Styrene Monomer)	2902.5000	반덤핑	'17.6.23	-	화학	- '17.3.27: 조사개시 . 피소국 한국, 대만, 미국
아디프산 (Adipic Acid)	2917.12	반덤핑	'08.11.10	'09.11.2	화학	- '09.11.2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 관세: 로디아 5.9%, 아사이 카세이 케미컬 5%, 기타 16.7% - '14.10.31 반덤핑 일몰재심 입안조사 - '14.11.2 일몰재심 기간 관세 지속부과 - '15.11.2 : '15.11월부터 반덤핑 규제조치 5년 연장 결정
아세톤 (acetone, Dimethyl ketone 또는 2-Propanone)	2914.1100	반덤핑	'07.3.9	'08.6.8	화학	- '08.6.8 반덤핑 최종판정 - 관세: LG화학 5%, 금호피앤비 8.9% - '10.9.10 금호피앤비 관세 4.3%로 인하 - '14.6.8 일몰재심 결과 공고(관세부과 5년 연장)

테레프탈산 (TPA; Terephthalic Acid)	2917.3611 2917.3619	반덤핑	'09.2.12	'10.8.12	화학	- '10.8.12 반덤핑 최종판정 - 관세: 삼성석화 2.0%, KP 케미칼 2.0%, 태광 2.4%, 효성 2.6%, 삼남석화 3.7%(주요수출품 QTA(140만톤)제외), SK유화 수출품목 QTA 전량 조사대상 제외 - '15.8.12 반덤핑 조치 지속 공고
폴리실리콘 (Polysilicon)	2804.6190	반덤핑	'12.7.20	'14.1.20	화학	- '14.1.20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 관세: OCI: 2.4%, 한국실리콘: 2.8%, 한화케미칼/삼성정밀화학: 12.3%, KCC: 48.7%, 웅진폴리실리콘: 12.3% - '16.11.22 중간재심 개시 - '17.11.21 중간재심 결과 발표 - 관세('17.11.22일부): OCI: 4.4%, 한국실리콘: 9.5%, 한화케미칼: 8.9%, SMP: 88.7%, 웅진폴리실리콘: 113.8%, KCC: 113.8%, Innovation Silicon 113.8%, 기타 88.7%
폴리아세탈수지 (Polyformaldehyd Copolymer)	3907.10.10. 3907.10.90.	반덤핑	'16.10.24	'17.10.23	화학	- '16.10.24. 반덤핑 조사개시 . 피소국: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 '17.6.26. 예비판정결과 발표 - '17.6.30부터 잠정관세 납부 (관세금액=(완세가격×덤핑률)×(1+수입증치세))

						· 한국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30%, 코오롱 플라스틱 6.1%, 기타 한국기업 30.4% · 태국 THAI POLYACETALCO CO.,LTD 23.7%, 기타 태국 기업 34.9% · 말레이시아 Polyplastics Asia Pacific Sdn.Bhd 7.6%, 기타 말레이시아 기업 7.6% - '17.10.23 최종판정 발표 · KEP 30%, 코오롱 플라스틱 6.2%, 기타 한국기업 30.4% ('17.10.24부터 5년간 부과)
폴리아크릴로 니트릴/아크릴 섬유 (Polyacrylonitrile Fiber or Acrylic Fiber)	5501.3000.10 5503.3000.10 5506.3000.10	반덤핑	'15.7.14	'16.7.13	섬유	- '15.7.14 : 반덤핑 조사개시 · 제소자 주장 덤핑마진율: 한국 52.58%, 일본 27.23%, 터키 17.56% - '16.4.1 : 반덤핑 예비판정 · 한국: 태광산업 및 기타 한국기업 6.1% · 일본: EXLAN과 기타 일본 기업 17.8%, TORAY 16.9%, 미츠비시 RAYON 15.8% · 터키: 10.7% - '16.7.13: 반덤핑 최종판정 - '17.11.7: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기중 재심 개시 · 덤핑협약기간: '16.8.1.~'17.7.31.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폴리아세탈) ' 17년 10월 23일, 반덤핑 최종판정

- ' 16.10.24일, 한국산, 태국산과 말레이시아산 폴리아세탈(HS 3907.10.10, 3907.10.90)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 17.6.30일, 덤핑율에 따라 잠정 관세 납부하도록 예비판정
: [(완세가격*덤핑률)*(1+수입증치세)]
- 10월 24일 최종판정 결과 발표,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은 5년(' 22.10.23일까지)
* 덤핑률: (한국) KEP 30%, 코오롱 플라스틱 6.2%, 기타 30.4%
(태국) THAI POLYACETALCO CO.,LTD 18.5%, 기타 34.9%
(말레이시아) Polyplastics Asia Pacific Sdn.Bhd 8%, 기타 9.5%

○ (아크릴섬유) ' 17년 11월 7일, 반덤핑 기중(규제기간 중) 재심 개시

- ' 15.7.14일, 한국, 일본, 터키산 아크릴 섬유(HS 5501.30.00, 5503.30.00, 5506.30.00)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작, ' 16년 7월 13일 최종 판정
- 이번 반덤핑 기중 조사대상국은 한국, 덤핑협약기간은 ' 16.8.1일~' 17.7.31일

○ (니트릴 고무) ' 17년 11월 9일부로 반덤핑 조사 개시

- 한국, 일본산 니트릴 고무(HS 4002.59.10, 4002.59.90)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작
- 제조된 수입제품 생산업체는 한국 금호석유화학, LG 화학, 일본 JSR과 제온
- 덤핑협약기간은 ' 14.1.1일~' 17.6.30일, ' 18.11.9일 이전 조사 완료 예정

○ (메틸이소부틸케톤) ' 17년 11월 20일 예비판정 결과 발표, 당일부로 해관 보증금 징수

- ' 17.3.27일, 한국·일본·남아공산 메틸이소부틸케톤(HS 2914.13) 반덤핑 조사 개시
- ' 17.11.20일, 덤핑행위를 판정,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
: 보증금 = [(완세가격*덤핑율)*(1+수입증치세)]
* 덤핑률 : (한국) 금호 P&B 화학 29.9%, 기타 한국기업 32.3%
(일본) 미츠이 화학 48.4%, 미츠비시 화학 51.2%, 기타 일본 기업 190.4%

(남아공) Sasol South Africa (Pty) Ltd. 15.9%, 기타 남아공 기업 34.1%

- (폴리실리콘) ' 17년 11월 21일, 반덤핑 기중(규제기간 중) 재심 결과 발표
 - ' 12.7.20일, 한국, 미국산 폴리실리콘(HS 2804.6190)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작,
' 14.1.20일 최종 판정
 - ' 16.11.22일, 한국산에 대한 중간 재심 개시, ' 17.11.21일 재심 결과 발표
 - ' 14년의 최종판정에 비해 한국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대폭 인상
 - * 반덤핑 관세 인상 현황: 웅진실리콘 12.3%→113.8%, OCI 2.4%→4.4%, 한국실리콘 2.8%→9.5%, KCC와 Innovation Silicon 48.7%→113.8%, 기타 한국기업 12.3%→88.7%
 - 이외 반덤핑 세율 부과대상 기업에 한화케미칼 (8.9%), SMP(88.7%) 추가
- (폴리우레탄 및 스판덱스) ' 17년 10월 13일부로 반덤핑 규제 종료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중국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 105건(95건 규제 중, 10건 조사중), 상계관세/세이프가드 각 1건
- 규제품목 : 화학(74건), 전자(10건), 섬유(8건), 금속(7건), 제지(7건) 등의 순
- 대상국가 : 미국(26건), 일본(21건), EU(17건), 한국(14건), 대만(10건), 인도(8건), 싱가포르(5건) 등의 순

* 자료원 : 중국무역구제정보망(中國貿易救濟信息網), WTO

○ 2017년 하반기 중국의 반덤핑 조사 착수 6건

- 조사품목은 5건 화학 분야, 1건 식품

○ 현재 중국이 시행중인 기타의 수입제한 조치로는 1) 수입허가증, 2) 수입쿼터, 3)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금지 등이 있으나, 점차 수입제한 조치를 철폐·완화하는 추세

- (수입허가증 관리) 중국은 수출입 및 외환관리를 위해 화물자동수입허가증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18년은 125개 품목에 대해 적용할 계획
- (수입쿼터 관리제도) 일부 농산물에 대해 중국은 수입쿼터 관리제도 시행, 현재 관세쿼터 관리제도로 변경하여 시행 중

* '18년 밀, 설탕, 양모, 화학비료 등 8개류 47개의 품목에는 활준세(Sliding Duties;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적용) 시행 중

-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금지) 중국은 '98년부터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무부 대외무역사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최근 중국의 비관세조치로는 1)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관리, 2)해외직구 관련 정책 변경, 3)유아용 매트에 강제성기준 적용, 4)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등임
 -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관리) ' 16.7.1일부터 중국 정부는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관리방법(RoSH2.0)” 시행, 냉장고/에어컨/TV/전화기 등 12종 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명칭, 함량, 부적합 사용 시 인체에 대한 악영향 등 정보 기재를 의무화
 - (해외직구) ' 16.4.8일부터 해외에서 B2C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전반적 세율 인상 및 검역·통관 관련 규제 강화, 해외직구 통관 규제는 업계 반발로 3차례 유예기간 연장, '19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
 - (유아용 매트) ' 17.12월, 유아용 매트 제품에 대해 강제성 제품인증(CCC 인증)을 실시한다고 발표, ' 18.12.1일부로 CCC 인증이 없는 유아용 매트는 판매 금지
 -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 명분하에 ' 17년말부로 24종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미국의 對중국 무역제재 강화에 따른 미중 통상마찰 심화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보호무역주의 고조
 - ' 17년 11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판매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자체 발동,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자체 발동한 것은 1991년 이후 26년 만임
 - ' 17년 하반기 중국은 총 6건 반덤핑 조사 개시, 미국산에 대한 조사가 4건임
- 환경오염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실시
 - ' 17년 연말부터 페플라스틱, 폐지, 폐금속과 폐방직원료 등 24종 폐기물 수입 금지
 - ' 18년 수출입관세실시방안을 통해 일부 비합금 금속의 잠정세율을 기존 수준에서 인상하고 페마그네시아, 폐강재, 폐광재를 잠정수입관세 적용범위에서 배제시켰음

24종 수입금지 폐기물 리스트

연번	유형	HS CODE	관세율(%)	연번	유형	HS CODE	관세율(%)
1	폐플라 스틱	3915.10.00.00	6.5	14	폐방직물	5103.10.90.90	9
2				15		5103.20.90.90	
3				16		5103.30.00.90	
4		3915.30.00.00		17		5104.00.90.90	5
5		3915.90.10.00		18		5202.10.00.00	10
6				19		5202.91.00.00	
7		3915.90.90.00		20		5202.99.00.00	
8				21		5505.10.00.00	5
9	폐금속	2619.00.00.21	1(잠정)	22		5505.20.00.00	
10		2619.00.00.29	4	23	63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생산과정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의 현지생산 규제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
 - ' 18년 전해알루미늄과 같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품도 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 * 전해알루미늄(HS 7601.1090)의 MFN 세율은 5%, 내년 잠정수입관세율은 0%
 - 중국 정부는 ' 17년 역대급 환경단속을 가동한 후 “환경단속 상시화”를 선언
 - 이에 따른 국내 수요 변화를 고려, 특히 일부 상품가격의 급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소비 U턴 정책 지속 시행
 - ' 17년 12월 1일부로 187종 소비품에 대해 FTA 관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 적용한 데 이어 ' 18년 (대폭 인하된)잠정세율 적용범위에 모두 포함시켰음
 - ' 15년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많은 식품, 문화 소비재, 건강 관련 상품,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춰왔음. 특히 중국인의 해외직구, 해외여행 주요 구매품목인 유아용품, 전기밥솥과 같은 가전 등의 수입관세율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낮춘 것은 구매력을 국내로 되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됨

<17.12.1일부로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18년 적용)>

구분	품목	2017 MFN (%)	잠정세율(%) (12.1일부)
식품	해산물	5~15	2~7
	치즈	12~15	8
	견과류/건조 과일	10~25	7~12
	육류가공품	15	8
	생수	20	10
	주류(위스키 등)	10~65	5~14
영·유아 용품	영·유아 포장식품	15	2
	특수조제분유	20	0
	기저귀	7.5	0
	유모차	20	10
약품	항생제	6	2
	한방약	3	2
화장품	향수	10	5
	색조화장품	10	5
	기초화장품/마스크팩	6.5	2
	샴푸	6.5	2
	모발용 염색제	15	5
	치약	10	5
의류/신발	의류	14~25	5~10
	신발	24	12
가전	냉장고	30	15
	세탁기	30	15
	전동칫솔/전동면도기	30	10
	커피머신	32	10
	토스트기	32	16
	비데	32	10
스포츠 용품	스키용품	14	7
생활용품	생리대	10	5
	칫솔	25	8
학용품	펜/연필	21	12

자료원: 중국 재정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작성

○ 기업신용등급과 통관검사 통합관리 추진

- ' 17년 10월, 수출입 상품 검역추출 최저비중 대폭 인하 규정, 검역검험절차 간소화 및 통관효율 제고에 관한 공고문을 통해 수출입검역검험절차 간소화 추진
- * 수입 스낵 및 주류 제품의 현장 검사비율은 기존의 100%→3%(최저비율, 신용등급이 높을 경우에만 限함)로 대폭 인하
- 기업의 세무, 법무, 무역 신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업의 신용등급과 검역추출 비중을 연결시켜 기업 신용관리를 강화

○ 수출입구조 업그레이드

- '중국제조 2025' 및 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 교역 구조 또한 고도화하는 과정
- 중국 '2018년 관세조정방안'에서는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대상 품목수를 지속 확대('16년 787개→'17년 822개→'18년 948개)했으며 이중 엑스선 기기 및 핵심부품, 도비(dobby)기·자카드기,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침단의약품 원료 등 중국 정부가 육성해왔던 산업과 관련된 제품 대거 포함됨.
- 과잉생산 해소 및 산업구조조정 가속화를 위해 일부 품목의 수출세율 조정
 - * '18.1.1일부로 철강재, 녹니석의 수출관세를 취소하고 삼원복합비료, 인회석, 콜타르, 강철괴 등 제품의 수출관세를 인하

○ 서비스무역 확대 추진

- 중국 서비스무역규모는 확대했으나 전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미만('17Q3 전년동기비 3.5%포인트 하락한 14.5%로 집계)
 - * 수출입 총액 '06년 2,027억 달러→'16년 6,575억 달러, 10년 사이 3배 확대
- 중국 상무부는 △생산성 서비스업 발전 촉진 △교육/문화/의료 등 생활서비스업 분야 외자진입 규제 완화 △금융업 개방폭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무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中 상무부 외자사(外資司) 탕원홍(唐文弘) 사장, '17.12.25.)

○ 일대일로 2.0시대 개막, 경험 강화

- 시진핑 지도부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모색을 거쳐 글로벌 영향력 확대 및 무역·투자 자유화 증진을 모색하는 동시에 능동적인 통상·경제협력·지역개발 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
 - * '17.1~11월 중국-일대일로 연선국가 교역총액은 전년동기비 15.4% 증가한 9,830억 달러, 신규 프로젝트 계약총액은 전년동기비 13% 증가한 1,135억 달러로 집계됨.
- '17년 5월 중국이 처음으로 조직한 국제 경제협력 논의체인 실크로드 고위급 포럼 개최, '18년 첫 '일대일로 수입박람회' 개최 준비 중
- '15년 말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원국도 지속 확대 중('17년 말 기준 회원국은 84개 국), 2년 사이 총 24개 프로젝트에 42억 달러 대출 지급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화학)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중국 정부의 반덤핑 조치 확대 가능성 상존
 - ' 17년 하반기, 신규 반덤핑 조사 6건 중 5건이 화학 분야임
- (반도체) 현지 스마트업계의 메모리 반도체 0가격 급등에 대한 불만 고조로 인한 반독점조사, 관련 제품 수입규제 가능성 큼
 - 현지 언론(21세기경제보도, 베이징상보 등) “DRAM 가격 연속 18개월 급등”을 보도
 - 중국 당국(국가개발위) 최근 스마트폰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관련 반독점 조사 중
 - * 21세기경제보도('17.12.22)에 따르면 국가발개위(가격 관련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중국 3대 반독점기관 중 하나)는 현지 스마트폰 업체의 제소에 따라 삼성 관계자에 대한 조사(約談) 실시

17. 캐나다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캐나다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0건으로, 모두 반덤핑 조치이며, 현재 탄소강용접관 1건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이 진행 중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9건, 전기전자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동관 (Copper Tube)	7411100010/20/ 31/39	반덤핑	'13.5.22	'13.11.18	철강 및 금속	- '13.11.18: 반덤핑 최종판정 - 한국기업: 5.5%~82.4% - '14.9.2: 연례재심 착수 - '15.1.30: 연례재심 결과, 기존 관세 유지 결정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3.11.18~'18.11.17
동제관연결구 (Copper Pipe Fittings)	7412100011/ 19/90 7412200011/ 12/19/90	반덤핑	'06.6.8	'07.1.18	철강 및 금속	- '07.1.18: 반덤핑 최종판정 - 한국기업: 0%~242% - '14.5.30: 연례재심 결과, 기존 관세 유지 결정 - '15.9.14: 일부 피제소 기업 이의제기에 따라 재조사 착수 - '16.2.5: 재조사 결과, 일부 기업(미공개)외 기존 관세 유지 결정 - '16.7.20: 일몰재심 착수 - '16.12.20: 일몰재심 결과, 기존 관세 유지 결정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6.12.20~'21.12.19
유입식변압기 (Liquid Dielectric)	8504230000 8504909010/82/ 90	반덤핑	'12.4.23	'12.10.22	전기전자	- '12.10.22: 반덤핑 최종판정 - '12.11.21: 연방법원 항소 접수 - '12.12.6: 연방법원 최종 판정 재고 명령

Transformers)						- '14.3.6: 최종판정 수정 - 한국기업: 34.8%~101% - '17.2.15: 연례재심 착수 - '15.1.30: 연례재심 결과, 기존 관세 유지 결정 - '17.7.26: 일몰재심 착수 - '17.12.22: 일몰재심 결과, 기존 관세 유지 결정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7.12.22~'22.12.21
유정용 강관 (Oil Country Tubular Goods II)	7304290011/19/21/29/31/39/41/49/51/59/61/69/71/79 7304390010 7304590010 7306290011/19/21/29/31/39/41/49 7306300029/39 7306500090 7306900010/20	반덤핑	'14.7.21	'15.3.3	철강 및 금속	- '15.3.3: 반덤핑 최종판정 - 한국기업: 0%~37.4% - '15.5.4: 최종판정('15.3.3) 결과에 대한 일부기업의 이의제기로 재조사 실시 (* 기 발표된 최종판정은 재조사 결과 발표 시까지 적용 보류) - '15.12.14 : 재조사 결과 발표 (* 정상가격 제출한 한국기업 5개사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부과 철회)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5.3.3~'20.3.2
철골구조용 강관 (Hollow Structural Section)	7306300023/33 7306500030 7306610012/22	반덤핑	'03.3.21	'03.11.17	철강 및 금속	- '03.11.17: 반덤핑 최종판정 - 한국기업: 89% - '13.8.8: 일몰재심 착수 - '13.12.20: 일몰재심 결과, 기존 관세 유지 결정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3.12.20~'18.12.19
철구조 부품품 (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s)	7216990010/20/30/91/99 7301220010/20 7308400010/00 7308900060/96/99 7326909090 8421999090 8428310000	반덤핑	'16.9.12	'17.4.25	철강 및 금속	- '16.9.12: 한국, 중국, 스페인, UAE, 영국, 아일랜드 6개국 반덤핑 조사 개시(* 중국은 상계관세 조사 포함) - '17.1.25: 예비판정 결과발표 - '17.4.25: 최종판정 - 한국기업: 1.9%~45.8%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8428320000 8428330000 8428390030/41/ 49/80/90					'17.4.25~'22.4.24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Concrete Reinforcing Bar)	7213100000 7214200000 7215900090 7227900090	반덤핑	'14.6.13	'14.12.10	철강 및 금속	- '14.12.10: 반덤핑 최종판정 - 한국기업: 13.3%~41% - '16.2.9: 연례재심 착수 - '16.6.29: 연례재심 결과, 기존 관세 유지 결정 - '17.5.1: 연례재심 착수 (한국, 중국, 터키) - '17.9.1: 연례재심 결과, 기존 관세 유지 결정 - '17.12.4: 연례재심 착수 (9개 국가 대상) - '18.5.4: 연례재심 결과 발표 예정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4.12.20~'19.12.19
탄소강용접관 (Carbon Steel Welded Pipe II)	7306300010/20/ 30	반덤핑	'12.5.14	'12.12.1 1	철강 및 금속	- '12.12.11: 반덤핑 최종판정 - 한국기업: 54.2% - '13.5.7: 연례재심 결과, 기존 관세 유지 결정 - '17.12.11: 일몰재심 착수 - '18.5.7: 일몰재심 결과 발표 예정
탄소합금강관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 II)	7304190010/20 7305110010/20 7305120010/30 7305190010/20 7306190010/90	반덤핑	'17.6.8	'17.12.5.	철강 및 금속	- '17.6.8: 반덤핑 조사개시 - '17.9.6: 예비판정 결과발표 - '17.12.5: 최종판정 결과발표 - 한국기업: 4.1%~88.1%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7.12.5~'22.12.4
후판(저합금강) (Steel Plate VII)	7208510010/91/ 92/93/94/95 7208520010/91/ 92/93/94/95	반덤핑	'13.9.5	'14.4.17	철강 및 금속	- '14.4.17: 반덤핑 최종판정 - 한국기업: 1.9%~59.7%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4.4.17~'19.4.16

출처 :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 Agency), 2017년 12월 기준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탄소합금강관) 2017년 6월 8일, 반덤핑 조사개시
 - 캐나다 철강(제소)업체는 지난 2016년 한국산 제품이 국내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입되었다고 강조하며 한국산 제품에 58.2%의 덤핑 마진 부과를 요구
 - 2016년 대 캐나다의 한국산 수입액은 USD 5719만으로 '15년 대비 242.8% 급증
 - 2017년 9월 6일 예비판정 결과에서 덤핑 혐의 인정되어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4.7~107.2%의 잠정관세율 적용
 - 2017년 12월 5일 최종판정 결과, 한국산 제품에 4.1~88.1%의 관세율이 향후 5년간 부과될 예정
 - 휴스틸 4.1%, 넥스틸 12.9%, 세아제강 27.5%, 현대제철 47.8%, 현대중합상사 52.5%, 기타 88.1%
- (유입식 변압기) 2017년 7월 26일, 일몰재심* 착수
 - 캐나다의 대한수입규제 품목 중 유일한 전기전자 제품으로, 현재 현대중공업 (9.1%), 효성(34.8%), 이 외 한국산 제품(101%)에 반덤핑 관세율 부과 중
 - 2017년 12월 22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덤핑 혐의가 인정돼 2022년 12월 21일까지 추가로 적용될 예정

* 일몰재심 매 5년에 한 번씩 진행
-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2017년 12월 4일, 연례재심 착수
 - 지난 2017년 5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국, 중국 및 터키산 제품에 대한 연례재심을 착수한 바 있음
 - 참고로, 적극적 대응한 터키의 경우 신규 정산가가 산출된 반면, 중국, 한국 및 일부 소극적 터키 기업에 기존 반덤핑 관세 적용
 - 한편, 이번 연례재심은 대상 국가(지역)를 총 9개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판정은 2018년 5월 4일 발표
 - 대상 국가(지역): 한국, 중국, 터키, 벨라루스, 대만, 홍콩,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 (탄소강용접관) 2017년 12월 11일, 일몰재심 착수
 - 현재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54.2%)에 대한 일몰재심이 진행 중
 - 최종판정은 2018년 5월 7일 발표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향후 5년간 유지되거나 덤핑 혐의가 철회될 전망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캐나다는 총 29개국, 33개 수입품목 104건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 중
 - 규제형태 : 반덤핑 78건(71건 규제, 7건 조사 중), 상계관세 26건(21건, 5건 조사 중)
 - 대상국가 : 중국(21건), 한국(10건), 브라질(5건), 대만/인도/미국/태국(4건), 터키/일본(각 3건) 등
 - 규제품목 : 철강 및 금속(29품목), 기타(4품목) 수입
- 철강·금속 관련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 유지
 - 국경관리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신규 조사 총 16건 중 14건은 철강·금속 제품이며, 6건은 한국도 해당되는 사항임
 - 상기 16건 중 12건은 대상국의 보조금에 대한 조사도 포함한 것으로, 최근 캐나다 정부가 보조금 여부에 대한 상계조치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평가됨

〈캐나다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구분	대상국가	품목	품목수
철강 및 금속	한국 포함	철골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 동제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s) 탄소강용접관 II(Carbon Steel Welded Pipe II) 동관(Copper Tube) 후판 7(저합금강)(Steel Plate VII) 콘크리트보강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 유정용 강관 II(Oil Country Tubular Goods II)	9

		철구조부분품(Fabricated Steel Components) 탄소합금강관 II(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	
	한국 이외	알루미늄사출(Aluminum Extrusions) 탄소·합금강관(Carbon & Alloy Steel Line Pipe) 콘크리트보강철근 2(Concrete Reinforcing Bar II) 용접탄소강관 1(Carbon Steel Welded Pipe) 탄소강 화스너(Fasteners : screws, bolts, nuts etc) 열연강판(Hot-rolled Steel Sheet) 대구경 탄소·합금강관(Large Diameter Carbon & Alloy Steel Line Pipe) 유정용 강관 1(Oil Country Tubular Goods I) 태양광 패널 (Photovoltaic Modules and Laminates) 파일링 강관(Piling Pipe) 철강제 강관 이음새(Pub Joints) 무계목케이싱강관(Seamless Casing) 실리콘메탈(Silicon Metal) 철강제 싱크(Stainless Steel Sinks) 철강제 구조물(Steel Grating) 열연강판-후판 3(Steel Plate III) 열연강판-후판 5(Steel Plate V) 열연강판-후판 6(Steel Plate VI) 열전기장치(Thermoelectric Coolers and Warmers) 알루미늄제 건축구조물(Unitized Wall modules)	20
그 외 기타	한국포함	유입식 변압기	1
	한국이외	감자, 정제당, 석고보드	3
수입규제 품목 총계			33

출처: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 Agency), 2017년 12월 기준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NAFTA 재협상, 2018년 1분기 내로 긍정적 결과 도출 희망
 - 현재까지 5차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미국이 NAFTA에서 탈퇴할 시 캐나다의 자동차, 석유, 금속, 플라스틱 제품 등 관세가 부과돼 가격경쟁력 약화가 예상됨

- 캐나다-유럽연합 간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올해('18) 정식 발효 예정
 - 2017년 9월 21일 CETA가 잠정 발효되었으며, 올해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 기준을 거쳐 정식 발효될 전망
-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미 무역 의존도를 탈피할 예정
 - 2017년 8월 10일 인도와 10차 FTA 협상을 진행했고, 9월에는 아세안(ASEAN)과 자유무역협정 예비협상 계획을 발표함
 - 2017년 10월 메르코수르(MERCOSUR) 중남미 경제협력체와 FTA 추진 의사를 밝혀 올해('18) 중으로 예비협상을 진행할 예정
 - 중국과는 양자간 FTA를 추진을 위해 예비협상에 착수할 예정인데, 환경, 노동, 인권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상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 캐나다의 수입규제 조치는 주로 철강금속 제품에 집중되어 있고, 캐나다 철강업체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의 수입을 견제하고 있어 수입 규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연방정부의 인프라 확충, 송유관(Keystone XL) 건설, 해양플랜트(West White Rose Project) 수주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예정) 중으로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동시에 캐나다 내 철강 산업 보호 움직임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18. 코스타리카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코스타리카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건으로, 세이프가드 규제 중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도정미	1006.30.90.91, 1006.30.90.99	세이프가드	'14.2.11	'15.2.26	기타	한국도 해당국이나 대상 업체 없음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코스타리카 도정미 대상 세이프가드 시행 배경
 - 2013년 쌀 고정가격제로 인한 자국산 쌀과 수입산 쌀 간의 격차 심화, 가격 경쟁력을 지닌 도정미 수입 급증(아르헨티나, 우루과이)으로 코스타리카 국내 생산량 및 시장점유율 감소
 - 2014년 코스타리카 농업협동조합(ANINSA)에서 대상국(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관세 인상 등 자국 도정미 산업 보호를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신청
 - 2015년 2월 19일부터 총 59.88%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6.22% 감소
- * 기존 관세(35%) 및 세이프가드 관세(18.66%)

< 도정미 총관세율 >

법적 효력 시기(1년간)	총관세율(%) (세이프가드 + 관세)
2015년 2월 19일	59.88%
2016년 2월 19일	53.66%
2017년 2월 19일	47.44%
2018년 2월 19일	41.22%
2019년 2월 19일	35.00% *세이프가드 종료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코스타리카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1건 규제 중), 세이프가드(1건 규제 중)
 - 대상국가 : 브라질(1건)
 - 규제품목 : 농산물(쌀가루, Pounded Rice)
- (일반사항) 코스타리카는 제조업이 취약하여 주요 공산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무역업자 등록 시 별도 수입제한은 없음
 -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농산물, 가공식품에 한하여 보건부, 농림수산부 등 관할기관의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경우가 있음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코스타리카는 2007년 이후 적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해온 결과 현재 전체 수출의 68%, 수입의 76%가 FTA 체결국이며, 중국과는 2010년 체결하여 관세 특혜를 보고 있음
- (한-중미 FTA 추진) 2017년 3월 10일, 한-중미 5개국 자유무역협정 가서명
 - 한국과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간 FTA 가서명(' 17.3.10) 및 2018년 발효 추진
 -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전자제품 등 주요 소비재 대상 관세 철폐 추진
- 2017년 한-코스타리카 수출입 동향
 - 2017년 10월 기준 양국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23.4% 하락(244.2백만불 기록), 수출의 경우 25.5% 감소(209.1백만불 기록), 수입의 경우 7.3% 감소(35.2백만불 기록)

- 2017년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주요 수출품목은 차량 및 수송기기 부품(HS코드 87, 총 113.4백만불, 전년 동기대비 23.1% 감소), 주요 수입품목은 커피류(HS 코드 09, 총 9.9백만불, 전년 동기대비 26.3% 증가) 등이 있음
- 이외 2017년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신규 수출증증품목은 의약품(HS코드 30, 총 6.9백만불, 전년 동기대비 43.2% 증가) 등이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특별히 對韓 수입규제 예상되는 품목 없음

19. 콜롬비아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콜롬비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2건으로, 모두 반덤핑 규제
 - 품목별로는 화학 1건, 기타 1건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 판정	품목분류	비고
DOP 가소제 (Diocetyl Phtalate)	2917.32.0000	반덤핑	'14.1.20 '17.11.10 (재심 회부)	'15.12.11	화학	- '14.1.20 반덤핑 조사 개시 - '14.8.25 판정에서 한국산은 조치 제외 - '15.4.17 한국산제품 반덤핑 재조사 - '15.12.11 최종 덤핑판정 - '17.4.25 재심 회부 - '17.8.20까지 적용 - '17.11.10 한국산제품 반덤핑 연장여부 재조사
PVC 필름 (Rigid PVC Film)	3920.49.0000	반덤핑	'16.9.9	'17.7.11	기타	- '13.11.13 중국산 제품과 함께 덤핑판정 - '16.9.9 재심 회부 - '17.6.30 현재 반덤핑 연장 여부 조사 진행 중 * 덤핑마진율 : 한국 111.18%, 중국 156.12% - '17.7.11 반덤핑 2년 연장 확정

자료원: 콜롬비아 상공관광부(MINCIT)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PVC 필름) 2017년 7월 11일, 반덤핑 조치 연장 확정
 - 2017.7.11 콜롬비아 상공관광부(MINCIT)는 한국산 PVC필름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2년 연장함.
- (DOP 가소제) 2017년 11월 10일, 반덤핑 조치 연장여부 조사 진행 중
 - DOP 가소제 반덤핑 규제 기간은 완료되었으나, Carboquimica SA사의 반덤핑 관세 재심 요청에 따라 '17.11.10. 콜롬비아 상공관광부(MINCIT)가 재조사에 착수. 현재 조사 진행 중
 - * 재심요청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경우, 반덤핑 규제가 자동 연장되어 조사 기간 동안 조사 제품은 반덤핑 규제가 적용됨
 - * 평균 조사 검토로 약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대 12~18개월까지도 소요됨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콜롬비아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6개국 14개 제품에 대해 반덤핑 수입규제 조치 시행중, 9건의 조사 진행 중)
 - 규제품목 : 철강(7건), 화학(4건), 기와/세라믹(1건), 원자재(1건), 부품(1건)
 - 규제형태 : 반덤핑(14건 규제 중, 9건 조사 중)
 - 대상국가 : 중국(11건), 한국(2건), 멕시코(2건), 인도, 미국, 베네수엘라(각 1건)

〈17.12월 기준 반덤핑 규제 품목 현황〉

No.	품목	제품	HS Code	대상국
1	기와/ 세라믹 타일	도자제, 식탁용품	6912.00 6911.10	중국
2	금속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저탄소)	7213.91.90 7213.91.10.10 7227.90 7227.90.90	중국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기타)	7315.82.00.00	중국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기타)	7210.49	중국
		삽, 곡괭이	8201.10.00.00 8201.30.00.00	중국
		중공프로파일, 봉, 알루미늄 관, 알루미늄 합금	7604.21.00.00 7604.29.10.00 7604.29.20.00 7608.10.00.00 7608.20.00.00	중국/ 베네수엘라
		고강도 강관 케이싱(casing), 튜브(tubing)	7304.29.00.00 7306.29.00.00	중국
3	화학	구연산/구연산 나트륨	2918.14.00.00 2918.15.30.00	중국
		가소제 DOP	2917.32.00.00	멕시코/ 한국
		PVC 필름	3920.43.00.00 3920.49.00.00	한국/중국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1.90.10.00	인도
		플라스터제품 또는 플라스터를 기제로 조합한 제품	6809.11.00.00	미국/ 멕시코
4	원자재	나무 판	4412.31.00.00 4412.32.00.00	중국
5	부품	버스용 타이어	4011.20.10.00 4011.20.90.00	중국

자료원: 콜롬비아 상공관광부(MINCIT)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일반

-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및 환경규제 관련 수입품에 대해 인비마(INVIMA), 레티에(RETIE), 이카(ICA)와 같은 인증서 취득을 요구함
- 해당 인증서 취득한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우리 기업의 콜롬비아 진출 장벽이 되고 있음

○ 농업용 중고 장비 관세 철폐

- 2017년 8월 14일 콜롬비아 상공관광부(MINCIT)는 농업 활성화 목적으로 법령 1280에 의거하여 플라우(쟁기),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종자, 곡물,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 분류기 및 선별기와 같은 농업용 중고 장비의 관세를 향후 2년간 0%로 적용(2017년 8월~2019년 8월)

* 적용 HS Code : 8432.10, 8432.29, 8432.41, 8433.31, 8436.10, 8437.10, 8436.29, 8431.39, 8432.80, 8434.20, 8434.29

○ 구두 수입 관세 인상

- 2017년 11월 2일 콜롬비아 상공관광부(MINCIT)는 HS Code 61, 62에 해당하는 미국산 의류와 그 부속품 중 10불 이하의 제품 관세를 40%로 지정
- 신발류 HS Code 64에 해당하는 제품 중 6401(6달러), 6402(6달러), 6403(10달러), 6404(6달러), 6405(7달러)의 경우 법령 1786에 의거하여 2018년 1월부터 35%의 관세 적용

○ 콜롬비아-브라질 섬유제품 관세 철폐

- 콜롬비아 섬유산업의 수출 도모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섬유제품 관세를 0%로 변경함(기존 관세 30%). 이에 따라, 2018년 콜롬비아-브라질의 섬유제품 교역액이 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수입량 급증 품목

- 유제품(HS Code 0402), 분유(HS Code 1901.10.1010), 냉동식품(HS Code 0710, 2004, 1902-20)과 같은 제품의 경우 소비자 트렌드 변화 및 특혜관세 품목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농업 및 식품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한-콜 FTA 체결로 한국산 제품의 對콜롬비아 수입규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DOP 가소제와 같이 반덤핑 조사 중에 있거나, PVC 필름과 같이 반덤핑 규제 중인 제품의 경우 주의 필요

20. 태국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태국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9건으로, 반덤핑 7건, 세이프가드 2건이며, 이 중 반덤핑 1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9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도색 아연도금강판 (Painted Hot Dip Galvanized of Cold Rolled Steel)	7210.70	반덤핑	'11.07.08	'13.1.10	철강 및 금속	- 한국, 중국, 대만 대상 - 동부제철 16.25%, 유니온스틸 13.82%, 현대하이스코 및 POSCO 15.40%, 기타 22.55% . 기간: '13.1.10~'18.1.9 - '14.2.11: 반덤핑 중간 재심 개시, '15.2.10 최종 판정 . 기간: '15.2.10~'18.1.9 10.70%(유니온스틸 면제)
강관 (Certain Iron Steel Pipe and Tube)	7305.11/12/ 19/31/39/90, 7306.19/29/ 30/50/61/69/90	반덤핑	'16.1.18	'17.7.19	철강 및 금속	- Metal Tube and Cold Forming Steel Association 및 태국철강회사 제소 - 한국제품 덤핑율 54.95% (CIF) 주장 - '16.11.16: 반덤핑 예비판정, 4개월간 잠정관세 부과 ('16.11.16~'17.3.15) - '17. 3.14: 잠정관세 부과 기간 2개월 연장 ('17.3.15~'17.5.15)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 한국: 세아제강 17.22%, 현대제철 32.62%, 질의서 응답기업 24.40%, 기타업체 53.88% - '17.7.19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판정 . 부과기간: '17.7.20~'22.7.19 . 한국: 세아제강 3.49%(CIF), 현대제철 32.62%, 세아 FS: 16.10%, 기타 업체 53.88%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 (Non alloy 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in coils and not in coils)	7208.36/37/38/39/51/52/53/54	세이프가드	'14.01.30	'14.12.23	철강 및 금속	- 세이프가드 관세 . '16.6.7~'17.6.6: 21.13% (CIF) - '16.10. 4 재심착수, - '17. 6. 6 재심결과 세이프가드 규제 3년 연장 결정 . '17. 6. 7~'18. 6. 6 : 21.00% (CIF) . '18. 6. 7~'19. 6. 6 : 20.87% (CIF) . '19. 6. 7~'20. 6. 6 : 20.74% (CIF)
스테인리스 압연강판 (냉간압연품) (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	7219.32/33/34/35, 7220.20	반덤핑	'02.02.22	'03.3.13	철강 및 금속	- 한국, 일본, 대만 대상 - '09.3.19 일몰재심에서 조치 5년 연장 결정 - '14.2.19 일몰재심 착수, '15.2.26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 관세 부과 5년 연장 결정 . 덤핑마진율: 한국 50.99%, . 기간: '15.2.26~'20.2.25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 (Stainless Steel Pipe and Tube)	7305.31, 7306.11/21/40/ 61	반덤핑	'15.9.17	'16.9.14	철강 및 금속	- Thai-German Products PCL, Toyo Millenium Co.제소 - '16.9.14 최종판정 . 부과기간: '16.09.17~ '21.09.16 . 한국: 세아 11.96%, 기타업체 51.53% . 중국 145.31%, 베트남 310.74%, 대만 2.38~29.04%
아연도금강판 (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	7210.61	반덤핑	'11.07.08	'13.1.10	철강 및 금속	- 한국, 중국, 대만 대상 . 기간: '13.1.10~18.1.9 . 덤핑율: 13.82~22.55% . 동부스틸 16.25%, 유니온스틸 13.82%, 포스코·현대하이스코 15.40%, 기타 22.55%
재압연용 열연강판 (Flat Hot Rolled in Coils and not in Coils)	7208, (*7208.25/26 /27 제외) 7211.13/14/19	반덤핑	'02.07.22	'03.5.27	철강 및 금속	- '13.6.28: 재심 최종판정 . 포스코 13.58%, 현대제철 13.96%, 기타 58.85% - '14.5.21. 일몰재심착수, '15.5.23. 일몰재심 결과 규제 연장 . 기간: '15.5.23~'20.5.22: . 반덤핑 관세율: 일반 한국기업-58.85%, 포스코-13.58%, 현대제철- 2.81%(CIF)
평판 아연도금강판 (Galvanized flat sheet in coil and not in Coil)	7210.49, 7212.30, 7225.92	반덤핑	'16.9.14	-	철강 및 금속	- '16.9.14 반덤핑 조사개시 - 한국산 제품 덤핑률 CIF의 26.99% 주장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합금 열연강판 (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with Certain amounts of Alloying Elements)	7225.30, 7225.40, 7226.91	세이프가드	'12.11.28	'13.2.27	철강 및 금속	- '15.7.18 재심, '16.2.26 세이프가드 규제 3년 연장 결정 . '16.2.27~'17.2.26 : 41.67% (CIF) . '17.2.27~'18.2.26 : 40.42% (CIF) . '18.2.27~'19.2.26 : 39.21% (CIF)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 2017년 6월 6일 재심결과 세이프가드 규제 3년 연장 결정

- 2014년 12월 12일부터 2017년 6월까지 부과하기로 한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에 관한 재심이 2016년 10월 4일 착수되었으며, 2017년 6월 6일 재심결과 3년간 규제 연장 결정

* 세이프가드 관세율: (1년차) '17. 6. 7~'18. 6. 6: 21.00%(CIF) / (2년차) '18. 6. 7~'19. 6. 6: 20.87%(CIF) / (3년차) '19. 6. 7~'20. 6. 6: 20.74%(CIF)

○ (강관) 2017년 7월 19일 반덤핑 관세부과 최종 판정

- 태국 철강업체 및 금속튜브.냉간성형강협회의 제소를 수용, 2016년 1월 18일자로 한국 및 중국산 강관 및 튜브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 착수
- 2016년 11월 16일부터 4개월간 1차 잠정관세 부과, 2017년 3월 15일부터 2개월간 2차 잠정관세 부과

* 잠정관세율: 1, 2차 모두 일반 한국기업 53.88%(CIF 기준), 세아제강 17.22%, 현대제철 32.62%, 질의서 응답기업 중 개별 관세율 미부과업체 24.40%

- 2017년 7월 19일 반덤핑 최종판정을 통하여 2017년 7월 20일부터 5년간 한국 업체들에 대하여 CIF의 3.49~53.88%의 반덤핑 관세 부과 시행

* 반덤핑관세율: 일반 한국기업 53.88%(CIF 기준), 세아제강 3.49%, 현대제철 32.62%, 세아 FS 16.10%

* 반덤핑 관세율 적용예외: 2중처리된 강관, 미국석유협회(API) 모노그램 인증제품,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A671) 규격인증 제품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 '태국산업단지규정'/'태국투자청(BOI)규정'/'관세법'을 적용받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태국-말레이시아 공동개발구역 내 설치를 위한 석유 굴착, 철강구조물, 석유 철강 관련 건설 또는 관련 부품관련 건설을 위한 강관 수입 시 해당

○ (재압연용 열연강판-산세강판) 2017년 8월 1일 반덤핑 혐의없음으로 조사종료

- 태국 최대 철강업체 Sahaviriya Steel Industry PCL사의 제소를 수용하여 2016년 2월 4일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한국산 재압연용 열연 산세강판이 태국 제조업체들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바 없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년 8월 1일 조사 종료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태국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 22개 국가에 52건(46건 규제 중, 6건 조사 중), 세이프가드 3건 규제 중
- 반덤핑 대상국가 : 중국(15건)(규제 중 13건, 조사 중 2건), 대한민국(7건)(규제 중 6건, 조사 중 1건), 대만(7건)(규제 중 6건, 조사 중 1건), 베트남(4건), 일본(2건), 카자흐스탄, 러시아, 남아프리카, 베네수엘라, 알제리, 아르헨티나,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이란, 터키 이상 15개국 각 1건 규제 중, 호주, UAE 이상 2개국 각 1건 조사 중
- 규제품목 : 철강품목 52건(반덤핑 49건, 세이프가드 3건), 화학(1건-시트르산(규제 중)), 기타 품목(2-고무(규제중), 멜라민(조사 중)) 순임

* 자료원: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산하 무역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 홈페이지(<http://btir.dft.go.th/Home.aspx>)

○ 태국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를 실시하는 주요 품목은 철강제품

- 자동차 수출, 공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과 더불어 수요가 꾸준하나 다양성 부족, 품질 및 가격경쟁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철강업체(Sahaviriya Steel Industries(SSI) 등)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 2016년 태국의 철강 소비량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한 1,929만 톤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중국내 생산량은 797만 톤(23% 증가)에 그침. 반면, 2016년 중 철강 수입량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1,260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

* 한국은 2016년 태국의 전체 철강수입국 중 일본(36.4%), 중국(27.3%)에 이어 3위로 전체 수입 비중의 12.8%를 차지하여 중국과 더불어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 중의 하나임.

- 특히 과잉 생산된 중국산 물량이 대거 태국으로 유입되면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태국 업체들의 제소 및 불만제기가 이어져 신규조사 착수 등 철강제품에 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
- 강제인증 품목 확대로 인증관련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 2017년 12월 현재 수입제품의 인증을 다루는 기관인 태국산업표준원(TISI)의 필수 인증(Compulsory Standard) 품목은 117개이며, 인증품목이 확대되는 추세
 - * 2017년 하반기 중 9개의 필수인증이 추가, 2018년 상반기 중 3개의 필수 인증이 추가될 예정
 - 2017년 상반기 중 5개의 철강관련 강제 인증이 신설되어, 2017년 12월 말 기준 철강관련 강제인증은 모두 23개임
 - 위생검역(SPS)의 경우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신규 조치 건이 없으며, 기술규제 (TBT)의 경우 2017년 중 주로 식품 및 산업용 제품 관련 11개의 법 개정안, 인증제도 등이 마련됨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태국의 통상정책은 무역을 성장엔진으로 하는 태국이 경쟁력 있는 국가 및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태국은 적극적, 지속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을 준수하며, 다자간 및 지역적 주도하의 단계적, 점진적, 전향적 자유화 정책 추진
 - 전체 양허대상 품목을 일반품목, 일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구별하여 연차적 관세인하
 - 2014년 5월 군사정권 집권 이후 경색되었던 태국-EU간의 FTA에 관한 논의가 2018년 말 총선 실시가 확실시 되면서 전면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등 태국은 전반적으로 개방적 통상정책 추진
 - * 태국-EU 간 FTA논의는 2013년 3월 6일 시작되었으나, 2014년 5월 22일 태국 내 쿠데타로 인한 군부정권 집권이후 EU는 태국과의 협정체결 추진에 관한 논의를 전면 중단. 2018년 11월 총선 실시가 확실시 되자 2017년 12월 중순부터 FTA 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
-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으로 인한 ASEAN 역내 교류 확대
 - ASEAN 회원국 간 관세 인하 및 면제를 통해 교역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 교통인프라 구축 및 제조업 생산기지 건설 등으로 인해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태국 기업 또한 산업별로 ASEAN 역내 국가 업체 인수, 시장진출 등을 진행하며 역내 교류와 직접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음
 - ASEAN 역내 인접국가들 및 중국과 인도 등 기타 아시아지역으로의 교역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대표적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
- 2017년 하반기 중 반덤핑 및 상계관세 개정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절차 지연으로 발효시점 불투명
- 반덤핑 우회(anti-circumvention) 등으로 관세부와 회피 적발 시 처벌규정 삽입
 - * 우회덤핑이 오랜 시간에 걸쳐 국내 업체들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어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우회덤핑 적발 대상은 특정 품목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납입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조국이 아닌 제 3국을 통해 수입하거나, 제품을 최소 변경(제품 변경을 통해 다른 HS 코드로 분류되도록 유도)하거나 부품 또는 부분품을 태국으로 수출한 뒤 태국 내 조립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됨
 - * 태국 냉연강관협회장인 아누왓 왕와니차콘(Anuwat Wangvanichakorn)씨는 특히 중국 제품의 반덤핑 우회행위가 자주 포착되며 이는 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 공통의 우려사항이라고 언급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제품) 태국 정부는 2015년 6월 철강을 기존의 priority watch list에서 sensitive list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분류, 철강제품 가격을 일 단위로 모니터링 하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강화될 여지가 커짐
- 철강분야는 태국이 만성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산업으로 철강제품에 관한 수입규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 한국산 제품에 대해 2016년에만 4건(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1건)의 조사 착수하여 2017년 중 3건에 대한 최종판정이 발표
 - *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결정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부과 대상에서 제외, 반덤핑 1건은 관세부과 조치결정, 1건은 피해사실 없음으로 관세부과 없이 조사 종료
 - 2017년 중 한국 관련 신규 조사 착수 건은 없었으나 2017년 태국의 경기 회복이 본격화 되고, 8년 만에 수입금액이 증가세로 돌아설 예정인 만큼 향후 업계의 반덤핑 관련 제소가 이루어질 가능성 높아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21. 터키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터키의 對韓 수입규제 건수는 전체 15건으로, 반덤핑 11건(조사 진행 2건), 세이프가드 4건(조사 진행 1건)
 - 품목별로는 화학 6건, 섬유 4건, 철강금속 1건, 기타 품목 4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금속드리사 (Metalized yarn)	5605.00	반덤핑	'04.2.7	'10.7.24	섬유	- '04.9.24: 최종판정\$2.2/kg - '09.9.9: 일몰재심 실시 계획 통보 - '10.7.24: 일몰재심결과 발표(\$2.2/kg반덤핑관세 유지) . 국내대상업체: 기신, 대하산업, 모던텍스 . 2021.10.13종료예정
디옥틸 프탈레이트 (DOP;Diocetyl Phthalate)	2917.32	반덤핑	'16.7.21	'17.10.20	화학	- '16.7.21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 조사개시 - '17.10.20 : 최종 판정 관보30216(2017/23) . LG화학 7.99%, 기타 12.57%
디옥틸 테레프탈레 이트 (DOTP;Diocetyl Terephthalate)	2917.39.9000	반덤핑	'16.11.23	'17.10.20	화학	- '16.11.23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 조사개시 - '17.10.20 : 최종 판정 관보30216(2017/24) . LG화학 7.99%, 기타 12.57% ('17.10.20-'22.10.20)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과 그 부분품 (Articulated link chain and parts thereof)	7315.11.90, 7315.12, 7315.19	반덤핑	'12.12.14	'13.12.12	철강 및 금속	- '13.12.12: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 \$1,200/ton (2021.6.19종료예정) 한국,말레이시아,대만 적용 (한국 BongWarner Morse Tec.Korea,대창은 면제)
무수프탈산 (Phtalic anhydride)	2917.35	반덤핑	'16.4.17	'17.2.23	화학	- '16.4.17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 조사개시 - '17.2.23 반덤핑최종판정 . 반덤핑관세: 8.44% . 부과기간: '17.3.31~'22.3.31(5년간)
벽지류 (Wall papers and similar wall coverings)	4814.20, 4814.90.10.00/ 70.10	세이프 가드	'14.12.12	'15.7.7	기타	- '14.12.12: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 '15.6.20: 최종판정 - '15.7.7: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15.8.6 시행) . 1년차 \$5/kg 2년차 \$4.5/kg 3년차 \$4.0/kg ('18.8.5 종료예정)
칫솔 (Tooth brushes)	9603.21	세이프가드	'17.4.22	'17.8.28	기타	- '17.4.22: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 최종판정(관보 30168 '17.8.28자)공표하고 내각 승인대기중(미발효) - 발효시 관세(안) 3년간 . 1년차: \$0.23/개 . 2년차: \$0.22/개 . 3년차: \$0.21/개
콘크리트 펌프 및 펌프차량 (Concrete pump and pump trucks)	8413.40.00 8705.90.30	반덤핑	'16.2.6	'17.7.12	기타	- '16.2.6: 한국 및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 조사개시 - '17.7.12: 반덤핑 최종판정 관보 30122(2017/18) . 기간:'17.7.12-'22.7.12 . 전진,에버다임: 5.10% 기타 : 11.63% CIF

타이어 (Pneumatic Tyres)	4011.10/20/70/80/90	세이프가드	'17.4.6	-	기타	- '17.4.6: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테레프탈산 (Terephthalic Acid)	2917.36	반덤핑	'17.2.23	-	화학	- '17.2.23: 반덤핑 조사개시
폴리에스터 단섬유 (Polyester synthetic staple)	5503.20	반덤핑	'99.3.4	'12.5.16	섬유	- '00.3.13: 최종판정 - '05.3.10: 반덤핑재조사 착수 - '06.9월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 '11.7.28: 연장심사 조사개시 - '12.5.16: 일몰재심 최종조사결과 한국산 전체 생산업체 CIF 6.2% ('17.5.16까지) *Utku비교 - 국내대상업체 : 새한, 대한화섬, 고합, 삼양사, 선경, 휴비스, SK Chemical - '17.5.12 일몰재심 조사개시 (관보30064)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3907.61	세이프가드	'11.3.11	'17.11.8	화학	- '11.8.22 최종판정 . 1년차 8%, 2년차 7.5%, 3년차 7% - '14.7.9 세이프가드 연장조사 개시 - '14.11.8 연장 결정 . 1년차('14.11.8-) 6.75%, 2년차('15.11.8-) 6.65%, 3년차('16.11.8-'17.11.7) 6.55% - 국내대상업체 : KP케미칼, TK케미칼, SK케미칼 - '17.11.8 연장 결정 관보30234 (2017/10972) . 1년차('17.11.8-) 6.40% 2년차('18.11.8-) 6.20% 3년차('19.11.8-'17.11.7) 6.00%

폴리카복실 레이트 (Polycarboxyl ates)	3824.40.00 3906.90.90	반덤핑	'17.11.28	-	화학	- '17.11.28 조사 개시 관보30254(커뮤니케 2017/30)
합성필라멘 트섬유*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5407	반덤핑 (우회덤핑)	'06.3.9	'06.6.2	섬유	- '06.3.9 '02년 반덤핑규제 합성필라멘트섬유 관련 우회덤핑 조사 개시 - '06.6.2 최종판정: 창운, 성안,위드텍스타일 등 기타로 재분류 40% 우회반덤핑관세부과 (이후 별도 우회반덤핑 건으로 원 반덤핑건과 병행, 일몰재심 및 규제 연장 적용 중)
합성필라멘 트섬유*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5407	반덤핑	'00.10.31	'02.2.13 '15.1.21 (일몰재심)	섬유	- '02.2.13: 확정공고 - '07.2.11: 반덤핑재심 연장관련 조사개시 - '08.8.1: 일몰재심 최종 판정 - '13.7.24: 일몰재심 조사 개시 - '15.1.21: 반덤핑관세 연장 결정, '20.1.21일 까지 우리 제품에 4.39% ~40%의 관세율 적용 - 국내대상업체: 대광, 동성,대흥,덕동,선문,현마, 승우,서광,성광,을화 등

* 주: 합성필라멘트섬유(HS5407)의 경우, 터키 정부가 반덤핑 건과 우회덤핑 건을 구분하여 2건으로 집계하고 있어 이에 따르기로 함.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콘크리트 펌프 및 펌프차량) 2017.7.12일 반덤핑 최종판정
 - 반덤핑 관세율 5.10~11.63%
 - ' 17.7.12~'22.7.12간 적용
- (칫솔) 2017년 10월 17일, 세이프가드 최종 판정
 - 2017.4.22.일 조사 개시한 칫솔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 최종판정 결과 (관보 30168호 ' 17.8.28 공표, 커뮤니케 2017/10호)가 현재 각의에 상정, 승인 대기 중
 - 각의 승인이 날 경우, 모든 국가에 대해 발효일(미정)로 부터 1년차 \$0.23/개, 2년차 \$0.22/개, 3년차 \$0.21/개 적용 예정
- (DOP·DOTP) 2017년 10월 20일, 반덤핑 최종판정
 - 디옥틸프탈레이트(DOP)의 반덤핑 조사는 2016.7.21일 개시,
디옥틸테레프탈레이트(DOTP)의 반덤핑 조사는 2016.11.23일 개시
 - 2건의 반덤핑 2017.10.20일 최종판정 결과를 관보 30216호의 커뮤니케 2017/23호 (DOP) 및 2017/24호(DOTP)로 공표(DOP, DOTP의 반덤핑관세율, 규제기간 동일)
 - 반덤핑 관세율 7.99~12.57%
 - 2022년 10월 20일까지 5년간 규제 적용
- (폴리카복실레이트) 2018년 11월 28일 반덤핑 조사개시
 - 콘크리트 첨가제 폴리카복실레이트(HS 3824.40.00/3906.90.90)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관보 30254호(2017.11.28) 공표
 - 시장지배적인 한국산 수입제품이 터키 내 생산단가를 압박한다는 이유로 터키 생산업체가 제기한 데 따른 조사 개시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터키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 156건(135건 규제 중, 21건 조사 중), 상계관세 1건(1건 규제 중), 세이프가드 4건(2건 규제 중, 2건 조사 중)
 - 규제품목 : 섬유(48건), 철강금속(34건), 화학(28건), 전기전자(17건), 기타(32건)
(* 반덤핑 규제 중 156건, 159개 품목)
 - 대상국가 : 중국(59건), 대만(12건), 말레이시아(11건), 베트남(11건), 인도네시아(10건), 인도, 태국, (각 9건) 등의 순임. (* 반덤핑 규제중인 건 기준)
- * 자료원 : WTO 수입규제현황 사이트(<http://i-tip.wto.org/>)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터키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다수 발동하고 있음
 - 경쟁력이 부족한 터키 제조업체가 터키 정부에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하는 사례 빈발하고 있음
 - 2016년 하반기 중 테레프탈산(HS2917.36)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규제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동일 품목에 대해 2017년 2월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음. 무수프탈산(HS 2917.35)에 대해 '17년 3월 반덤핑 최종판정이 내려졌고, 한국산 디옥틸프탈레이트(DOP, HS 2917.32) 및 디옥틸테레프탈레이트(DOTP, HS 2917.39)에 대해서는 '16년 하반기 각기 반덤핑 조사 개시 후 2017년 10월에 2건 공히 7.99~12.57%의 반덤핑 관세부과로 최종 판정됨. 한국산 수입비중이 큰 화학제품 수입에 대해 수입규제를 통해 보호받으려는 터키 생산업체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 (수입감시제도) 수입가격 감시 대상 수입품에 대한 수입허가 방식 비관세장벽
 - 수입가격 감시대상 품목에 최저단위가격을 공표하고 일종의 수입허가(Surveillance certificate) 발급 방식으로 관리하는 비관세장벽임. 최저 단위가격(단위세관가격) 기준으로 관세, 부가세가 부과됨

-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와 연계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중복적으로 부과되기도 하며 발생 빈도가 높은 편임
- 2016년 상반기 중 세이프가드 기간 만료된 품목들의 경우 수입감시제도로 대체된 사례가 있음
 - 여행도구, 핸드백 등(4202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16.4.7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서 이를 수입감시제도로 대체, \$7~21/kg(총중량)의 최저가격을 적용
 - 안경테(HS 9003.11/19)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규제가 '16.3.4일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수입감시제도로 \$6/p.st의 최저가격 적용
- 반덤핑 규제 만료 후 도입된 수입감시제 사례
 -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2016.6.2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장가격 관리를 위해 '16.6.11일부로 전 세계 대상으로 승용차용 타이어 1개 품목(터키 세번 HS 4011.10.00.90.12), 버스 및 화물차용 타이어 1개(터키 세번 HS 4011.20.10.00.19) 등 2개 품목에 대해 US\$5/kg의 최저가격(단위세관가격) 부과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한국의 주요 對터키 수출품은 대부분 터키 산업용 원재료, 부품, 장비 공급이 많아 수입량 급증이 터키의 수입규제 조치를 유발하는 무역구조는 아님
- 그러나, 소수의 공급국가가 터키 수입시장을 석권하는 형태의 수입시장 구조는 곧바로 터키 국내산업의 수입규제 요구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점에 주의
- 한국산이 높은 품질과 FTA 협정 하에서 유리해진 가격 조건으로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주의 필요
-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사 건은 2018년 1월초에 무혐의 종료 판정 예상
- 칫솔 세이프가드 조사 건은 2017년 8월중 최종판정이 내려진 건으로 12월말 현재 각의의 승인 대기 중으로 있으며, 2018년 1~2월중 발효될 가능성이 높음

22. 튀니지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튀니지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2건으로, 2건 모두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기타(세라믹 타일, 유리병) 2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세라믹 타일 (Ceramic Tiles)	6907.10/90, 6908.10/90	세이프가드	'15.7.14	-	기타	- 제조자 : Carthago Ceramic 등
유리병 (Glass Bottles)	7010.90	세이프가드	'14.10.15	-	기타	- 제조자 : Societe Tunisienne de Verrerie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세라믹 타일)(유리병) 자국 산업피해 여부 조사 완료
 - 튀니지 Carthago Ceramic 등 다수 기업들의 제소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동 제품 수입 건에 대해 자국 산업 피해 여부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튀니지 대외거래위원회(Tunisian council for foreign commerce)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음
 - * 상기 2품목은 튀니지의 주요 수출 및 생산품목이나 우리나라의 對튀니지 수출은 거의 없는 편이므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없음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19일 기준 튀니지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 상기 세이프가드 조사 건 외 없음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무역적자 감소 추세에 따라 약 97%의 품목이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입이 가능할 정도로 수입금지 품목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다음과 같은 품목은 여전히 정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HS CODE	PRODUCT
160414	Canned tuna
1806	Chocolate and preparation containing cocoa
1901	Food preparation of meal, gruel, flour, starch or malt extracts without coca or containing cocoa less the 40% of the weight
1905	Products of bakery or pastry.
2005 & 2006	Food preparation of vegetables
2007 & 2008	Jam, jelly, puree and fruits preparation
2009	Fruit or vegetable juice
2103	Preparations for sauces or prepared sauces, mixed condiments and seasonings mustard flour and meal and prepared mustard composés; farine de moutarde et moutarde préparée
2105	Ice cream
2106	Food preparation not elsewhere specified
2202	Waters including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3303 & 3307	Fragrances, make-up products, toilettries, hair coloration products, preparation for oral or dental hygiene, pre-shave shaving or after-shave preparations, deodorizing body spray.
3401 & 3402	Soap, Washing preparations and cleaning preparations
4411	Medium density fibreboard
4418	Doors and their frames
4810 except 48102200912 48102200105 48102980102 48102200990 48103290903 48103290107	Cardboard
6109 6110	Shirts, T-shirts, lightweight fine knit roll, polo or turtlenecked jumpers Men ' sorboys ' suits, ensembles, jackets, blazers, trousers,

HS CODE	PRODUCT
6203 6204 6205	bib and brace overalls, breeches and shorts (other than swimwear) Men's or boys' shirts.
6401 & 6405	Shoes
69079020014	Ceramic tiles
6908	
6910	Ceramic sanitary ware
701090 7013	Carboys, bottles, flasks, jars, pots, phials, ampoules and other containers, of glass, of a kind used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preserving jars of glass; stoppers, lids and other closures, of glass. Glass objects for table service and kitchen
76042910902 76041090005 76041010105 76042990006	Aluminium profiles
83013000 83014011 83014019	Steel locks used on furniture Cylinder locks used on doors for buildings Other cylinder locks used on doors for buildings
83021000 02491644 83024200	Hinges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Manufacture in which all the materials used suitable for building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And Parts Thereof, Suitable For Furniture, Of Base Metal
8419110	Water heater
8509	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Parts
8544499; 8544460; 8544429	Electric cables
8517	Electrical Apparatus for Line Telephony Or Line Telegraphy, Including Such Apparatus For Carrier-Current Or Digital Line Systems; Parts
870120 8702 8704	Road tractors for Semi-Trailers Motor Vehicles for transport Of Ten Or More Persons, Including The Driver Motor Vehicles for Transport Of Goods
9503 9504	Toys, Scale Models Etc.; Puzzles; Parts And Accessories Articles for funfair, table or parlour games
9608 9609 9610 9611	Ball Point Pens; Soft Tipped Pens and Markers Pencils (With Encased Lead), Crayons, Pencil Leads, Pastels, Drawing Charcoals, Writing or Drawing Chalks And Tailors' Chalks Slates and Boards, With Writing Or Drawing Surfaces Date, Sealing Or Numbering Stamps, Etc.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특별히 예상되는 對韓 수입규제 품목 없음

23. 파키스탄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파키스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5건으로, 모두 반덤핑 조치이며 이 중 2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화학 4건, 기타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2847.0000	반덤핑	'09.8.31	'10.9.27	화학	- 반덤핑관세: 한국 0~14.77% (한솔,OCI 부과 제외)
백판지 (Coated Duplex Board-Grey Back)	4810.9200, 4810.9900	반덤핑	'16.1.30	'17.7.31	기타	- '16.1.30 : 반덤핑 조사 개시 - '17.5.12 : 예비판정 . 한국 : 14.98% - '17.7.31 : 최종판정 . 한국 :14.98%, 중18.57% 인도네시아 :16.22%
술폰산 (Sulphonic Acid)	3402.11	반덤핑	'16.11.28	-	화학	- '16.11.28 : 반덤핑 조사개시 - '17.5.25 : 예비판정 . 한국 : 31.26%
포름산 (Formic Acid 85%)	2915.1100	반덤핑	'11.2.23	'12.2.10	화학	- 반덤핑관세: 한국 44.1%
폴리염화비닐 (PVC; Polyvinyl chloride))	3904.10	반덤핑	'16.11.29	-	화학	- '16.11.29 : 반덤핑 조사 개시 - '17.6.13 : 예비판정 . 한국 : 11.18%

* 자료원 :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국가관세위원회)

*, ** : 일몰 재심 및 수입규제 종료 여부 확인 요청 → 국가관세위원회 확인 결과 변동 없음으로 확인됨.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오프셋인쇄 잉크) 2017년 7월 21일, 반덤핑 조사종료(HS 3215.1110/90, 3215.1910/90)
 - 조사 결과 수입산 오프셋인쇄 잉크(Offset Printing Ink)로 인한 파키스탄 제조업계의 피해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반덤핑 규제 미부과로 조사가 종료됨
- (백판지) 2017년 7월 29일, 반덤핑 최종판정
 - 동 품목도 마찬가지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17년 5월 반덤핑 예비판정이 부과됨. 대상 국가는 한국(14.98%), 중국(15.12%), 인도네시아(12.87%)이며 역시 6개월간 적용 예정임
 - 2017년 7월 29일 최종 판정에 따라 반덤핑 규제가 부과됨. 대상 국가는 한국(14.98%), 중국(18.57%), 인도네시아(16.22%)임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파키스탄은 18개국 6개 품목에 대해 25건의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이며 20건은 조사 진행 중임
 - 규제형태 : 반덤핑 45건(25건 규제 중, 20건 조사 중)
 - 대상국가 : 중국(17건), 한국(5건), 인도네시아(4건), 태국/대만(각 3건), 인도(2건), 방글라데시/벨기에/말레이시아/오만/사우디아라비아/터키/우크라이나/UAE/이란/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각 1건) 순임
 - 규제품목 : 화학(22건), 기타(12건), 철강(7건), 섬유(4건) 순임
- * 자료원 :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국가관세위원회)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반덤핑 위주의 규제 동향
 - 현재 파키스탄의 對韓 수입규제는 모두 반덤핑 형태로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는 없으며, 기술규제(TBT), 환경규제(녹색규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 없는 상황임

-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도 파키스탄은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 2016년 인도산 면사(cotton yarn)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2017년 4월에 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종료함
- 자국 업체의 수입규제 제기를 폭넓게 인정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ational Tariff Commission)에 따르면 정부는 현지 제조업자가 제기한 수입규제 요청을 가능한 인정하려는 입장
 - 반덤핑 조사절차에 따라 생산, 판매 하락, 재고, 고용, 이윤, 시장점유율 등의 지표와 관련 자국 산업의 손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평가함
- FTA를 활용한 수출확대 추진
 -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 기존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 중임
 - 기존에 진행 중인 터키, 태국과의 FTA 협상은 마무리 단계이며 파키스탄은 2018년 상반기 중 타결을 목표로 설정함
 - 한-파키스탄 FTA
 - . 2015년 7월 제1차 한-파키스탄 무역투자공동위원회 개최(대한민국 서울)
 - . 2017년 4월 제2차 한-파키스탄 무역투자공동위원회 개최(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 . 양국 FTA 민간 공동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파키스탄 측에서는 이르면 2018년 중 양국간 FTA 협상개시를 희망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폴리에스터 장섬유사) 과거에 반덤핑 규제 이력이 있는 품목(2013년 8월 규제 종료)으로 향후 반덤핑 조사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엇보임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2017년 8월 중국산(3.25~11.35%), 말레이시아산(6.36%) 폴리에스터 장섬유사(Polyester Filament Yarn, HS 5402.3300/5402.4300)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됨
 - 파키스탄 규제당국은 향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도 검토대상에 둘 것으로 예상됨

24. 필리핀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7년 12월 31일 기준 필리핀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3건으로, 3건 모두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1건, 기타 2건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신문인쇄용지 (Newsprint)	4801.00	세이프가드	'13.9.20	'15.5.11	기타	- '13.9.20 : 조사개시 - '15.5.11 : 세이프가드 · 1년차 : P980/톤 · 2년차 : P800/톤 · 3년차 : P640/톤
철강제 각봉 (Steel angle bars)	7216.21 7216.50	세이프가드	'09.2.19	'09.7.29	철강 및 금속	- '09.7.29 규제시작 - '12.3.10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3년 연장 결정 · 1년차 : P3,901.09 · 2년차 : P3,706.03 · 3년차 : P3,520.73 - '15.8.21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4년 연장 · 1년차 : P3,345 · 2년차 : P3,178 · 3년차 : P3,019 · 4년차 : P2,868
판지 (Testliner Board)	4805.24/25	세이프가드	'10.6.08	'11.8.11	기타	- '11.8.11 규제시작 - '13.11.29 :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3년 연장 · 1년차 : P1,150.60/MT · 2년차 : P1,093.07/MT · 3년차 : P1,038.42/MT - '16.09.29 :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4년 연장 결정 · 1년차 : P986.50/MT · 2년차 : P937.17/MT · 3년차 : P890.31/MT · 4년차 : P845.80/MT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없음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기준 필리핀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1건 규제 중, 1건 조사완료-실행 전), 세이프가드(3건 규제 중)
 - 대상국가 : 중국(1건), 터키(1건)
 - 규제품목 : 맑은 플로트 유리 및 브론즈 플로트 유리(HS CODE 700529, 중국) 1건, 밀가루(HS CODE 1100100, 터키) 1건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시장 개방 정책을 추구하나 자국의 취약 산업/분야는 보호 기조 유지
 - 필리핀은 2015년 12월 ASEAN 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경제통합 노력은 물론, EU,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무역협정 가입 추진 등 전반적으로는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한 탓에 제조업 분야나 쌀, 옥수수 등 기본 식품분야 등의 산업은 민감 품목/분야로 선정, 수입규제 혹은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통해 자국산 제품을 보호하고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제품(Steel)
 - 필리핀 무역산업부(DTI,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2017년 6월, 필리핀에 수입되는 철강제품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철강제품 품질관련 인증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
 - 철강제품 수입 시 제출해야하는 샘플 크기와 규격을 강화하고, 인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품에 일련번호, 지름, 길이, 제조사, 수입업자 등에 관한 정보가 표기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지침 개정 초안이 공개되었으며 아직까지는 의견수렴 중

- 필리핀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성 및 철강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필리핀 내 철강 산업 보호를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필리핀 정부가 지속적으로 철강제품 수입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필리핀 철강시장 진출 시 철강제품 품질 유지 및 보수와 인증기준 강화에 유의해야함

25. 호주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호주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8건으로, 모두 반덤핑 조치이며 이 중 2건은 조사 진행 중(반덤핑 1건, 반우회덤핑 1건)임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7건, 기타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선재 (Steel Rod in Coils)	7213.91.00 7227.90.90	반덤핑	'17.6.7	-	철강 및 금속	- '17.6.7 반덤핑 조사개시 :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부터 호주로 수입되는 선재 가격이 기존 시장가 보다 저렴해 호주 내 관련 산업 및 기업들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 반덤핑 조사를 신청
아연도금 강판 (Zinc coated (galvanised) steel)	7210.49 7212.30	반덤핑	'12.9.5	'13.8.5	철강 및 금속	- '13.8.5 최종 판정 : 동부제강 3.2%, 포스코 9.1%, 기타 28.5%, 유니온스틸 2% - '15.06.11 HS 7212.30 품목 면제 조사개시 - '15.11.17 반덤핑 관세 일부 면제(HS 7210.49, 7212.30 중 일부품목) - '16.12.7 동부제강 관련 반덤핑 재심 개시 - '17.5.4 면제조사 개시 통보 - '17.11.13 재조사 개시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3.8.5~'18.8.5

아연도금 강판 (Aluminium Zinc Coated Steel)	7210.61	반덤핑	'12.9.5	'13.8.5	철강 및 금속	- '13.8.5 최종 판정 : 동부제강 5.8%, 유니온스틸 2% - '14.10.28 재검토 개시 - '15.5.21 알루미늄도금 강판 (HS 7210.61)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 - '16.12.7 동부제강 관련 반덤핑 재심 개시 - '17.5.4 면제조사 개시 통보 - '17.11.13 재조사 개시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3.8.5~18.8.5
열연철강 구조물류 (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s)	7216.31/32/33/40/50 7228.70	반덤핑	'13.10.24	'14.11.20	철강 및 금속	- '14.3.14 반덤핑 예비판정 및 잠정관세 부과 : 현대제철 2.2%, 기타 5.3% - '14.11.20 최종판정 . 덤핑마진 : 현대제철 2.52%, 기타 3.24%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4.11.20~19.11.20
철강재 파이프 (Hollow Structural Sections)	7306.30 7306.61 7306.69	반덤핑	'11.9.19	'12.7.3	철강 및 금속	- '12.7.3 최종판정 : 국제강재 3.2%, 기타 8.9% - '15.5.15 국제강재 반덤핑 면제 판정(-6.7% 덤핑마진 적용, 실질적용 반덤핑 관세 0%) - '15.7. HS 7306.30 제품 대상 반덤핑 면제 조사 개시 - '16.2.19 HS 7306.61 제품 대상 반덤핑 면제조사 개시 - '16.3.19 기준 국제강재에 3.2%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는 2017년 7월 2일까지 지속될 예정 - '16.10.31 반덤핑 조사 기간 연장 결정 - '17.6.21 반덤핑 면제조사 결과 통보(국제강재 -1.9%, 기타 -1.9%, '17.7.2부터 적용)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2.7.3~22.7.3

철근 (Steel Reinforcing Bar)	7213.10.00 7214.20.00 7227.90.10/90 7228.30.10/90 7228.61.10	반덤핑	'14.10.17	'15.11.19	철강 및 금속	- '14.10.17 반덤핑 조사개시 - '15.9.4 덤핑 예비판정 (한국 9.7~14.3%/스페인 8.2%/싱가포르 6.6%/대만 4.7~8.9%) - '15.11.19 최종판정 · 덤핑마진 : 대한제강 9.7%, 기타 14.3% - '16.8.12 반덤핑 항목 추가 (HS 7228.30.10, 7228.60.10)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5.11.19~'20.11.19
철근 (Steel Reinforcing BAR)	7214.20 7228.30.90 7213.10.00 7227.90.10 7227.90.90 7228.30.10 7228.60.10	반덤핑	'17.11.21	-	철강 및 금속	- '17.11.21 반우회덤핑 조사 개시 : 대한제강이 반덤핑 관세 회피를 위해 우회수출을 하고 있다고 반우회덤핑 조사 신청
풍력타워 (Wind Tower)	7308.20/90 8502.31.10	반덤핑	'13.8.28	'14.4.16	기타	- '14.4.16 반덤핑 최종판정 및 관세 부과 : Win&P 17.2%, 기타 18.8% - '17.10.20 HS code 7308.90 제품에 대한 반덤핑 종료 재심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4.4.16~'19.4.16

후판 (Hot rolled plate steel)	7208.40/51/52 7225.40	반덤핑	'13.2.12	'13.12.19	철강 및 금속	- '13.12.19 최종판정 : 동국제강 18.4%, 기타 20.6% (현대제철, POSCO 제외) - '15.3.31 현대제철 및 POSCO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15.11.25 POSCO, 현대제철 미소마진으로 무혐의 판정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3.12.19~'18.12.19
-----------------------------------	--------------------------	-----	----------	-----------	------------	--

* 자료원: 호주 반덤핑 조사 위원회, 한국 무역협회

* 아연도금강판, 알루미늄 도금강판은 무역협회 기준으로 1건으로 계산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철근) 2017년 11월 21일, 반우회덤핑 조사개시
 - 제소기업 : OneSteel Manufacturing Pty Ltd사
 - 대한제강이 반덤핑관세('15.11.19 결정) 회피를 위해 우회 수출을 하고 있음을 이유로 반우회덤핑 조사 신청
- (후판) 2017년 12월 19일, 반덤핑 종료일 명시
 - 2018년 2월 17일까지 추가 제소 없을 시, 2018년 12월 20일 부로 반덤핑 종료
- (열연코일) 2017년 12월 20일, 반덤핑 종료
 - 2017년 12월 20일 부 열연코일(Hot Rolled Coil steel)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시한 만료로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의 호주 수출 반덤핑 관세가 종료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12월 31일 WTO 기준 호주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 80건 (65건 규제 중, 15건 조사 중), 상계관세 9건 (8건 규제 중, 1건 조사 중)
 - 대상국가(규제 중) : 중국(15건), 한국, 대만(각 8건), 태국(7건),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4건), 필리핀(3건) 등
 - 규제품목(규제 중) : 철근(8건), 아연도금강판(6건), 구조물용 철강파이프(5건), 열연코일(4건), 열연철강구조물류(4건), 후판(4건), A4용지(4건), 투명 플로트유리(3건) 등
- 세계적 철강 공급 과잉에 따른 호주 철강 업체들의 경영 고충으로 중국, 한국 등 주요 철강 수출 국가에 대한 반덤핑 및 우회덤핑 제소가 빈번한 상황
 - 호주 내 철강 제조 기업 2개사 중 BlueScope Steel은 강력한 구조 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 중이며, Arrium은 2017년 9월 영국 GFG Alliance에 최종 매각됨
 - 호주 철강회사의 고비용 구조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입시장장벽을 높이기 위한 덤핑조사를 진행하며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특히 한국산 후판 제품은 마이너스 마진율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종료 재심 SEF(Statement of Essential Facts) 판정 결과가 우리 기업에 불합리하게 규제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
- ‘특수 시장 상황’이라는 명목 하에 반덤핑 관세 부과하는 품목 증가할 것 예상
 -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자유무역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017년 4월 호주로 수입되는 인도네시아 산 A4용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0% → 12.6% ~ 45.1%)
 - 이는 호주의 ‘특수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과 인도네시아 생산자들이 실제로 펄프를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무시하고 호주 내 유통되는 가격을 벤치 마크해 덤핑된 가격으로 수출하였기 때문이라 밝힘

- 동 조치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항소 하였으며 WTO 역시 해당 조사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고 이러한 조치가 WTO 규범과 양립 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수 시장 상황’의 이유로 해당 반덤핑 조치는 지속되고 있음
- 호주가 반덤핑 조사에서 ‘특수 시장 상황’ 수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 WTO 회원국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호주 당국과의 면담을 통해 덤핑관세 부과에 해당 수단을 적용하기 시작함. 이러한 조치는 소비재와 같이 시장 유동성이 높은 품목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
- 기술규제(TBT) 및 정부조달 시장 등에서 명시적 차별조치는 미미
 - 호주는 연방 정부조달 시장 및 주정부 조달 시장에서 해외업체와의 구분을 따로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열린 시장을 추구 하고 있으나, 조달 관련 단순 소모품이 아닌 품목(IT, 건설, 의료 등)에서 현지 업체와의 파트너 유무 및 역량이 실제 낙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해외 업체의 독립 진출에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중심으로 다자 및 양자간 FTA 적극 추진
 -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태평양지역경제협력협정(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ACER Plus)은 역내 무역 촉진 및 활성화, 노동인력의 원활한 교류와 관련된 협상으로 2009년 8월에 시작되어 2017년 6월 14일 서명 완료됨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역내 무역 자유화를 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협상이 2017년 10월 한국에서 진행되었으며 이후 협력 국가들 2018년 내 체결 가능하도록 추진 전망
 - 2017년 호주는 태평양동맹 FTA(6월 30일), 페루-호주 FTA(5월 24일), 호주-홍콩 FTA(5월 16일) 등 3개의 신규 무역협정협상을 개시, 보다 폭 넓은 자유무역협정 추진

○ 미국 떠난 TPP 협정 미래 불확실

- 현 집권당, 국내 경제에 긍정적 영향 줄 수 있는 TPP 시행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야당 및 현지 여론 실질적 TPP 소생 가능성 희박함 지적
- TPP 비준 및 대응 과정에 대한 호주 내부적 비판의 목소리 높아, RCEP 등 새로운 무역협정 적극 추진 전망

○ 2018년 주요 정상회담 일정

- 2018년 3월 아세안-호주 특별 정상회담 시드니서 개최,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호주의 실질적 경제성장, 안보강화 방안 등 모색
- 2018년 11월 APEC 정상회담 파푸아뉴기니서 개최, 포용적 기회 창조, 디지털 미래의 수용 등 디지털 경제의 효과적 포용 증진 방안 모색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금속) 호주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반덤핑 규제 강화 전망

- 호주 철강 제조 기업 BlueScope Steel의 생산량만으로는 내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동남아시아 산 철강 수입은 지속 될 것으로 기대되나, 호주 정부의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제품 대한 반덤핑 규제는 지속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2018년 상반기에도 철강, 철판, 강관, 코일, 도금, 비철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추가제소 및 기 반덤핑 품목에 대한 연장요청 움직임이 예상됨.

26. EU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EU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5건으로, 5건 모두 반덤핑 규제 시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3건, 화학 1건, 기타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경량감열지 (Lightweight thermal paper)	48119000, 48169000, 48099000, 48239085	반덤핑	'16.2.18	'17.5.3	기타	- '16.2.18 조사개시 - 조사 대상기간: '15.1.1.~12.31. - '16.11.17 예비판정 : 11.18부터 6개월간 12.1%의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 '17.5.3: 반덤핑 최종판정 * 확정 덤핑마진: 10.3% * 반덤핑 관세: 104.46유로/톤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GOES)	722511, 722611	반덤핑	'14.8.14	'15.10.30	철강 및 금속	- '14.8.14 조사개시 - '15.5.12 6개월간 잠정 반덤핑 판정(잠정관세 22.8%) - '15.10.30 최종판정(확정 반덤핑 관세 22.5%)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실리콘 메탈 (Silicon metal)	280469	반덤핑 (우회덤핑)	'06.4.20	'10.5.20	화학	- '06.4.20 중국산 우회수출에 대한 조사개시 - '07.1.19 우회덤핑 최종판정(확정관세 49%) - '10.5.20 일몰재심 최종 지속판정(확정 관세 유지)
철강로프 및 케이블 (Steel ropes and cables)	731210	반덤핑 (우회덤핑)	'09.8.12	'12.2.9	철강 및 금속	- '09.8.12 조사개시 - '10.5.11 반덤핑 판정: 중국산 한국 우회덤핑에 대해 반덤핑 관세 60.4% 부과(조사 협력 한국 업체 우회덤핑 관세 부과 면제) - '11.9.30 신규수출자 재심 및 '12.6.26 해당없음 판정(Seil Wire) - '12.2.9 반덤핑 조치 종료재심 결과, 반덤핑 조치 유지 결정(우회덤핑 반덤핑 조치 역시 유지) - '13.8.27 신규수출자 재심, 중간재심 및 '14.5.12 해당없음 판정 (Good wire, Line metal) - '15.11.26 신규수출자 재심조사 및 '16.7.19 해당없음 판정 (Daechang Steel Co. Ltd.)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철강제 관연결구류 (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730793, 730799	반덤핑	'01.06.01	'14.12.03	철강 및 금속	- '01.6.1 반덤핑 조사개시 - '02.8.24 최종 판정(한국산 확정 관세율 44%) - '07.8.13 일몰재심 조사개시 - '08.10.13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결정 - '13.10.15 일몰재심 개시 - '14.12.3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결정('18.1.29까지) - '15.2.18 TK Corporation 사에 대해 부분(partial) 중간재심 개시 - '16.3.4 TK Corporation 사의 반덤핑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 32.4%의 예외관세 적용. 그 외 한국산 제품은 모두 기존 관세율 (44%) 유지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17년 상반기 대비 대한 수입규제 변동 내역 없음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EU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2017년 12월 31일 기준)
 - 규제형태 : 총 99건의 반덤핑 규제와 13건의 상계관세 조치가 시행 중.
 - 대상국가 및 품목 : 중국(94건), 인도(10건), 러시아(9건), 미국(6건), 한국(5건), 인도네시아(4건), 대만(2건), 말레이시아(2건), 터키(2건) 등이며, 총 80개 품목이 규제 중
- 2017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EU의 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총 36건으로 반덤핑 신규조사(New investigation) 7건, 반덤핑 재개조사(Reopenings) 2건, 상계관세 신규조사(Anti-subsidy investigations) 1건, 종료재심(Expiry review) 8건, 중간재심조사(Interim review) 10건, 신규수출자조사(New exporter review) 6건, 반우회덤핑(anti-circumvention) 2건이 해당

〈2017년 이후 조사 개시된 EU 수입규제 현황〉

규제 유형	품목 명	국명(관보)
반덤핑(신규)	저탄소 페로크롬 (Low carbon ferro-chrome)	중국, 러시아, 터키(C 200)
반덤핑(신규)	페로 실리콘 (Ferro-silicon)	이집트, 우크라이나(C 251)
반덤핑(신규)	버스/화물차용 신품 및 재생 타이어 (New and retreaded tyres for buses or lorries)	중국(C 264)
반덤핑(신규)	전기자전거 (Electric bicycles)	중국(C 353)
반덤핑(재개)	주석산 (Tartaric acid)	중국(C 296)
반덤핑(재개)	스테인리스스틸 와이어 (Stainless steel wires)	인도(C 334)
상계관세(신규)	버스/화물차용 신품 및 재생 타이어 (New and retreaded tyres for buses or lorries)	중국(C 346)
종료재심	철강 로프와 케이블 (Steel ropes and cables)	중국(C 41)
종료재심	옥살산 (oxalic acid)	중국, 인도(C 117)
종료재심	주석산 (Tartaric acid)	중국(C 122)
종료재심	무게목 강관 (Seamless pipes and tubes of iron or steel)	러시아, 우크라이나(C 214)
종료재심	파일용 아치모양 레버 (Lever arch mechanisms)	중국(C 290)
종료재심	알루미늄 라디에이터 (Aluminum Radiators)	중국(C 377)
중간 재심	태양전지판 (Solar Panels :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modules and key components)	중국(C 67) AD, AS
중간 재심	세라믹 식기 및 주방용품 (Ceramic tableware and kitchenware)	중국(C 117)
중간 재심	나사산 튜브, 파이프 (Threaded tube or pipe cast fittings, of malleable cast iron)	중국, 태국(C 162)
중간 재심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인도(C 216) p.26, p.30
중간 재심	무지개송어 (Rainbow trout)	터키(C 234)
중간 재심	질산 암모늄	러시아(C 271)

규제 유형	품목 명	국명(관보)
	(Ammonium nitrate)	p.9, p.15
신규 수출자조사 (반덤핑)	태양전지판 (Solar Panels :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modules and key components)	말레이시아(L 36)
신규 수출자조사 (반덤핑)	자전거 (Bicycles)	튀니지(L 116)
신규 수출자조사 (반덤핑)	유리섬유 메시 패브릭 (Open mesh fabrics of glass fibres)	인도(L 226)
신규 수출자조사 (반덤핑)	태양전지판 (Solar Panels :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modules and key components)	중국(L 288)
신규 수출자조사 (상계관세)	태양전지판 (Solar Panels :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modules and key components)	말레이시아(L 36)
신규 수출자조사 (상계관세)	태양전지판 (Solar Panels :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modules and key components)	중국(L 288)
반우회덤핑	무계목 강관 (Seamless pipes and tubes of iron or steel)	중국(L 40)
반우회덤핑	핸드팔렛 트럭 및 부품 (Hand pallet trucks and tress. parts)	베트남(L 188)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FTA 활용 극대화) EU는 기존 체결국과의 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역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꾀할 것으로 전망
 - 2017.09.13 집행위 발표 EU 신통상투자전략 이행보고서(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de Policy Strategy Trade for All)에 따르면, EU는 현재 FTA를 통해 총 수출의 40%를 수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집행위는 EU 전체 수출의 30%를 점유하는 중소기업의 FTA 수혜확대를 위해 협상문에 중소기업 관련 조항을 삽입할 예정이며, 시장접근 데이터베이스(Market Access Database; MADB)에 FTA 관련 최신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
 - 이 밖에도, 국제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sation)와 협력해 현 관세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FTA 체결국별 사후평가를 시행할 예정
- (FTA 추진 지속) 신 성장동력인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 신규 국가들과의 무역협상을 지속해 나갈 것
 - EU는 당초 목표대로 일본과의 EPA 협상을 2017년 연내 최종 합의했으며 ('17.12.08) 2018년 중 정식 서명을 완료할 예정임. 또한, 현재 비준 진행 중인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 FTA 역시 마무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 밖에도,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멕시코와 칠레와의 협상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 2018년 EU는 라틴아메리카와 더불어 아세안 국가들과의 개별협상 역시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사회·환경적 요인 반영) 지속가능개발, 환경 및 노동 분야 내 반부패, 성평등, 기후변화 등 사회 및 환경적 요인들을 통상분야에 적극 반영할 예정
 - EU는 일본과의 EPA에 최초로 환경분야에 파리기후변화 협약 관련 조항을 삽입한 바 있으며, 2017년 5월 분쟁국가로부터 생산된 광물 및 금속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함
 - * 관련 규정 :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No. 2017/821, 적용일 : 2021.01.01.
 - 이 외에도, 향후 고문, 처벌 등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를 위해 타 국가들과 협의할 예정

- (무역구제조치 강화) 2017.12.19, EU는 반덤핑 관련 개정 규정을 채택, 역외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
 - * 관련 규정 :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No. 2017/2621, 발효일 : 2017.12.20.
- 동 규정에서 EU는 기존 ‘시장경제국’과 ‘비시장 경제국’의 구분방식을 없애고 ‘시장왜곡’ 개념을 도입함. WTO 가입국 중 시장왜곡이 있다고 판정되는 국가의 경우, 덤핑 마진 산정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출국 내 판매가격이 아닌 벤치마크 가격을 기준으로 삼음
 - * 시장왜곡 예시 :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 차별적인 수출정책 이행 등
 - 조사대상국과 유사 경제수준을 가진 국가 내 생산 및 판매가격이 기준이 되며, 유사국이 여러 국인 경우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이 가장 비슷한 국가를 선정
 - * 한편, 벤치마크 가격 외에도 국제가격(또는 역내시장 가격) 역시 덤핑마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나 가격이 왜곡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한함
- 또한, EU는 국별/산업별 보고서를 발간해 해당 시장왜곡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하기로 하고 2017.12.19. 첫 번째 국별 보고서로 중국을 다룸
 - 동 보고서는 해당국 기관 발표자료 및 IMF, OECD 등 국제기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① 거시경제, ② 생산요소(토지, 에너지, 자본, 자재, 노동), ③ 산업현황(철강, 알루미늄, 화학, 세라믹) 등 크게 3개 분야가 다뤄짐
 - * 집행위는 전술된 중국 산업 시장이 정부개입으로 왜곡되었다는 결론을 도출
- 이 외에도, 상계관세 조사 관련, 현행제도에서는 상계관세 조사를 착수하고 조사도중 보조금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해왔음. 이번 개정규정에서는 반덤핑 등 여타 조사과정 중에서 관련 보조금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 상계관세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함
- 집행위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발표된 국별 보고서로 러시아를 지목 하는 등 EU 국별/산업별 보고서는 지속 발간될 것으로 분석됨. 이에, 향후 우리 수출 산업 관련 보고서 역시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 같은 EU 움직임을 주시하고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제품

- 역외산 철강제품의 시장 공급과잉에 따른 EU 시장감독 강화로 향후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17.12.19. 집행위가 발표한 중국 보고서에서 중국 철강산업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 밝히며 향후 관련 산업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 전함
- 이 밖에도, 현재 EU는 2020년까지 역외산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감시제도를 운영 중이며, 2013~2017년 EU에서 신규 조사한 반덤핑·상계관세를 살펴보면 총 62건 중, 철강품목에 대한 조사건수가 29건으로 절반 가량(46.7%)을 차지하고 있음

2013~2017년(11.30일까지) EU의 품목별 신규조사 착수 내역

(단위 : 건수)

Product sector	2013	2014	2015	2016	2017
Chemical and allied	1	2	6	1	3
Textiles and allied	3	-	-	-	-
Wood and paper	-	-	-	1	-
Electronics	-	-	-	-	-
Other mechanical engineering	-	-	-	-	-
Iron and Steel	1	9	6	13	-
Other metals	-	3	-	-	2
Other	4	2	2	-	3
	9	16	14	-	-
Of which anti-dumping	4	14	12	14	7
anti-subsidy	5	2	2	1	1

자료원 : EU 집행위

27. GCC(사우디아라비아)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 협력체

가.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18년 12월 31일 기준 GCC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4건으로, 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3건이며, 이 중 세이프가드 3건은 조사 진행 중임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2건, 전기전자 1건, 화학물질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도금강판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7210.70/90	세이프가드	'16.6.9	-	철강 및 금속	- '16.6.9 :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 '16.12.21: 예비조사 완료 - '17.7월 : 조사 결과 심의중 * 중국, 인도, 오스트리아 등 10개국 8개 수출업체가 조사 대상임
시멘트용 가공첨가제(Prep ared Additives for cements, mortats or concretes	3824.40.00	세이프가드	'17.9.20	-	화학	- '17.9.20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자동차 배터리 (Automotive batteries)	8507.1000	반덤핑	'15.12.31	'16.12.16	전기전자	- '15.12.31 : 반덤핑 조사개시 - '16.6.28 반덤핑 예비판정 * 세방전지 29%, 아트라스 비엑스 23%, 기타 95% 등 - '16.12.16 최종보고서 완료, GCC 상임위원회에 제출 - '16.12.31 : 최종 판정 - '17.4.23 반덤핑 관세 부과 * 동아타이어(25%), 아트라스비엑스(21%), 세방전지(19%), 현대성우(12%), 기타회사(25%) * '17.6.25일부터 향후 5년간 부과
페로실리코망간 (Ferro-silico manganese)	7202.3000	세이프가드	'16.10.3	-	철강 및 금속	- '16.10.3 :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 '16.10.17 : 잠정조치 부과 - '17.4월 : 예비판정 예정 *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관세율은 0%

□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자동차 배터리) 2017년 4월 23일,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확정

- GCC는 '15년 12월 31일에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 하였으며, 대상품목은 피스톤식 엔진시동용의 연산 축전지(Electric Lead-acid accumulators for starting piston engine) 중 35A~115Ah 용량을 가진 제품으로 HS Code는 8507.1000에 해당함
- '14년 7월 1일부터 '15년 6월 3일까지의 수출가격, 판매수량, 판매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GCC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 여부로 덤핑 과세를 판단,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16.6.28일 발표함
- '16.12.16일에는 GCC 조사국이 최종보고서를 완료하여 GCC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GCC 상임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 반덤핑 과세 여부, 세율, 기간 등을 최종판정할 예정임
- * 최종보고서는 세방전지, 아트라스비엑스, 현대성우, 동아타이어 4개사에 대해 10-23%의 반덤핑세율 제시

- 2017년 4월 23일 GCC는 한국 수출업체들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반덤핑 관세율은 '17.6.25일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예정임
 - * 동아타이어(25%), 아트라스비엑스(21%), 세방전지(19%), 현대성유(12%), 기타업체(25%)
- (페로실리코망간) 2017년 4월 예비판정
 - GCC는 '16년 10월 3일에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동 조사는 GCC(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6개국이 공동 조사 개시함
 - 10월 17일 200일간 CIF 기준 21%의 잠정조치를 부과하였음. 한국의 경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관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17년 4월 예비 판정하였음
- (도금강판) 2017년 7월 조사 결과 심의 중
 - GCC는 '16년 6월 9일에 도금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상품목은 바깥지름 16인치(406.4mm)가 넘지 않는 가스관과 송곳으로 이루어진 이음매 없는 파이프와 관이며, HS Code는 72107000/72109000에 해당
 - 2016년 12월 21일 예비조사를 완료한 후, 2017년 7월 중국, 인도, 오스트리아 등 10개국 8개 수출업체를 조사하며, 조사 결과 심의 중
- (가공첨가제) 2017년 9월 20일,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GCC는 2017년 9월, 화학 가소제로 알려져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첨가물 수입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HS Code는 38244000임
 - GCC 회원국으로 수입된 상품은 2012년부터 근 4년간 GCC 회원국 국내 생산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 상대적 수량에 있어 급속도로 증가
 - GCC 공통법안 제18조에 따라, 고소장에 명시된 내용 혹은 추가 의혹에 대해 관련 업체의 부지에 방문검사 실시 가능

나. 향후 통상.규제 전망

□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 2018년 1월 3일 기준 GCC의 對세계 수입규제 현황
 - 규제형태 : 반덤핑(1건 최종판정), 세이프가드(3건 조사 중)
 - 대상국가 및 규제품목 : 철강품목은 도금강판과 페로실리코망간, 화학물질은 시멘트용 가공첨가제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중이며,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으로 규제 시행 중임
 - * 철강품목(도금강판) 조사대상국 : 인도, 대만, 중국, 일본, 한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멕시코, EU 등 10개국
 - * 철강품목(도금강판) 조사대상 수출업체 : 중국(4개사), 인도(3개사), 오스트리아(1개사) 등 8개사

□ 통상정책 동향과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
 -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의 경제적 통합 및 영향력 확대 : 덤핑가격으로 판매되는 수입품이 GCC 회원국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최고통치자위원회(the Supreme Council)에서 2003년 12월 21~22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공통법안 채택하는 등 GCC 회원국 내에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는 중
 - 석유의존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다변화 및 제조업 육성 추진 : 3년간 지속된 저유가 장기화로 자가 생산력을 기르는 차원에서 VISION 2030 등을 실시.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제조업 제품의 수입을 지양하고 있음
- UAE 등 GCC 국가 2018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T) 도입 예정
 - GCC 회원국들은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재정 수입원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도입을 논의해 왔으며, 2015년 12월 GCC 대표단 회의를 통해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 VAT 세율은 5%, 도입 시기는 2018년 1월로 확정되었지만, 도입 및 시행 관련 세부사항은 여전히 조율단계이며, 도입 이후 시행까지는 1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사우디아라비아

- (철강제품, 알루미늄제품 및 석유화학 제품)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입규제 자체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최근 제조업 육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지 생산이 증가하는 철강제품, 알루미늄제품 및 석유화학 제품이 수입규제 가능성 높은 품목으로 예상
- 이러한 수입규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걸프협력회의(GCC)를 통해 시행될 것으로 전망

○ UAE

- (알루미늄, 석유화학제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가능성
 - UAE 제조업의 대부분은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한 정부 주도의 알루미늄과 금속성, 석유화학 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아부다비 정부는 저유가 등 최근의 추세에 맞게 변환한 5개년 개발계획인 ‘아부다비 비전 2030’을 통해 자국 산업 육성에 의한 경제개발 목표를 공표한 바 있음
- (항공, 해양, 알루미늄·금속조립, 제약·의료기기, 식음료, 산업기계 제품) 중점 육성 산업 관련 수입규제 가능성
 - 두바이 정부는 '16년 6월 ‘두바이 2030 산업 전략’을 발표하고 6개 중점 육성 산업 및 이들 제조업분야 가치사슬 확대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관련 산업분야 수입규제 가능성도 제기됨
- (식음료) 건강식품 및 베이커리 제품에 대한 인증 필요성 제기
 - 아부다비 정부는 '17년 1월 건강식 베이커리 및 유제품에 대한 신규 로고제도의 시범 운영을 예고한 바 있음

[첨부 1 국가별/규제유형별 현황표] ('17.12.31 기준)

국 가	반 덤 핑	세 이 프 가 드	반 덤 핑, 상 계 관 세, 상 계 관 세	계
남아공	1	2(1)	0	3(1)
대만	3	0	0	3
말레이시아	5(1)	2	0	7(1)
멕시코	4(2)	0	0	4(2)
미국	22(6)	2(2)	7	31(8)
베트남	1	4(1)	0	5(1)
브라질	11(1)	0	0	11(1)
아르헨티나	4(2)	0	0	4(2)
에콰도르	0	1	0	1
우크라이나	0	1	0	1
이집트	1	0	0	1
인도	26(1)	2	0	28(1)
인도네시아	4(1)	3	0	7(1)
일본	2(1)	0	0	2(1)
잠비아	0	1(1)	0	1(1)
중국	13(3)	1	0	14(3)
캐나다	10	0	0	10
코스타리카	0	1	0	1
콜롬비아	2	0	0	2
태국	7(1)	2	0	9(1)
터키	11(2)	4(1)	0	15(3)
튀니지	0	2(2)	0	2(2)
파키스탄	5(2)	0	0	5(2)
필리핀	0	3	0	3
호주	8(2)	0	0	8(2)
EU	5	0	0	5
GCC	1	3(3)	0	4(3)
총27개국	146(25)	34(11)	7	187(36)

주 : 괄호 안은 조사 진행 중인 건수

[첨부 2 국가별/품목별 현황표] ('17.12.31 기준)

국가	철강/금속	화학	섬유	전기전자	기타	계
남아공	2(1)	1	0	0	0	3(1)
대만	3	0	0	0	0	3
말레이시아	6(1)	1	0	0	0	7(1)
멕시코	2(1)	1(1)	1	0	0	4(2)
미국	20(2)	3(1)	3(2)	4(2)	1(1)	31(8)
베트남	3	2(1)	0	0	0	5(1)
브라질	3	3(1)	2	1	2	11(1)
아르헨티나	0	3(2)	0	1	0	4(2)
에콰도르	0	0	0	0	1	1
우크라이나	0	0	0	0	1	1
이집트	0	1	0	0	0	1
인도	7	17(1)	3	0	1	28(1)
인도네시아	4	2(1)	0	0	1	7(1)
일본	1(1)	1	0	0	0	2(1)
잠비아	1(1)	0	0	0	0	1(1)
중국	1	10(3)	1	1	1	14(3)
캐나다	9	0	0	1	0	10
코스타리카	0	0	0	0	1	1
콜롬비아	0	1	0	0	1	2
태국	9(1)	0	0	0	0	9(1)
터키	1	6(2)	4	0	4(1)	15(3)
튀니지	0	0	0	0	2(2)	2(2)
파키스탄	0	4(2)	0	0	1	5(2)
필리핀	1	0	0	0	2	3
호주	7(2)	0	0	0	1	8(2)
EU	3	1	0	0	1	5
GCC	2(2)	1(1)	0	1	0	4(3)
총27개국	85(12)	58(16)	14(2)	9(2)	21(4)	187(36)

주 : 괄호 안은 조사 진행 중인 건수

2018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8-001	유럽 의료기기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2018.1
18-002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8.1
18-003	유럽 소비재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18.1
18-004	한눈에 보는 수출유망국 (의료기기 ③편)	2018.1
18-005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2018.1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8-001	동남아 대양주 프랜차이즈 시장동향	2018.1
18-002	한눈에 보는 해외 25개국 취업정보	2018.1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8-001	2018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8.1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8-001	2017년 대중수출 성과와 2018년 전망	2018.1

☐ GIP (Global Issue Paper)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8-001	이란 핵합의 현황 점검과 우리기업 대응방안	2018.1

작 성 자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멕시코시티무역관	송준하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김주희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오유진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정미성
▪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
▪ 카라치무역관	이동훈
▪ 도쿄무역관	이세정
▪ 파나마무역관	김현진
▪ 리야드무역관	김현범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베이징무역관	김윤희
▪ 카이로무역관	김지혜
▪ 방콕무역관	김소선
▪ 마닐라무역관	추설희
▪ 이스탄불무역관	권오룡
▪ 보고타무역관	서지민
▪ 하노이무역관	임현진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키토무역관	정지웅
▪ 알제무역관	조기창
▪ 키예프무역관	박대희
▪ FTA지원팀	안재현

Global Market Report 18-005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8년 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한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FTA지원팀
(02-3460-7510)
I S B N | 979-11-6097-531-4 (95320)



KOTRA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